



연구보고서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노대명·오미애·전지현·신재동·정희선·박형준·박나영
이봉주·김태성·구인회·안상훈·이상록·정원오·변금선·김화선·이혜림

【책임연구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공저)

【공동연구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재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형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책임연구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저서】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2(공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이해와 적용
신정, 2009(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금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화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혜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발 행 일 2013년
저 자 이 현 주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한디자인
가 격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99-4 93330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 세부 문항별 기술통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복지패널』은 국가승인 통계(제33109호)로, 금년부터 조사 수행시점을 조정하여 상반기 중 조사가 완료되며, 이러한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당해 연도 12월초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당해 연도 12월말에 기초분석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13년 8차 조사에서는 조사결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3년 8차 조사자료 제공시점을 약 1년 정도 앞당겨 시의성 높은 패널데이터를 학술적·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는 표준화 횡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단, 제11장 종단분석의 가중치 이용과정은 분석표별 상이하므로 본문 내용 참조). 그리고 1~7차 조사 자료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연도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은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에서 조사차수별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원자료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자료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되는 기술통계와 각년도 기초분석보고서 통계수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조사항목 중 문항의 정의나 세부 항목의 변경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의 통계분석 시 변경내용을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 및 원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연구팀 (02-380-8273, 8294, 8324) 또는 복지패널 전용 수신자부담전화(080-380-3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출범한 『한국복지패널』은 올해 2013년에 제8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사회 정책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 수급, 그리고 국민의 태도 등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 보다 더욱 긴요해졌다. 변화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예측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수급 등 방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성장은 자못 의의가 크다.

국민의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의 대표적 패널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을 받아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오기도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제8차 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동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현주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노대명 연구위원, 오미애 부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위원, 신재동, 정희선, 박형준, 박나영 연구위원이 조사 수행 및 분석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이봉주 교수의 책임 하에 김태성, 구인회, 안상훈, 이상록, 정원오 교수 그리고 변금선, 김화선, 이혜림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조사설계부터 조사 수행,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과정에서 보여준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패널조사를 수행하여 주신 조사원과 조사지도원, 무엇보다도 매년 조사에 참여해주고 계신 복지패널가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본 원 정경희 선임연구위원, 김미곤 연구위원, 경기대 박능 교수, 인제대 이선우 교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연구진과 조사원, 패널가구 등 『한국복지패널』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는 학계 모든 전문가의 노력과 관심으로 『한국복지패널』이 국내외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 자료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배경 및 목적	15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개요	24
제3절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및 조사수행 결과	27
 제2장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35
제1절 조사개요 및 표본 규모	35
제2절 8차 조사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42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자체 품질진단 결과	55
 제3장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61
제1절 조사내용	61
제2절 조사방법	74
 제4장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81
제1절 일반적 특성	81
제2절 경제활동	89
 제5장 가구경제	103
제1절 소득	103
제2절 지출	105
제3절 재산 및 부채	108

제6장 주거 및 건강	113
제1절 주거	113
제2절 건강	118
제7장 가족	127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127
제2절 가족문제	129
제8장 생활실태 및 자원활동	143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도	143
제2절 가구의 생활여건	147
제3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150
제9장 사회보장	155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155
제2절 공공부조	164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168
제10장 복지인식 부가조사	181
제1절 응답자 특성	181
제2절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183
제3절 복지자원 부담에 대한 의견	191
제11장 종단분석	201
제1절 경제활동 및 가구경제	201
제2절 가구여건 및 사회보장	207
제3절 복지인식	214

참고문헌	221
------------	-----

부 록	223
-----------	-----

부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223
부록 2. 가구 경제	239
부록 3. 주거 및 건강	257
부록 4. 가족	265
부록 5. 생활실태 및 자원활동	276
부록 6. 사회보장	278
부록 7. 복지인식	292
부록 8.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표	311

표 목차

〈표 1-1- 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22
〈표 1-1- 2〉 한국복지패널 조사차수별 원표본 가구 유지율 비교	22
〈표 1-2- 1〉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대상	25
〈표 1-3- 1〉 2013년 8차 조사수행 결과 및 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31
〈표 2-1- 1〉 한국복지패널 표본의 개요	35
〈표 2-1- 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37
〈표 2-1- 3〉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분포현황	38
〈표 2-1- 4〉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 신규패널 지역별 표본배분 결과	39
〈표 2-1- 5〉 소득계층별 부가조사 표본가구 배분결과	41
〈표 2-1- 6〉 소득계층별 부가조사 표본가구 및 19세 이상 가구원 배분결과	42
〈표 2-2- 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43
〈표 2-2- 2〉 신규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44
〈표 2-2- 3〉 1차 조사 대비 8차 조사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	44
〈표 2-2- 4〉 8차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45
〈표 2-2- 5〉 8차 조사의 신규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46
〈표 2-2- 6〉 8차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50
〈표 2-2- 7〉 8차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52
〈표 2-2- 8〉 8차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53
〈표 2-2- 9〉 8차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54
〈표 2-3- 1〉 평가 요소별 평균 점수	58
〈표 2-3- 2〉 세부 주요문항별 평가 점수	58
〈표 3-1- 1〉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62
〈표 3-1- 2〉 8차년도 조사표 유형별 조사대상 및 조사기준시점	63
〈표 3-1- 3〉 8차년도 조사영역	64
〈표 3-1- 4〉 조사 주제별 구성	65
〈표 3-1- 5〉 가구용(유형1·유형2) 설문 주요항목	66
〈표 3-1- 6〉 가구원용(유형3·유형4) 설문 주요항목	71
〈표 3-1- 7〉 복지인식 부가조사표 주요항목	74
〈표 4-1- 1〉 가구형태	81
〈표 4-1- 2〉 가구규모	82

〈표 4-1- 3〉 가구유형별 평균가구원 수	82
〈표 4-1- 4〉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표 4-1- 5〉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7
〈표 4-2- 1〉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90
〈표 4-2- 2〉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90
〈표 4-2- 3〉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91
〈표 4-2- 4〉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92
〈표 4-2- 5〉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93
〈표 4-2- 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94
〈표 4-2- 7〉 노동환경 유해여부	94
〈표 4-2- 8〉 가구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95
〈표 4-2- 9〉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96
〈표 4-2-10〉 가구의 비경제활동 사유	96
〈표 4-2-11〉 취업 가구의 업종 및 직종	97
〈표 4-2-12〉 취업 가구의 사업장 규모	98
〈표 4-2-13〉 가구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99
〈표 4-2-14〉 노동환경 유해여부	99
〈표 5-1- 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	103
〈표 5-1- 2〉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평균	104
〈표 5-1- 3〉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평균	105
〈표 5-2- 1〉 월간 총 가계지출	106
〈표 5-2- 2〉 지출항목별 구성비중	107
〈표 5-3- 1〉 총재산가액 평균	108
〈표 5-3- 2〉 순재산가액 평균	109
〈표 5-3- 3〉 소유부동산 평균	109
〈표 5-3- 4〉 금융재산 평균	109
〈표 5-3- 5〉 총부채 평균	110
〈표 5-3- 6〉 총 이자액과 기타 이자액	110
〈표 6-1- 1〉 주택 유형	113
〈표 6-1- 2〉 주거 점유형태	114
〈표 6-1- 3〉 주택 면적	114

〈표 6-1- 4〉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115
〈표 6-1- 5〉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115
〈표 6-1- 6〉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116
〈표 6-1- 7〉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116
〈표 6-1- 8〉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	117
〈표 6-1- 9〉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117
〈표 6-1-10〉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	117
〈표 6-1-11〉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	118
〈표 6-2- 1〉 전체 가구원의 건강상태	119
〈표 6-2- 2〉 가구주의 건강상태	119
〈표 6-2- 3〉 주요병명	120
〈표 6-2- 4〉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121
〈표 6-2- 5〉 가구주의 만성질환	122
〈표 6-2- 6〉 건강검진횟수	122
〈표 6-2- 7〉 외래진료횟수	123
〈표 6-2- 8〉 입원횟수	123
〈표 6-2- 9〉 입원일수	123
〈표 6-2-10〉 민간의료보험 가입률1)(가구 기준)	124
〈표 6-2-11〉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1)(가구 기준)	124
〈표 7-1- 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127
〈표 7-1- 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127
〈표 7-1- 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128
〈표 7-1- 4〉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체)	129
〈표 7-2- 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130
〈표 7-2- 2〉 가족갈등 대처방법	131
〈표 7-2- 3〉 현재 흡연 여부	131
〈표 7-2- 4〉 하루이상 금연시도 여부	132
〈표 7-2- 5〉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	132
〈표 7-2- 6〉 음주횟수	133
〈표 7-2- 7〉 과음횟수	133
〈표 7-2- 8〉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134

〈표 7-2- 9〉 주변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134
〈표 7-2-10〉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135
〈표 7-2-11〉 출산경험	135
〈표 7-2-12〉 우울에 대한 인식	136
〈표 7-2-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136
〈표 7-2-14〉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137
〈표 7-2-1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137
〈표 7-2-16〉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138
〈표 7-2-17〉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여부	138
〈표 7-2-18〉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	139
〈표 7-2-19〉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생각(기존가구원)	139
〈표 7-2-20〉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계획(기존가구원)	140
〈표 7-2-21〉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시도(기존가구원)	140
〈표 8-1- 1〉 건강에 대한 만족도	143
〈표 8-1- 2〉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144
〈표 8-1- 3〉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144
〈표 8-1- 4〉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145
〈표 8-1- 5〉 직업에 대한 만족도	145
〈표 8-1- 6〉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146
〈표 8-1- 7〉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146
〈표 8-1- 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147
〈표 8-2- 1〉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147
〈표 8-2- 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148
〈표 8-2- 3〉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148
〈표 8-2- 4〉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149
〈표 8-2- 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149
〈표 8-2- 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149
〈표 8-2- 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150
〈표 8-2- 8〉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150
〈표 8-3- 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151
〈표 8-3- 2〉 연간 기부액수	151

〈표 8-3- 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151
〈표 9-1- 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155
〈표 9-1- 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156
〈표 9-1- 3〉 공적연금 수급 실태	156
〈표 9-1- 4〉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157
〈표 9-1- 5〉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158
〈표 9-1- 6〉 건강보험 가입 실태(개인 단위)	159
〈표 9-1- 7〉 고용보험 가입 실태	160
〈표 9-1- 8〉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	160
〈표 9-1- 9〉 산재보험 가입 실태	161
〈표 9-1-10〉 산재보험 급여 수급경험	161
〈표 9-1-1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162
〈표 9-1-12〉 퇴직연금 가입 실태	162
〈표 9-1-13〉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162
〈표 9-1-14〉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163
〈표 9-1-15〉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	163
〈표 9-2-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수급형태	164
〈표 9-2-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여부 및 사유	165
〈표 9-2-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166
〈표 9-2- 4〉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 해결방법	166
〈표 9-2- 5〉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	167
〈표 9-2- 6〉 근로장려세제 신청경험 및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167
〈표 9-2- 7〉 근로장려금 사용용도	168
〈표 9-3- 1〉 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경험 있음 비율	169
〈표 9-3- 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170
〈표 9-3- 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170
〈표 9-3- 4〉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경험 있음 비율	171
〈표 9-3- 5〉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172
〈표 9-3- 6〉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173
〈표 9-3- 7〉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정도	174
〈표 9-3- 8〉 추가된 아동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174

〈표 9-3- 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174
〈표 9-3-10〉 사교육보육 이용 기관 수	175
〈표 9-3-11〉 사교육보육기관의 종류	175
〈표 9-3-12〉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76
〈표 9-3-13〉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일인당 월평균 보육비	177
〈표 10-1- 1〉 응답자 특성	182
〈표 10-2- 1〉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183
〈표 10-2- 2〉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184
〈표 10-2- 3〉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4
〈표 10-2- 4〉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5
〈표 10-2- 5〉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6
〈표 10-2- 6〉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6
〈표 10-2- 7〉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7
〈표 10-2- 8〉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8
〈표 10-2- 9〉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8
〈표 10-2-10〉 국가건강보험 축소, 민간의료보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89
〈표 10-2-11〉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90
〈표 10-2-12〉 유치원,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190
〈표 10-2-13〉 복지의 대상에 대한 의견	191
〈표 10-3- 1〉 교육	192
〈표 10-3- 2〉 보건의료	192
〈표 10-3- 3〉 아동	193
〈표 10-3- 4〉 노인	193
〈표 10-3- 5〉 주거	194
〈표 10-3- 6〉 고용	194
〈표 10-3- 7〉 장애인	195
〈표 10-3- 8〉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195
〈표 10-3- 9〉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196
〈표 10-3-10〉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197
〈표 10-3-11〉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97
〈표 10-3-12〉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198

〈표 11-1- 1〉 경제활동 상태 변화	202
〈표 11-1- 2〉 종사상 변화	204
〈표 11-1- 3〉 소득계층별 동태적 변화	205
〈표 11-1- 4〉 가계의 동태적 상태(적자, 흑자) 변화	206
〈표 11-1- 5〉 조사 차수 동안의 빈곤 경험 및 빈곤 경험 기간	207
〈표 11-2- 1〉 신용불량가구 여부의 변화	208
〈표 11-2- 2〉 3차년도 흡연 가구원의 흡연 지속률	208
〈표 11-2- 3〉 3차년도 비흡연 가구원의 흡연 경험률 추이	209
〈표 11-2- 4〉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의 변화	210
〈표 11-2- 5〉 공적연금 가입형태의 변화	211
〈표 11-2- 6〉 1차년도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경험이 있는 가구의 지속률	212
〈표 11-2- 7〉 1차년도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비경험가구의 경험률 추이	213
〈표 11-2- 8〉 1차년도 의료비 지원 경험이 있는 가구의 지속률	213
〈표 11-2- 9〉 1차년도 의료비 지원 비경험가구의 경험률 추이	214
〈표 11-3- 1〉 사회 불평등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	215
〈표 11-3- 2〉 일반적 복지 인식의 추이	216
〈표 11-3- 3〉 복지영역의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인식 추이	218
〈표 11-3- 4〉 정치 성향의 추이	219

부표 목차

〈부표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구분	223
〈부표 1-1-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	223
〈부표 1-1- 3〉 가구유형별 평균가구원 수	223
〈부표 1-1- 4〉 가구원의 최종 학력	224
〈부표 1-1- 5〉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224
〈부표 1-1- 6〉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225
〈부표 1-1- 7〉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225
〈부표 1-1- 8〉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226
〈부표 1-1- 9〉 가구주의 최종 학력	226
〈부표 1-1-10〉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227

〈부표 1-1-11〉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227
〈부표 1-1-12〉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228
〈부표 1-1-13〉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228
〈부표 2-2- 1〉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229
〈부표 2-2- 2〉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229
〈부표 2-2- 3〉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229
〈부표 2-2- 4〉 취업 가구원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230
〈부표 2-2- 5〉 가구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및 구직기간	231
〈부표 2-2- 6〉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231
〈부표 2-2- 7〉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232
〈부표 2-2- 8〉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232
〈부표 2-2- 9〉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232
〈부표 2-2-10〉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232
〈부표 2-2-11〉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233
〈부표 2-2-12〉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234
〈부표 2-2-13〉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234
〈부표 2-2-14〉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234
〈부표 2-2-15〉 취업 가구주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235
〈부표 2-2-16〉 가구주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235
〈부표 2-2-17〉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236
〈부표 2-2-18〉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236
〈부표 2-2-19〉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237
〈부표 2-2-20〉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237
〈부표 2-2-2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237
〈부표 2-2-22〉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238
〈부표 2-1- 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239
〈부표 2-1- 2〉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보유여부	239
〈부표 2-1- 3〉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분포	240
〈부표 2-1- 4〉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보유여부	241
〈부표 2-1- 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여부	241
〈부표 2-1- 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	244

〈부표 2-1- 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	246
〈부표 2-2- 1〉 월간 총 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248
〈부표 2-2- 2〉 지출항목별 생활비 평균	249
〈부표 2-3- 1〉 소유부동산 유형별 평균	252
〈부표 2-3- 2〉 점유부동산 평균	252
〈부표 2-3- 3〉 점유부동산 유형별 평균	252
〈부표 2-3- 4〉 금융재산 유형별 평균	253
〈부표 2-3- 5〉 농기계 평균	253
〈부표 2-3- 6〉 농기계 유형별 평균	254
〈부표 2-3- 7〉 농축산물 평균	254
〈부표 2-3- 8〉 농축산물 유형별 평균	255
〈부표 2-3- 9〉 자동차가액 평균	255
〈부표 2-3-10〉 기타 동산부동산 재산 평균	255
〈부표 2-3-11〉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 유형별 평균	256
〈부표 2-4- 1〉 부채유형별 평균	256
〈부표 3-1- 1〉 2011년 1년 동안 이사 경험여부	257
〈부표 3-1- 2〉 주거 위치	257
〈부표 3-1- 3〉 방의 수	257
〈부표 3-1- 4〉 상·하수도 사용형태	258
〈부표 3-1- 5〉 부엌 사용형태	258
〈부표 3-1- 6〉 화장실 사용형태	258
〈부표 3-1- 7〉 목욕시설 사용형태	258
〈부표 3-1- 8〉 난방시설 사용형태	259
〈부표 3-1- 9〉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259
〈부표 3-1-1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259
〈부표 3-1-11〉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260
〈부표 3-1-1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260
〈부표 3-1-1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60
〈부표 3-1-14〉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260
〈부표 3-1-15〉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순위	261
〈부표 3-1-16〉 총 원금 상환액 평균	261

〈부표 3-1-17〉 상환 후 남은 용자액 또는 부채 평균	261
〈부표 3-1-18〉 주거 관련 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평균	261
〈부표 3-1-19〉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262
〈부표 3-1-20〉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262
〈부표 3-1-21〉 영구임대아파트 이용경험	262
〈부표 3-1-22〉 공공(국민)임대아파트 이용경험	262
〈부표 3-1-23〉 전세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	263
〈부표 3-1-24〉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263
〈부표 3-1-25〉 주택구입자금지원의 이용경험	263
〈부표 3-1-26〉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263
〈부표 3-2- 1〉 병원에 입원한 이유	264
〈부표 3-2- 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264
〈부표 3-2- 3〉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264
〈부표 4-1- 1〉 성역할에 대한 인식(저소득가구)	265
〈부표 4-1- 2〉 성역할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265
〈부표 4-2- 1〉 생애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266
〈부표 4-2- 2〉 흡연경험 시기	266
〈부표 4-2- 3〉 총 흡연기간	266
〈부표 4-2- 4〉 하루 평균 흡연량	267
〈부표 4-2- 5〉 향후 금연 계획	267
〈부표 4-2- 6〉 담배연기 노출시간	267
〈부표 4-2- 7〉 음주량	268
〈부표 4-2- 8〉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268
〈부표 4-2- 9〉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268
〈부표 4-2-10〉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269
〈부표 4-2-11〉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269
〈부표 4-2-12〉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269
〈부표 4-2-13〉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한 적이 있는지 여부	270
〈부표 4-2-14〉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270
〈부표 4-2-15〉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여부	270
〈부표 4-2-16〉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270

〈부표 4-2-17〉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271
〈부표 4-2-18〉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271
〈부표 4-2-19〉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271
〈부표 4-2-20〉 가족생활만족도	272
〈부표 4-2-21〉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272
〈부표 4-2-22〉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273
〈부표 4-2-23〉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	273
〈부표 4-2-24〉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273
〈부표 4-2-25〉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274
〈부표 4-2-26〉 처음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274
〈부표 4-2-27〉 마지막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274
〈부표 4-2-28〉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275
〈부표 4-2-29〉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275
〈부표 5-1- 1〉 인터넷 사용여부	276
〈부표 5-2- 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276
〈부표 5-2- 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276
〈부표 5-2- 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277
〈부표 5-2- 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277
〈부표 5-2- 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277
〈부표 5-2- 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277
〈부표 6-1- 1〉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278
〈부표 6-1-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278
〈부표 6-1- 3〉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278
〈부표 6-1- 4〉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278
〈부표 6-1- 5〉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279
〈부표 6-1- 6〉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사유	279
〈부표 6-1- 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279
〈부표 6-1- 8〉 공적연금 미가입 사유	279
〈부표 6-1- 9〉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280
〈부표 6-1-10〉 국민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280
〈부표 6-1-11〉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80

〈부표 6-1-12〉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280
〈부표 6-1-13〉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281
〈부표 6-1-14〉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81
〈부표 6-1-15〉 보훈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281
〈부표 6-1-16〉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281
〈부표 6-1-17〉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282
〈부표 6-1-18〉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282
〈부표 6-1-19〉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282
〈부표 6-1-2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282
〈부표 6-1-21〉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283
〈부표 6-1-22〉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283
〈부표 6-1-23〉 고용보험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283
〈부표 6-1-24〉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283
〈부표 6-1-25〉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284
〈부표 6-1-26〉 산재보험 연간 연금수급 개월수	284
〈부표 6-1-27〉 산재보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84
〈부표 6-1-2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284
〈부표 6-1-29〉 개인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285
〈부표 6-1-30〉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285
〈부표 6-2- 1〉 지난 1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285
〈부표 6-2- 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사유	286
〈부표 6-2- 3〉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286
〈부표 6-2- 4〉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기간	286
〈부표 6-2- 5〉 탈수급 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287
〈부표 6-2- 6〉 탈수급의 주된 사유	287
〈부표 6-2- 7〉 탈수급 이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287
〈부표 6-2- 8〉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수급여부 (2012년 12월 31일 기준)	288
〈부표 6-2- 9〉 의료급여 수급 시 문제점	288
〈부표 6-2-10〉 근로장려세제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288
〈부표 6-2-11〉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의욕 변화에 미친 영향	288
〈부표 6-2-12〉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및 근로장려금 신청의사	289

〈부표 6-3- 1〉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289
〈부표 6-3- 2〉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289
〈부표 6-3- 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금액	289
〈부표 6-3- 4〉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경험 있음 비율	290
〈부표 6-3- 5〉 노인가구의 기타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비율	290
〈부표 6-3- 6〉 장애인가구의 기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비율	290
〈부표 6-3- 7〉 아동가구의 기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비율	291
〈부표 6-3- 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291
〈부표 6-3- 9〉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291
〈부표 6-3-10〉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291
〈부표 7-1- 1〉 현재의 사회계층 구조	292
〈부표 7-1- 2〉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계층 구조	292
〈부표 7-1- 3〉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정도	293
〈부표 7-1- 4〉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293
〈부표 7-1- 5〉 소득격차 축소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293
〈부표 7-1- 6〉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294
〈부표 7-1- 7〉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294
〈부표 7-1- 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294
〈부표 7-1- 9〉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295
〈부표 7-1-10〉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295
〈부표 7-1-11〉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때문이라는 인식 ..	295
〈부표 7-1-12〉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는 인식	296
〈부표 7-1-13〉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296
〈부표 7-1-14〉 빈곤의 원인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인식	296
〈부표 7-1-15〉 빈곤의 원인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297
〈부표 7-1-16〉 빈곤의 원인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297
〈부표 7-1-17〉 빈곤의 원인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인식	297
〈부표 7-1-1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때문이라는 인식	298
〈부표 7-1-19〉 환경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298
〈부표 7-1-20〉 건강보험 및 보건의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298
〈부표 7-1-21〉 국민연금(노령연금)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299

〈부표 7-1-22〉 교육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299
〈부표 7-1-23〉 주거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299
〈부표 7-1-24〉 국방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0
〈부표 7-1-25〉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0
〈부표 7-1-26〉 빈곤층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0
〈부표 7-1-27〉 노인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1
〈부표 7-1-28〉 장애인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1
〈부표 7-1-29〉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1
〈부표 7-1-30〉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2
〈부표 7-1-31〉 문화와 예술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2
〈부표 7-1-32〉 정부행정업무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02
〈부표 7-1-33〉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03
〈부표 7-1-34〉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303
〈부표 7-1-35〉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303
〈부표 7-1-36〉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04
〈부표 7-1-37〉 빈곤 예방 및 감소	304
〈부표 7-1-38〉 실업에 대한 대응	304
〈부표 7-1-39〉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305
〈부표 7-1-40〉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05
〈부표 7-1-41〉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305
〈부표 7-2- 1〉 교육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306
〈부표 7-2- 3〉 보건 의료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306
〈부표 7-2- 4〉 아동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306
〈부표 7-2- 5〉 노인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307
〈부표 7-2- 6〉 주거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307
〈부표 7-2- 7〉 고용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307
〈부표 7-2- 8〉 장애인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308
〈부표 7-2- 9〉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의견	308
〈부표 7-2-10〉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1순위	309
〈부표 7-2-11〉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2순위	309
〈부표 7-3- 1〉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310

〈부표 7-3- 2〉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310
〈부표 7-3- 3〉 자신의 정치성향	310

그림 목차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체계	19
[그림 1-3-1]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30
[그림 2-2-1] 1~8차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추이	43
[그림 2-2-2]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부여체계	47
[그림 2-2-3] 8차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그림	50
[그림 2-2-4] 8차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그림	52
[그림 2-2-5] 8차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그림	54
[그림 3-1-1] 조사 설문 구성	62
[그림 3-1-2] 가구용(유형1·유형2) 설문의 조사영역 흐름도	66
[그림 3-1-3] 가구용 조사표 Ⅲ.경제활동상태 영역 논리도	70
[그림 3-1-4] 가구용 조사표 Ⅳ.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70
[그림 3-1-5] 가구용 조사표 XII.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71
[그림 3-1-6] 가구원용 조사표 A.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73
[그림 3-1-7] 가구원용 조사표 B.근로 영역 논리도	73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 Descriptive Report –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cope flexibly with the changes in people's economic status, consumption expenditures, value judgments, and the status of economy-wide income distribution, poverty and inequality. However, existing cross-sectional survey data are not suffice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ynamics because their inability to identify the age effect and the cohort effect.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begun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In 2013, 8th wave of KOWEPS has carried out. There are three types of questionnaires for the survey: the first is for the households, the second is for household members who are aged 15 and over, and the third is for special topics (supplements). The content of KOWEPS is composed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welfare status, and attitude on welfare or something for individual and household. The special topic for this wave is 'public opinion on social policy'. In this 8th wave, we have completed about 7,315 household samples which include both the original, the added new households.

The descriptive report provides a wide variety of contents about the general features, economic conditions, employment status,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disability which is the special topic for the 8th year survey. For the first time, this descriptive report provides some results from longitudinal analysis. The results could be a reference for the researchers who try to use KOWEPS.

1. 한국복지패널 구축배경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 구축배경

-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들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가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실태를 보여주고 복지욕구 및 인식을 일회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연구에 활용되어 옴.
 - 그러나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이를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가구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구축함. 한편, 이외는 별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패널을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3개 패널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목적만을 달리 설정하고 있어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업이라는 인식, 그리고 각각 패널조사들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패널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비효과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3개 패널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함.

□ 한국복지패널 구축목적

-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둘째,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2. 한국복지패널의 장점과 한계

□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 첫째,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임.
 - 기존 국내의 가구단위 패널 조사의 경우 표본가구 규모는 5,000가구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최초 원표본 가구규모는 7,072가구였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8차 조사완료된 원표본가구가 총 5,619가구에 달함. 더욱이 이번 8차 조사에서는 신규표본 1,800가구 중 1,693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총 7,312가구의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에서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 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조사임을 의미함.

○ 둘째,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임.

- 즉,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패널 조사로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셋째,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일관성있게 생산하고 있는 패널조사임.

- 기존의 국내 패널조사는 대부분 패널 구축 초기의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 내외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

○ 넷째,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국내외 여타 패널보다 비교적 높음.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92.1%, 3차 조사에서 86.7%, 4차 조사에서 83.9%, 5차 조사에서 80.3%로 나타나 국내 주요 패널보다 높았고 미국 PSID나 독일 GSOEP와는 유사한 수준이었음.
- 6차 조사에서 75.4%로 낮아졌으나 7차 조사 당시 원표본 복원 과정 등을 거친 후 이전 차수에 비해 원표본의 소실 정도가 감소하였고, 8차 조사에서는 72.1%의 유지율을 유지하였음.

○ 다섯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라는 점임.

-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함.

○ 여섯째,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라는 점임.

- 다양한 영역의 조사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 마지막으로, 조사의 기준시점과 자료의 활용 가능 시점 간 차이를 줄여 시의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임.

- 2011년 6차 조사까지는 조사 수행시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점(5월) 무렵에 시작되어 전년도의 생활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2012년 7차 조사에서는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상반기에 추적조사까지 완료하였고 2013년 8차 조사에서는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음.
- 조사일정을 변경하면서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제공시점도 조정되었음. 2013년 8차 조사에서 생산된 자료가 2013년 12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되었음.

□ 한국복지패널의 과제

○ 자료의 정확성과 신속한 공유 사이의 균형

-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사 자료의 생산에는 조사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은 신속한 자료 공유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음.
- 패널자료의 경우 그 역사가 길어질수록 자료의 생산과정에서 자료의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음.
- 결국 한국복지패널의 과제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속한 공유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되었음.

3. 한국복지패널 조사개요

□ 표본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와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최초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센

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 표본의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 즉,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함.

○ 신규표본 1,800가구

- 2011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음.
-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의 경우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가구를 배분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복지인식 부가조사 표본의 재추출

-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표본추출은 7차 복지패널 표본 가구를 1단계 표본 (phase sample)으로 보고, 1단계 표본에 포함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최종 표본을 추출하는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적용하였음.
- 2단계 표본추출 과정에서는 가구를 추출하고 각 가구내의 모든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을 패널로 구축하였음.
- 본 표본설계에서는 되도록 인위적인 조정을 피하고 부가조사패널의 대표성을 확보 및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층별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층화작업을 한 뒤 무작위추출을 하였음.
- 그 결과, 2,399 가구의 19세 이상 가구원 5,050명이 조사대상으로 추출되었음.

□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조사표는 가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설문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이 구성됨.

○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3년 8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세 번째 부가조사를 수행함.

□ 조사방법

-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시점은 2012년이며, 조사항목 중에서 유량(flow)의 경우 2012년 1~12월(1년)을, 저장(stock)의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CAPI 프로그램에 현장에서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의한 조사방식은 2010년 5차 조사 이후 도입됨.

4.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및 조사수행 결과

□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 표본가구 확충

- 8차 조사에서는 약 1,800가구의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구 수행과정에서는 표본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 1,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음.
 - 2013년 8차 조사에서는 1,800 신규가구를 포함한 총 7,61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7,312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복지인식 부가조사 표본의 재추출

-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앞선 2차 조사와 5차 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이번 8차 조사에서는 부가조사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재추출하였음.
 - 7차 복지패널 표본가구 중 지역별(16개 시도), 계층별(저소득, 일반) 확률 비례추출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추출하여 2,399가구, 5050명의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으로 추출되었고, 이 중 2,209가구, 4,18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됨.

- 8차 조사의 부가조사 표본은 동일 가구에서 성인 가구원 전원이 조사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었음. 대표적으로 동일 가구 가구원 사이에서 복지인식이 유사한지 등도 분석이 가능함.

○ 종단분석 결과의 소개

- 2013년 기초분석 보고서는 올해 조사가 완료된 8차 조사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에 더해, 일부 핵심변수를 선정하고 종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수행 결과

○ 조사기간

- 2013년 1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62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함.

○ 조사대상가구

-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가구 기준으로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 규모는 5,732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5,271가구, 2~7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생한 신규 가구는 461가구임.
- 8차 조사 진행과정에 발생한 신규 분가가구는 461가구이고, 8차부터 신규 표본으로 들어간 가구는 1,800가구임. 이를 포함한 8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7,617가구에 해당함.

○ 조사완료가구

- 7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5,271가구 중에 5,104가구에 대한 8차 패널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6.83%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 원표본 7,072가구 기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72.17%이며, 전년도(74.53%)와 비교한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폭은 2.36%p임.
- 8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5,104가구에 더해 기존 신규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신규가구를 포함한 515가구, 신규 조사대상 가구인 1,800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693가구까지 총 7,312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조사대상이었던 7,617가구 중에서 7,312가구가 조사완료 가구임.

〈표 1〉 2013년 8차 조사수행 결과 및 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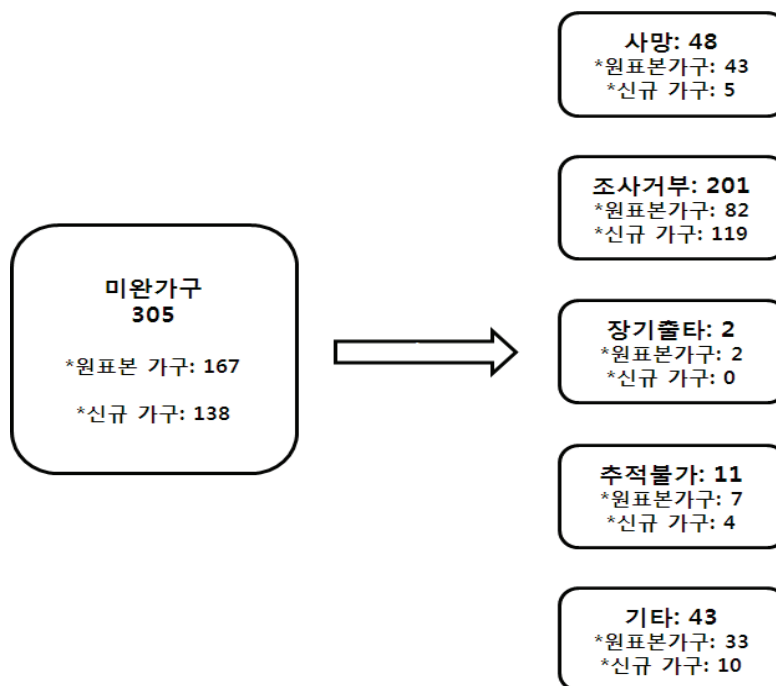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총 조사대상	8차 조사완료 (신규표본 가구제외)	8차 신규표본 가구 완료
원 표 본 가 구	원표본 가구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신규표본 가구 포함 총 조사대상 <u>7,617가구</u> ↑ (신규표본 <u>1,800가구</u>)* + 7차 조사완료 기준 조사대상 <u>5,732가구</u> (원표본 5,271가구) (신규 461가구) + 8차 신규가구 조사대상 85가구 (신규표본 분가 3가구 포함)	5,104	1,690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93.89%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가구	-	561	383	193	260	340	64		167	-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폭	-	7.93%p	5.42%p	2.73%p	3.67%p	4.81%p	0.91%p		2.36%p	-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9%	1.21%		3.17%	-
신 규 가 구	기존 신규가구 (2차-전년도)	-	-	60	167	249	328	383		433	-
	추가 신규가구 (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3
	전체 신규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3
조사완료 총 표본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1,693

○ 조사미완가구

- 8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05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167가구, 신규 가구가 138가구로 구성됨.
-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05가구) 중에서, 조사거부가 201가구(원표본 82, 신규 119)로 가장 많은 비중(65.90%)

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망이 48가구(원표본 43, 신규 5)로 15.74%를 차지하여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자연적인 소실 가구는 약 1/6에 해당하는 15.74%인 것으로 분석됨. 그밖에 기타 43가구(원표본 33, 신규 10),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추적불가 11가구(원표본 7, 신규 4), 장기출타 2가구(원표본 2, 신규 0)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 주요용어: 한국복지패널(KOWEPS), 복지욕구, 복지인식



제1장 서론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배경 및 목적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개요

제3절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및 조사수행 결과

제1절 한국복지패널 구축배경 및 목적

1. 한국복지패널 구축배경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국민들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가 가지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지정책 도입 및 확대,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확대와 복지인력의 확충 등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 경향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그 동안 국민의 소득이나 소비실태를 보여주고 복지욕구 및 인식을 일회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종류의 횡단면 자료가 생산되어 정책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떠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횡단면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변화 등을 적절히 추적하여 보여주고 이를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횡단면 자료의 이러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적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유럽의 ECHP, 캐나다의 SLID, 호주의 HILDA 등 같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수립 및 평가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지출 및 노동시장 등 복지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패널조사 자료가 생산 및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 한

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형식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가구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형식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1차 조사 표본 3,855가구)을 구축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제,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1차 조사 표본 1,142가구)이 2005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소득층 복지정책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었던 3개 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분석의 목적이나 초점이 다소 다를 뿐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각각의 패널조사들은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유효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대표성 있는 패널데이터를 생산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3개 패널조사를 각각 수행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 확대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활패널과 복지패널 구축을 위한 예산을 재정 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해당 예산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대사업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기존의 복지패널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한국복지패널(KOWEPS)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구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한국복지패널 구축 목적 및 기대효과

한국복지패널(KOWEP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

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한국복지패널 조사 및 구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조사의 생명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통계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통계가 빈약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적정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복지정책 관련 패널이 있었지만, 유효 표본수, 원표본 가구 유지율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계로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복지패널(KOWEPS)에서는 국내 가구단위 패널 중에서는 표본의 규모가 가장 큰 조사로 1차 조사의 원표본(7,072가구 및 동 가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을 추출하여 구축하였고¹⁾, 1차 조사 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표본 가구 유지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 수행과정 및 패널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 그 결과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2차 조사의 경우 92.1%를 나타낸 이래, 3차 조사 86.7%, 4차 조사 83.9%, 5차 조사 80.3%, 6차 조사 75.4%, 7차 조사 73.6%, 그리고 8차 조사에서 72.17%를 유지하였다. 원표본 가구 유지를 위하여 7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 복원 조사³⁾를 통해 원표본 가구 유지율을 74.5%로 제고한 바 있다.

원표본의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표본을 100% 지켜내는 일은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패널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원표본의 손실이 누적되고 표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신규표본의 추가를 위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신규표본 1,800가구를 추가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확충하였다. 물론 일정 기간 신규표본으로 추가된 가구에 대해서는 종단적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한국복지패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표본의 활용 상 장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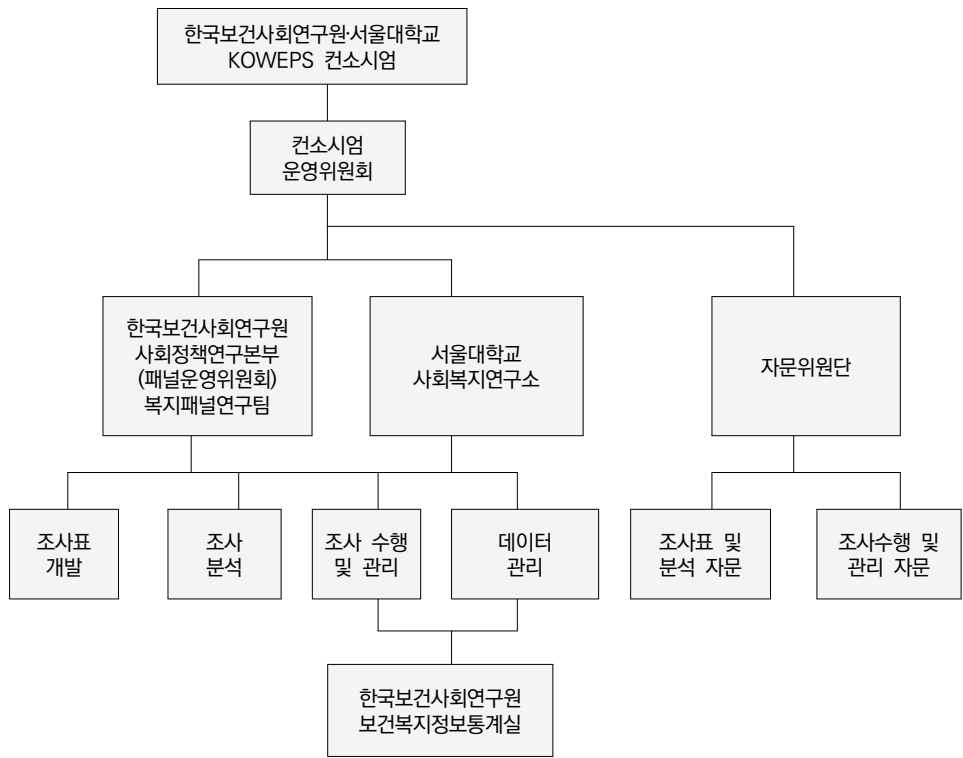
-
- 1) 최초 원표본 가구 추출 시 전국 30,000가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2중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함으로써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다.
 - 2) 한국복지패널은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승인번호 제 33109호)로서,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안내서 『복지정책 길라잡이』를 작성하여 표본가구에 배부하고, 패널 가구원수에 따른 조사답례품, 연하장, 명절 선물 2회(설, 추석), 이사 선물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표본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 3) 2~6차 조사 중 조사가 미완료되어 소실된 원표본 가구 66가구를 재추적하여 7차 조사부터 복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 7차 패널조사 수행결과에서 서술하고 있다.

적정 표본가구 규모를 확보하고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높다고 해서 훌륭한 패널데이터로서 충분조건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와 질적인 측면이 담보되어야만 그 충분조건이 달성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패널연구진 - 조사패널팀 - 조사원 - 표본가구’의 원활한 소통 및 효율적인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조사 수행과정에서 모든 참여주체의 책임성과 체감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한국복지패널조사 원표본 가구 유지율 관리, 조사 효율성 및 조사결과와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전 조사표 검토 및 의견 공유, 철저한 조사원 교육 실시, 그리고 연구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은 조사표를 개발한 연구진과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해소 및 처리하였다. 조사 수행과정에서 조사팀의 운영은 4인 1팀(조사지도원 1인, 조사원 3인), 총 10개 팀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조사지도원의 사전 계획 및 지도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한 결과를 조사지도원이 현장에서 에디팅을 실시하여 의문점이나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010년 5차 조사 이후부터는 면접조사 수행 및 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금년 8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내용 반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CAPI 방식은 기존의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 방식에서 조사원들이 조사 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조사원이 면접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가구에서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고 조사지도원에게 전송하면, 조사지도원이 조사원들의 조사 자료에 대한 에디팅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이러한 과정을 마친 조사결과를 최종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이러한 조사 방식의 변화가 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PI 방식은 패널조사 결과 에디팅 및 취합, 그리고 에러체크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국복지패널(KOWEPS)에서는 조사결과와 정확성·신뢰성뿐만 아니라 조사내용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여타 기관에서 생산 및 구축하는 패널과 달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연구 및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및 조사수행 능력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분야별 전문성 및 연구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1-1]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체계



두 번째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의 광범위한 영역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한 조사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복지정책의 영역은 기존의 협의의 복지 개념을 넘어, 그 영역이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다양한 복지지표, 복지정책 등에 대한 이론 및 현실을 검토하여 조사표 개발 및 보완하고 있으며, 패널연구에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문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조사 결과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영역 및 주제의 학술논문으로 작성되어 발표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과제에서 활용되는 등 한국복지패널을 기초로 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의 흐름은 국가 간 복지정책의 수렴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복지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패널자료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연구진은 외국의 복지 관련 패널 조사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문항들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조사표와 패널데이터의 영문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조만간 해당 자료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한국복지패널(KOWEPS)은 8차 조사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복지패널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패널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경제, 사회적 행태변화, 특히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변화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당수의 사회복지관련 통계조사는 관련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 패널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통계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관련 기초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및 기초분석 보고서, 설문지 등 패널조사 관련 기초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서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연구 활성화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연구의 속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 및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앞서 언급한 한국복지패널의 구축 목적에 따른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여타 패널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역시 지니고 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⁴⁾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이고, 분가 등에 의한 신규 생성가구를 포함하여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2차 조사에서 6,580가구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7차 조사 5,732가구에 이어 8차 조사에는 5,619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8차 조사의 경우에는 신규표본 1,800가구 중 1,693가구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어 총 7,312가구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에서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 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조사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전국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도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은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 유형으로는 ‘농어가’를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로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패널조사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1-1-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구분	인구주택 총조사(90%)	국민생활실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 사 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 구 수	14백만 가구	30,000 가구	7,072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 표 성	-	전 국	전 국

셋째,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게 생산하고 있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기존의 국내 패널조사는 대부분 패널 구축 초기의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 내외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및 지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2차와 3차 조사를 비롯하여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국내외 여타 패널보다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92.1%였으며, 3차 조사에서 86.7%, 4차 조사에서 83.9%를 나타냈으며, 5차 조사까지도 80%를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하여 국내의 주요 패널보다 높았으며 미국 PSID나 독일 GSOEP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6차 조사에서 75.4%로 낮아졌으나 7차 조사 당시 원표본 복원 과정 등을 거친 후 이전 차수에 비해 원표본의 소실 정도가 감소하였고, 8차 조사에서는 72.1%의 유지율을 유지하였다.

〈표 1-1-2〉 한국복지패널 조사차수별 원표본 가구 유지율 비교

(단위: %)

조사차수	한국복지패널 (KOWEPS)	노동패널	대우패널	미국 PSID	영국 BHPS	독일 GSOEP
2차	92.1	87.6	79.0	89.0	87.7	89.9
3차	86.7	80.9	66.0	86.3	81.5	86.0
4차	83.9	77.3	59.0	83.7	79.9	84.9
5차	80.3	76.0	56.0	81.2	76.8	81.3
6차	75.4	77.0	44.0	78.8	77.3	79.2
7차	74.5	77.3	종료	76.4	76.0	78.4
8차	72.1	76.5	-	74.1	74.1	78.9

다섯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라는 점이다.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다양한 영역의 조사내용 및 항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기준시점과 자료의 활용 가능 시점 간 차이가 짧은 자료라는 점도 강점이다. 2011년까지, 과거에는 조사 수행시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점(5월) 무렵에 시작되어 전년도의 생활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회상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상반기에 추적조사까지 완료하였고 8차 한국복지패널에서는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의 기간을 변경하면서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제공시점도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8차 조사에서 생산된 2012년 기준 자료가 2013년 12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되었다. 한편 기초분석보고서와 학술대회를 통하여 발견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다음 해 초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시의성을 높이게 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의 한계는 앞서 언급한 장점과 무관하지 않다. 조금 더 빠른 자료의 공유를 위하여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사 자료의 생산은 조사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⁵⁾. 패널자료의 경우 그 역사가 길어질수록 자료의 생산과정에서 자료의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한국복지패널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자료의 정확성과 신속한 공유사이의 균형을 잡는가하는 것이 되었다. 자료 생산과정의 효율성 제고가 대안 중 하나이지만 이와 관련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5) 경험적으로 양질의 조사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자료에서 발견되는 에러를 수정해야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크(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에 이른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패널자료는 자료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뿐만 아니라, 분석과정에서 에러 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 체크,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 체크,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의 에러 체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양질의 조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본 기초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수치 역시 이후 지속적인 에러 체크를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2절 한국복지패널 조사개요

1. 표본추출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횡단면 조사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종단면 조사인 노동패널의 경우에는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복지패널은 농어가와 읍면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인 표본추출은 2장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최초 원표본 가구 추출 및 신규표본 추출, 그리고 부가조사인 「복지의식 부가조사」의 재 표본추출과 관련된 개요를 서술한다.

최초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⁶⁾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최초로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본의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상에 해당하는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⁷⁾.

신규표본으로 2011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및 저소득가구를 구분하여 전체 조사구에서 완료 목표인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였다.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년도와 동일한 비율로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또한 지역별 표본 배분의 경우 또한 1차년도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가구를 배분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각종 통계분석 결과표 중 2012년 실태와 관련된 결과표는 신규표본을 포함한 분석의 결과이다. 단, 종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 경우에는 신규표본의 조사역사가 짧아서 포함하기 어려웠으므로 신규표본 가구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6) 목표 원표본 가구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 조사 결과 7,07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7)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조사인 「복지의식 부가조사」의 경우 2010년, 5차 조사의 부가조사까지 표본추출에서 계층별(저소득, 일반) 구성만 고려하고, 연령별 구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가조사 표본이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층화방안과 표본추출 전략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8차 조사에서는 부가조사 대상을 재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가조사 표본추출은 7차 복지패널 표본 가구를 1단계 표본(phase sample)으로 보고, 1단계 표본에 포함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최종 표본을 추출하는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적용하였다. 2단계 표본추출 과정에서는 가구를 추출하고 각 가구내의 모든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을 패널로 구축하였다. 본 표본설계에서는 되도록 인위적인 조정을 피하고, 부가조사패널의 대표성을 확보 및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층별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층화작업을 한 뒤 무작위추출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2,399 가구 내의 19세 이상 가구원 5,050이 조사대상으로 추출되었다.

2. 조사표 구성

한국복지패널(KOWEPS)의 조사표 구성은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조사표의 경우 가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설문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조사표의 경우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1〉 한국복지패널 조사표 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기준시점: 전년도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제외)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기준시점: 전년도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기준시점: 전년도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복지의식

부가조사의 경우, 2006년에 처음으로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07년에 복지 인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⁸⁾. 이어서, 부가조사들은 3년을 주기로 실시하여 2013년에는 복지의식이 세 번째로 조사되었다.

3. 조사원 및 조사방법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기준시점은 2012년이며, 조사항목 중에서 유량(flow)의 경우 2012년 1~12월(1년)을, 저장(stock)의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 40명이 수행하였다. 40명의 조사원은 조사지도원 1인, 조사원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운영되었다. 조사지도원은 조사대상 패널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하여 조사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은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조사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심야 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이나 출장, 병원입소,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차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1~4차 조사와 달리 2010년 5차 조사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시스템에 의한 조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방식 전환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CAPI 시스템 등 컴퓨터 활용 교육이 조사표 내용에 대한 교육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조사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된 사항은 조사된 내용에 대해 1차적으로 현장에서 조사지도원이 에디팅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완조사가 이루어지고, 재검토를 통해 완성된 조사 자료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조사내용을 별도 입

8)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가구조사표에 수록되어 있다.

력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CAPI 시스템에 탑재한 기본적 로직을 통해 조사 및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제3절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및 조사수행 결과

1.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가. 표본가구 확충

8차 조사에서는 약 1,800가구를 신규표본으로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초 원표본 가구 7,072가구로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는 여전히 5,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타 조사에 비해 원표본 규모가 크다는 장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2차 패널조사 수행 중 561가구(전년대비 7.93%)의 원표본 가구가 소실된 이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5차 패널조사 완료 기준으로 80.25%, 2011년 6차 패널조사 완료 기준으로 75.44%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본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구 수행과정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에 수행된 예비조사에서 1,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8차 조사에서는 1,800 신규가구를 포함하여 총 7,61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7,312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신규표본을 추가함으로써 표본가구의 손실로 발생한 표본감소의 문제를 완화하고 향후 표본의 크기를 유지하여 분석의 안정성 및 세밀한 분석에서 이점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 부가조사 표본의 재추출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앞의 2차조사와 5차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그 취약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2010년(5차) 부가조사까지 표본추출에서 계층별(저소득, 일반) 구성만 고려하고, 연령별 구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가조사 표본이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가조사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재추출하였다. 7차 복지패널 표본가구 중 지역별(16개 시도), 계층별(저소득, 일반)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조사대상을 2,399가구, 5,050명의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으로 추출되었다. 이 중 2,209가구, 4,18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8차 조사의 부가조사 표본은 동일 가구에서 성인 가구원 전원이 조사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동일 가구 가구원 사이에서 복지인식이 유사한지 등도 분석이 가능하다.

표본의 재추출로 복지인식의 경우 종단분석의 한계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표본은 2차와 5차에서도 조사 표본이었던 바 이 사례들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2차조사, 5차 조사 8차 조사 모두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377명이다. 하지만 2차 조사와 5차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1,328명이고, 2차 조사와 8차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415명이다. 그리고 5차 조사와 8차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597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8차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다. 종단분석 결과의 소개

한국복지패널자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패널자료이다. 패널자료는 특정 집단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므로 종단적 역동성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패널자료는 역사가 오래될수록 사례가 누락되고, 사례의 손실이 비체계적이라는 보장이 어려워서 대표성이 취약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패널의 특성으로 인하여 패널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어느 정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패널자료는 역동성 분석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자료 분석은 대부분 횡단면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기초분석 보고서로서 조사가 완료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를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왔다. 자료 이용자들이 분석과정에서 기초적 수준의 대조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성이었다. 이에 더하여 8차 조사보고서부터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고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일부 핵심변수를 선정하고 종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8차조사 보고서는 그 첫 해로 일부 변수에 한정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만 앞으로 그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종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는 지면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

2.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수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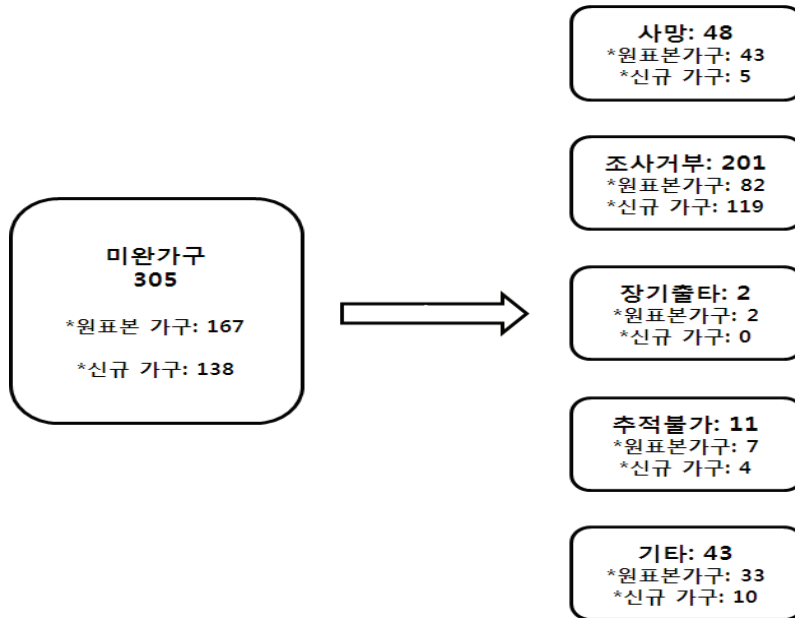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상반기 중 8차 패널조사의 완료를 목표로 2012년 말부터 조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착수하여 2013년 1월 12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본 조사 148일과 더불어 이어나 분가 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통해 최소한으로 발생한 추적조사 대상가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6월 8일까지 총 162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대상 표본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 이를 만큼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3년에 완료된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가구 기준으로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예정 가구 규모는 5,732가구이며, 이 중 원표본 가구는 5,271가구, 2~7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생한 신규 가구는 461가구이다.

한편, 8차 조사 진행과정에 발생한 신규 분가가구는 461가구이고, 8차부터 신규표본으로 들어간 가구는 1,800가구이다. 이를 포함한 8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대상 가구는 7,617가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가구를 살펴보면, 7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5,271가구 중에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소실된 원표본 가구는 167가구로, 5,104가구에 대한 8차 패널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6.8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초 원표본 7,072가구 기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72.17%이며, 전년도(74.53%)와 비교한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 감소폭은 2.36%p이다.

[그림 1-3-1]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마지막으로 8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05가구로, 이 가운데 원표본 가구가 167가구, 신규 가구가 138가구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05가구) 중에서, 조사거부가 201가구(원표본 82, 신규 119)로 가장 많은 비중(65.90%)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망이 48가구(원표본 43, 신규 5)로 15.74%를 차지하여 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자연적인 소실 가구는 약 1/6에 해당하는 15.7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기타 43가구(원표본 33, 신규 10),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추적불가 11가구(원표본 7, 신규 4), 장기출타 2가구(원표본 2, 신규 0)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1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2013년 8차 조사수행 결과 및 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1〉 2013년 8차 조사수행 결과 및 1~8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총 조사대상	8차 조사완료 (신규표본 가구제외)	8차 신규표본 가구 완료
원 표 본 가 구	원표본 가구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신규표본 가구 포함 총 조사대상 7,617가구 ↑ (신규표본 1,800가구) + 7차 조사완료 기준 조사대상 5,732가구 (원표본 5,271가구) (신규 461가구) + 8차 신규가구 조사대상 85가구 (신규표본 분가 3가구 포함)	5,104	1,690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93.89%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가구	-	561	383	193	260	340	64		167	-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폭	-	7.93%p	5.42%p	2.73%p	3.67%p	4.81%p	0.91%p		2.36%p	-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9%	1.21%		3.17%	-
신 규 가 구	기존 신규가구 (2차-전년도)	-	-	60	167	249	328	383		433	-
	추가 신규가구 (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3
	전체 신규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3
조사완료 총 표본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1,693



제2장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제1절 조사개요 및 표본 규모

제2절 8차 조사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자체 품질진단 결과

2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

제1절 조사개요 및 표본 규모

1. 조사개요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표 2-1-1〉 한국복지패널 표본의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KOWEPS)
조사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수	14백만여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 국	전 국

이와 같이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도에 조사대상 가구를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패널 표본가구를 구축하였다.

2006년도 패널 구축과정은 먼저 소득 집단에 따라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표본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 자료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확률비례추출 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가구인 24,711가구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 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으로 부터 각

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패널가구로 구축된 표본 가구는 7,072가구였다. 표본추출과정에서 저소득층가구는 향후 패널 소실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과대표집하였다.

2011년 6차 조사 이후에 원표본 손실에 따른 표본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 7차 패널조사에서는 신규표본가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규 표본 가구 추가 시 구체적인 표본추출 및 조사 수행방안, 안정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신규 표본가구는 1,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2. 표본규모

가. 패널 원표본가구 구축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 필요한 표본 가구 약 30,000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여 개 조사구중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확률비례 추출하였다.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 중에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제주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24,711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7,000가구를 2단계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7,072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였다.

1단계 표집 자료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000가구를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일반 가구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2-1-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단위: 가구, %)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 40%	2,481	10.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 대해 지역별, 조사구별로 표본가구를 확률비례 계통추출에 의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패널구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에 구축된 패널 가구를 소득 기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3〉과 같다.

패널로 구축된 표본가구를 소득기준별로 살펴보면 당초 각 층별로 3,500가구씩을 배분하였으나, 조사거절, 패널 참여 거부 등의 사유로 저소득층에서는 표본설계 당시의 3,500가구를 약간 밑도는 규모인 3,283 가구가 패널로 구축되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이상의 완료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약 94%의 완료율을 보여, 저소득층 가구의 조사 거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목표오차는 약 2.7% ~ 11.1%로 지역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조사와는 다르게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패널가구의 탈락률을 최소화함으로써 패널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해하는 것이다. 여타의 국내 패널조사의 가장 당면한 문제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대상 가구의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차 조사에서 패널가구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당시 거부율과 비협조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구별 표본가구들을 계통추출을 적용하여 조사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조사대상 표본가구가 조사를 거절할 경우 순서상 다음 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2-1-3〉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분포현황

(단위: 가구)

지역	조사구수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합 계	
	표본 조사구수	완료 조사구	표본배분 가구수	완료 가구수	표본배분 가구수	완료 가구수	표본배분 가구수	완료 가구수
서울	93	93	811	886	506	449	1,317	1,335
부산	33	33	254	277	272	251	526	528
대구	25	25	187	204	227	218	414	422
인천	28	28	228	247	193	190	421	437
광주	15	15	114	123	130	121	244	244
대전	14	14	118	132	89	76	207	208
울산	14	14	120	124	82	79	202	203
경기	76	76	644	706	471	426	1,115	1,130
강원	14	14	102	118	131	118	233	236
충북	14	14	108	113	113	107	221	221
충남	20	20	153	161	168	160	321	321
전북	20	20	138	140	209	207	347	347
전남	19	19	104	109	273	268	377	377
경북	26	26	152	164	339	329	491	494
경남	30	30	229	240	254	248	483	488
제주	5	5	38	45	43	36	81	81
합계	446	446	3,500	3,789	3,500	3,283	7,000	7,072

나. 패널 신규표본가구 구축과정

한국복지패널의 6차년도 조사 이후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표본가구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저소득층 가구 및 가구원의 분포가 어느 정도 치우침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역별 표본 규모는 잦은 이주와 탈락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7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패널 표본규모를 유지하고자 약 1,800가구를 추가하여 신규패널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인구주택 총 조사구를 직접 추출하지 않고, “2006년 복지실태조사” 표본으로 부터 이중추출(double sampling)방식으로 7,072가구를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신규표본의 추가를 위한 표본추출방법도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하였다.

1차 조사 당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패널로 구축하여 6차 조사 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1차 조사의 1단계 표본은 “2006년 복지실태조사”로서 약 2만 4천여 가구의 대규모 표본으로 부터 2단계로 추출한 표본

이기 때문에 패널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저소득 및 일반 가구를 현재 6차 조사에서 탈락한 비율에 따라 표본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경우 활용 가능한 표본은 “2010년 차상위 조사(15,000여 가구자료)”로서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및 일반 가구를 1단계 표본으로 파악하여 동일한 속성의 패널 자료 구축이 용이하며, 현재 패널 가구의 가중치 조정에 맞추어 조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지역별 표본 배분의 경우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가구를 배분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1-4>는 7차 조사 당시 신규패널의 지역별 표본배분 결과를 나타낸다. 2010년 차상위조사에서 일반과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지역별 가구 분포에 따라 1,800가구를 비례 배분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표본가구가 가장 많이 배분되었고, 두 지역에서는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많이 배분되었다.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은 저소득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표 2-1-4>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 신규패널 지역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 가구)

지역	2010년 차상위 표본			표본배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계
전국	10,745	4,298	15,043	900	900	1,800
서울	1,494	343	1,837	125	72	197
부산	821	330	1,151	69	69	138
대구	616	313	929	52	66	118
인천	706	243	949	59	51	110
광주	504	200	704	42	42	84
대전	535	172	707	45	36	81
울산	457	142	599	38	30	68
경기	1,510	342	1,852	126	72	198
강원	443	286	729	37	60	97
충북	490	235	725	41	49	90
충남	482	344	826	40	72	112
전북	524	278	802	44	58	102
전남	501	300	801	42	63	105
경북	600	351	951	50	73	123
경남	751	303	1054	63	63	126
제주	311	116	427	27	24	51

다. 부가조사(복지인식조사) 표본가구 구축과정

한국복지패널의 8차년도 부가조사는 복지인식조사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2010년 5차때 실시된 부가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소득 계층(일반, 저소득)만 고려하고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8차년도 부가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층화방안과 표본추출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7차년도 표본가구 중 부가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부가조사 표본추출은 7차 복지패널 표본 가구를 1단계 표본(phase sample)으로 보고, 1단계 표본에 포함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최종 표본을 추출하는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을 적용하였다. 2단계 표본추출 과정에서는 가구를 추출하고 각 가구내의 모든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을 패널로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5차 부가조사 대상자 표본은 1,363가구(가구원2132명)이고, 8차 부가조사에서는 5,000명 정도의 패널 구축을 위해 2,400 가구내의 가구원 (만 19세 이상) 모두 조사하였다. 이 경우, 5차 부가조사 대상자 표본을 그대로 또는 일부 사용할 수 있고 5차 부가조사 대상자 표본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복지인식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표본설계에서는 되도록 인위적인 조정을 피하고, 부가조사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 및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층별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층화작업을 한 뒤 랜덤추출하였다. 복지패널의 연구목적상 의미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는 지역별(16개 시도), 계층형태(일반, 저소득)를 층화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각 층별 구성 비율을 그대로 표본에 반영하기 위해 비례배정(proportional allocation)에 따라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층별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표 2-1-5〉 소득계층별 부가조사 표본가구 배분결과

(단위 : 가구,%)

지역	일반			저소득		
	표집률	표집률 비중(%)	표본가구	표집률	표집률 비중(%)	표본가구
서울	857	12.06	289	237	3.33	80
부산	349	4.91	118	162	2.28	55
대구	280	3.94	95	155	2.18	52
인천	309	4.35	104	111	1.56	37
광주	212	2.98	72	88	1.24	30
대전	189	2.66	64	67	0.94	23
울산	168	2.36	57	48	0.68	16
경기	791	11.13	267	220	3.10	74
강원	184	2.59	62	91	1.28	31
충북	184	2.59	62	84	1.18	28
충남	261	3.67	88	118	1.66	40
전북	221	3.11	75	173	2.43	58
전남	223	3.14	75	181	2.55	61
경북	316	4.45	107	205	2.88	69
경남	322	4.53	109	181	2.55	61
제주	93	1.31	31	28	0.39	9

7차 부가조사 대상 가구 중 일반소득 대 저소득 비율이 7:3 정도임을 반영하여 부가조사 표본가구 2,399가구를 추출하였다. 이 경우 가구원의 수는 6,248 명이고,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한정하면 가구원의 수는 5,050 명이다.

5,050명의 가구원 중 일반소득 대상자는 3,945명(78.12%) 이고 저소득 대상자는 1,105명(21.88%) 이었다. 추출된 가구원 중 일부 가구원의 경우 접촉 불능 또는 패널 참여 거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000명 정도로 최종 표본 가구원수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최종 완료된 부가조사 가구원수는 4,720명이었다.

〈표 2-1-6〉 소득계층별 부가조사 표본가구 및 19세 이상 가구원 배분결과

(단위 : 가구, 명)

지역	일반		저소득	
	표본가구	19세 이상 표본가구원	표본가구	19세 이상 표본가구원
서울	289	679	80	123
부산	118	272	55	83
대구	95	205	52	87
인천	104	215	37	52
광주	72	183	30	42
대전	64	151	23	33
울산	57	144	16	23
경기	267	642	74	111
강원	62	151	31	53
충북	62	149	28	40
충남	88	237	40	71
전북	75	170	58	94
전남	75	166	61	93
경북	107	254	69	108
경남	109	258	61	80
제주	31	69	9	12

제2절 8차 조사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1. 8차 조사 표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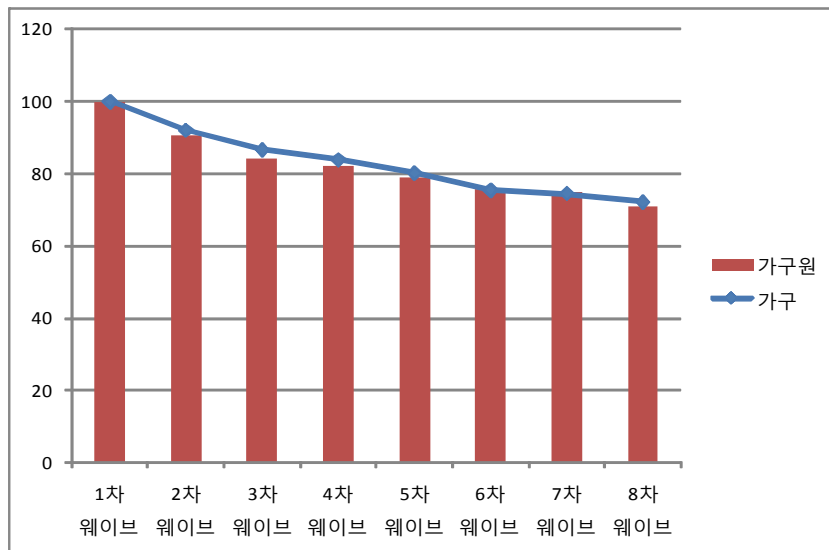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에서는 먼저 7차(2012년)에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8차 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던 7차 조사의 원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7차 조사 원가구와 8차 조사에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2-2-1〉과 같다. 8차 조사에서 1차 조사 표본인 원표본 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72.17%이며, 가구원은 71.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구의 경우 약 3.16% 떨어졌으며, 가구원은 5.04% 떨어져 원표본 패널이 7차 조사의 유지율에 비해 8차 조사의 탈락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1 참조).

〈표 2-2-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가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7,072	100.00	14,463	100.00
2차	6,511	92.06	13,083	90.46
3차	6,128	86.65	12,191	84.29
4차	5,935	83.92	11,909	82.34
5차	5,675	80.25	11,400	78.82
6차	5,336	75.45	10,945	75.67
7차	5,271	74.53	10,820	74.81
8차	5,104	72.17	10,274	71.03

[그림 2-2-1] 1~8차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변화추이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에서는 7차(2012년)에 새롭게 조사되었던 신규표본 1,800 가구에 대한 유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2-2-2>과 같다. 신규표본 가구 유지율은 93.88%이고 가구원 유지율은 93.24%로 원표본 경우의 신규표본 2차 유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2> 신규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구분	가 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신규표본 1차(2012)	1,800	100.00	3,375	100.00
신규표본 2차(2013)	1,690	93.88	3,147	93.24

1차 조사 대비 8차 조사완료 패널의 가구 및 가구원 수를 원표본, 신규표본, 신규(8차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가구 또는 가구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3> 1차 조사 대비 8차 조사완료 패널 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

구분	가 구		가구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5,104	69.80	10,274	70.71
신규표본	1,690	23.11	3,147	21.66
신규	85	1.16	385	2.64
계	6,879	94.07	13,806	95.01

1차 조사 대비 8차 조사의 원표본 패널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표 2-2-4>으로부터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27.83%의 탈락률을 보이며, 가구원의 경우 28.97%임을 알 수 있다.

〈표 2-2-4〉 8차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8차	탈락률	1차	8차	탈락률
전국	7,072	5,104	27.83	14,463	10,274	28.97
서울	1,335	791	40.75	2,847	1,719	39.62
부산	528	357	32.39	1,090	707	35.14
대구	422	294	30.33	873	582	33.33
인천	437	303	30.66	914	606	33.70
광주	244	198	18.85	519	430	17.15
대전	208	153	26.44	435	322	25.98
울산	203	132	34.98	424	293	30.90
경기	1,130	794	29.73	2,324	1,674	27.97
강원	236	184	22.03	465	367	21.08
충북	221	183	17.19	457	372	18.60
충남	321	292	9.03	662	580	12.39
전북	347	283	18.44	655	497	24.12
전남	377	313	16.98	709	559	21.16
경북	494	382	22.67	942	701	25.58
경남	488	379	22.34	975	736	24.51
제주	81	66	18.52	172	129	25.00

지역별 가구탈락률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40.75%로 가장 높은 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이 34.98%로 두 번째로 탈락률이 높다. 반면에, 충남지역의 탈락률은 9.03%로 탈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탈락률은 서울이 39.62%로 가장 높고, 부산이 35.1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탈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12.39%이다.

〈표 2-2-5〉 8차 조사의 신규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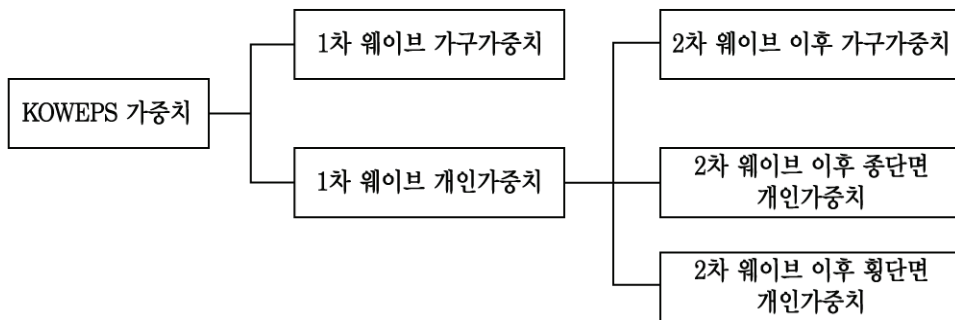
지역	가구			가구원		
	신규표본 1차 (2012)	신규표본 2차 (2013)	탈락률	신규표본 1차 (2012)	신규표본 2차 (2013)	탈락률
전국	1,800	1,690	6.11	3,375	3,147	6.76
서울	194	177	8.76	397	355	10.58
부산	133	124	6.77	239	222	7.11
대구	126	118	6.35	223	212	4.93
인천	109	102	6.42	199	187	6.03
광주	87	83	4.60	159	152	4.40
대전	89	83	6.74	166	159	4.22
울산	77	68	11.69	164	143	12.80
경기	180	170	5.56	370	347	6.22
강원	95	88	7.37	174	161	7.47
충북	90	83	7.78	176	162	7.95
충남	106	101	4.72	196	183	6.63
전북	104	98	5.77	190	175	7.89
전남	102	96	5.88	178	166	6.74
경북	130	124	4.62	229	214	6.55
경남	127	125	1.57	218	213	2.29
제주	51	50	1.96	97	96	1.03

신규표본 패널가구의 경우, 신규 표본 1차 조사대비 신규 표본 2차 조사의 신규표본 패널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표 2-2-5〉으로부터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6.11%의 탈락률을 보이며, 가구원의 경우 6.76%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가구탈락률을 살펴보면 울산지역이 11.69%로 가장 높은 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이 8.76%로 두 번째로 탈락률이 높다. 반면에, 경남지역의 탈락률은 1.57%로 탈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탈락률은 울산지역이 12.80%로 가장 높고, 서울이 10.5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탈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1.03%이다.

2. 가중치 조정 과정

한국복지패널의 8차년도 가중치 산정은 기본적으로 7차년도에 부여된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한국복지패널 가중치 부여체계는 다음의 [그림 2-2-2] 과 같다. 가구 가중치는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개념이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1차년도 가중치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중심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또한 가구는 개인과 달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면과 횡단면의 구분이 모호해져 이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구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림 2-2-2]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부여체계



한국복지패널의 7차년도의 경우 기존의 1~6차년도에서 구축된 패널표본과 7차년도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규표본 패널을 병합하여 새롭게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7차년도에서의 가중치 조정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이후 7차년도까지 구축된 기존의 패널표본은 6차년도의 응답률을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부터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6차년도의 종단면 가중치에 기초하여 7차년도에 조사된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7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패널은 ‘2010년 차상위 실태조사’의 최종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하여 1,800

가구의 추출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신규패널의 설계가중치를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정된 가중치에 대해 신규패널의 7차년도 종단면가중치는 2012년 새롭게 진입한 신규 가구이므로 모두 “0”으로 부여하였고,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 기존의 패널과 신규패널을 병합하여 새롭게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8차년도 개인 가중치는 7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단, 7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패널 1,800 가구의 가구원은 7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0이므로 7차년도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원표본 패널 가중치와 병합하여 8차년도의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 개인 종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8차년도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8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보정과 개인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한 뒤, 사후조정으로 계산되어 진다.

8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원표본과 신규표본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원표본의 경우에는 7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고, 신규표본의 경우에는 7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0이므로 7차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여 8차년도 종단면 기본가중치를 구한다.

8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다음과 같다.

8차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개인의 가중치 조정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 8차년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와 7차년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경제활동 상태이고, 8차년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8차와 7차년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갖는다.

다음으로 8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기본가중치에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된 응답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8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다. 8차년도의 기본가중치를 $w_{\text{기본 8차}}$,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8차}$ 라고 하면 무응답 보정을 통해 얻어지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_{8차} = w_{\text{기본 8차}} \times \hat{p}_{8차}^{-1}$$

그리고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뒤,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12년 인구 추계 값을 이용하여 사후조정을 실시하였다.

개인별 변동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패널가구원으로서 군 입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받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 패널가구에 진입한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또한 8차년도에 원 패널 가구로부터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 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가구의 신규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7차년도에서 탈락했던 가구원이 8차년도에 재진입인 경우에는 7차년도의 지역별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8차년도에서는 사후조정 후 극단 가중치 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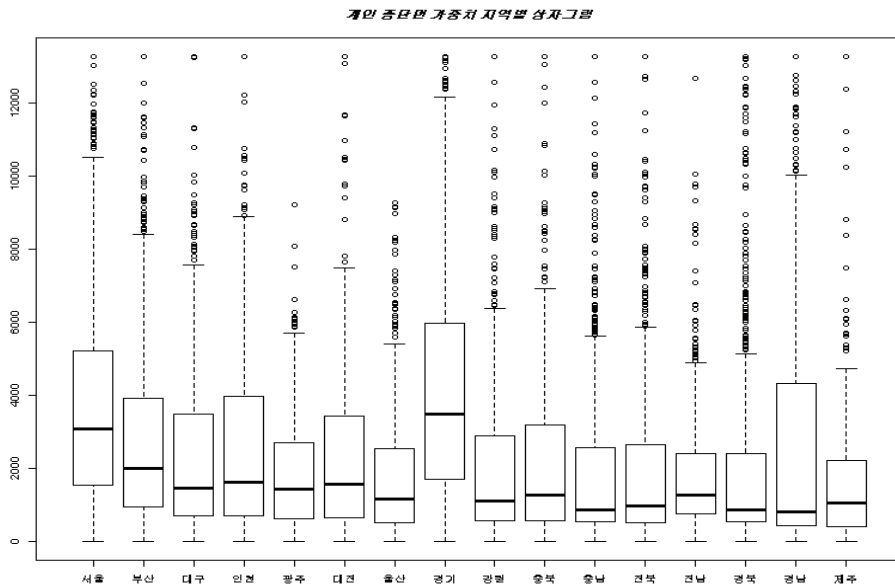
레이킹을 통한 사후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를 찾아서 절단(trimming)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성별*연령대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따라서 8차년도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최댓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표 2-2-6〉으로부터 8차년도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작고, 제주지역의 표준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중위값으로 비교하여 보면, 경기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높으며 경남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2-6〉 8차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14530	2759.0	22.4	4023.1	739.7	4023.0	0.8
서울	2263	3664.8	55.4	3082.6	1521.6	5205.0	1.5
부산	993	2851.6	83.5	1990.1	929.1	3924.3	2.9
대구	860	2319.9	76.0	1448.6	686.1	3472.3	3.3
인천	854	2616.9	87.1	1620.4	699.4	3975.5	3.3
광주	636	1873.5	60.9	1430.8	611.9	2702.9	3.3
대전	523	2311.8	98.9	1565.2	637.8	3438.7	4.3
울산	463	1853.4	85.8	1145.7	510.1	2533.2	4.6
경기	2209	4201.8	65.8	3474.6	1703.5	5957.8	1.6
강원	572	2168.5	101.7	1089.8	547.6	2896.1	4.7
충북	571	2164.8	94.4	1273.2	572.3	3183.6	4.4
충남	847	2007.1	83.2	869.2	542.6	2576.5	4.1
전북	727	1998.3	86.2	959.4	502.2	2656.9	4.3
전남	791	1822.8	58.0	1258.2	736.5	2411.6	3.2
경북	966	2181.7	95.3	855.9	542.8	2410.9	4.4
경남	1008	2558.4	98.4	808.3	430.6	4305.6	3.8
제주	247	1762.5	138.0	1036.1	384.1	2227.8	7.8

〔그림 2-2-3〕 8차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상자그림



나. 개인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8차년도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8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보정과 개인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한 뒤,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가중치를 적용하고 사후조정으로 계산되어 진다.

8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원표본과 신규표본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원표본의 경우에는 7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고, 신규표본의 경우에는 7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0이므로 7차년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여 8차년도 종단면 기본가중치를 구한다.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 8차년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와 7차년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8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기본가중치에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된 응답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8차년도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다.

그리고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뒤,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12년 인구 추계 값을 이용하여 사후조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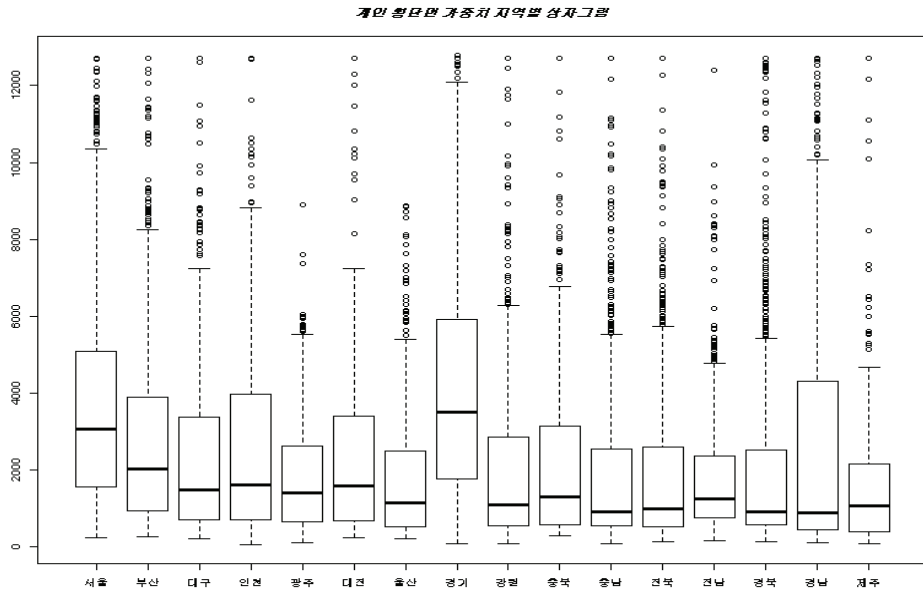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서는 레이킹을 통한 사후조정 후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 (상위 1%)를 찾아서 절단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성별*연령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최댓값을 13,000으로 제한하였다.

〈표 2-2-7〉로부터 8차년도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작고, 제주지역의 표준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중위값으로 비교하여 보면, 경기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높으며 경남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2-2-7〉 8차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14,530	2,759.1	21.8	1,778.7	773.7	3,996.7	0.8
서울	2,263	3,630.9	53.1	3,052.3	1,545.0	5,093.4	1.5
부산	993	2,864.2	81.5	2,025.3	946.4	3,902.9	2.8
대구	860	2,292.2	72.3	1,470.7	695.0	3,367.3	3.2
인천	854	2,610.8	85.5	1,616.2	708.4	3,980.8	3.3
광주	636	1,850.0	57.8	1,396.7	636.4	2,613.9	3.1
대전	523	2,296.0	94.1	1,587.0	667.9	3,397.6	4.1
울산	463	1,830.6	82.8	1,145.2	515.4	2,497.8	4.5
경기	2,209	4,237.7	64.0	3,509.0	1,755.0	5,923.8	1.5
강원	572	2,160.6	99.8	1,096.3	555.0	2,849.1	4.6
충북	571	2,177.7	91.9	1,291.0	581.7	3,130.5	4.2
충남	847	2,004.3	80.6	908.1	550.8	2,543.5	4.0
전북	727	1,987.5	84.1	979.3	510.6	2,598.9	4.2
전남	791	1,800.3	55.0	1,251.7	746.5	2,370.6	3.1
경북	966	2,247.4	95.3	909.3	567.7	2,523.1	4.2
경남	1,008	2,570.8	96.7	877.0	444.5	4,302.9	3.8
제주	247	1,756.7	134.9	1,052.0	381.4	2,163.6	7.7

〔그림 2-2-4〕 8차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상자그림



〈표 2-2-8〉로부터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2,759를 대표하고 있으며 종단면 가중치의 표준오차가 횡단면 가중치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8〉 8차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명)

변수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개인종단면 가중치	14,530	40089169.8	2,759.0	22.4	1,750.4	739.7	4,023.1
개인횡단면 가중치	14,530	40090701.2	2,759.1	21.8	1,778.7	773.7	3,996.7

다. 가구가중치 산출과정

8차년도 가구가중치의 산출과정은 먼저 가구의 패널 진입차수에 따라 8차년도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가구 내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8차년도에서 새롭게 진입한 신규 가구의 경우 신규 가구 내에 원표본(또는 신규표본) 가구원들의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원표본(또는 신규표본) 가구원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이들의 평균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계산된 가구가중치를 2012년 추계 가구수에 따라 지역별로 사후 조정하고, 극단값 조정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극단값 조정은 레이킹을 통한 사후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1%)을 찾아서 절단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가구원수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따라서 8차년도 가구 가중치의 최댓값을 10,500으로 제한하였다.

지역별 가구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2-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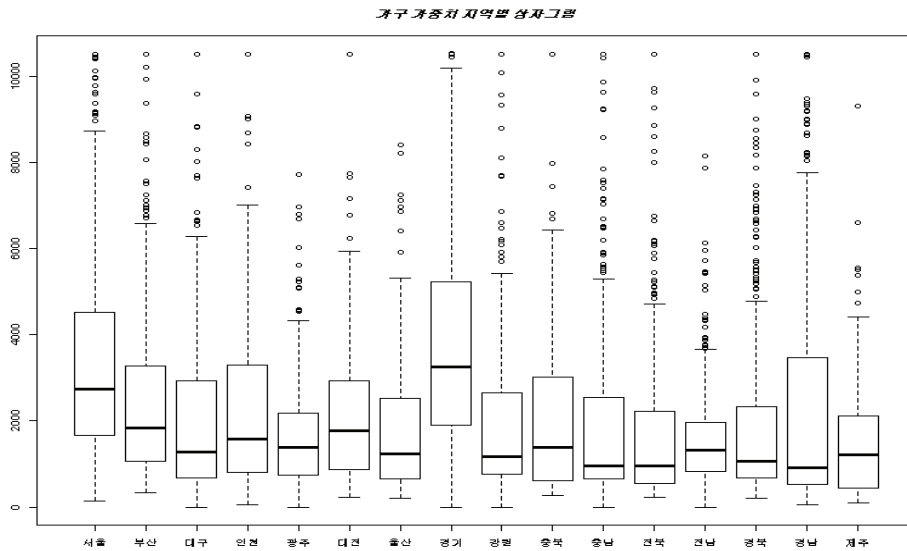
지역별 가중치 평균값은 경기지역이 가장 높고, 제주지역이 가장 낮다. 이에 대한 지역별 상대표준오차는 제주지역이 가장 높고 전남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8차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7312	2454.9	25.1	1697.9	852.0	3450.0	1.0
서울	1066	3315.4	66.6	2729.9	1656.3	4515.0	1.9
부산	515	2468.9	84.4	1829.5	1074.5	3282.3	4.0
대구	448	1986.5	83.1	1278.2	681.2	2936.4	4.1
인천	428	2256.4	95.2	1583.1	799.9	3293.7	4.6
광주	315	1706.0	72.9	1383.1	732.7	2178.6	3.8
대전	260	2146.1	103.9	1769.0	875.7	2935.3	6.1
울산	212	1836.1	113.5	1235.7	650.2	2515.6	5.4
경기	1051	3846.6	74.8	3250.1	1902.0	5226.0	2.2
강원	291	1996.4	111.8	1164.5	753.9	2654.1	6.1
충북	289	2015.3	105.9	1386.8	617.5	3024.5	6.2
충남	421	1894.5	97.6	960.8	666.9	2551.2	5.5
전북	401	1692.6	87.4	951.1	540.5	2226.4	5.4
전남	431	1618.1	54.6	1316.3	838.8	1979.6	3.3
경북	528	1967.0	95.1	1069.5	684.6	2341.7	5.7
경남	534	2230.6	106.9	920.0	533.5	3470.2	5.4
제주	122	1596.1	139.2	1210.5	440.9	2114.3	7.7

[그림 2-2-5] 8차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그림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자체 품질진단 결과

1. 자체품질진단의 개요

자체품질진단은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넓은 의미로서 통계생산자가 소관통계의 품질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수립하여 향후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여 회원국들의 통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DESAP(Development for Self Assessment Programme)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DESAP의 품질 차원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별로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DESAP의 개발목적은 조사 관리자들이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품질개선 수단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서, 유럽의 통계시스템(ESS)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제 분야와 특정한 조사방법과 무관하게 원시자료로부터 수집된 개별 통계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평가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 통계청에서는 2007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주기에 따라 정기품질진단과 더불어 통계작성 담당자가 스스로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통계법(통계법 1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은 매년 생산되는 조사통계로서 통계법에 따라 2008년 정기품질진단을 받았으며, 2013년에도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각 평가지표는 5점 척도로 평가되며, 그 결과가 통계청의 통계정책시스템(<http://narastat.kr/>)에 공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자체품질진단의 각 요소를 간단히 기술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결과표를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자체품질진단 주요 평가요소

가. 관련성

관련성(relevance)은 통계가 현재와 잠재적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요구되는 모든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사용된 개념(정의, 분류 등)의 범위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나타낸다.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계 이용자의 요구, 중요이용자의 서열화, 이용자 특성 등을 분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와 학술대회에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이용자들을 그룹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그룹별로 자료 이용 요청 및 다운로드 회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요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나. 정확성

정확성(accuracy)은 통계활동이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정확성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도 측정은 대개 오차 또는 오차 유의도 측면에서 측정되고 기술되며, 오차의 주요 원천들, 예컨대 표본추출, 무응답, 자료처리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정값들의 오차를 산출하고, 각 종 오차의 원천을 기술해야 한다. 표본오차, 무응답 오차, 포괄성 오차 등 다양한 오차를 평가하고, 이를 이용자를 위해 제시하는 지를 평가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기초분석 보고서상에 각종 추계 값에 대한 표준오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오차의 근원을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조사항목들의 과대, 또는 과소 포함여부를 평가하고, 통계단위의 오분류율과 원시 자료에 대한 에디팅작업,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 시의성(정시성)

통계 또는 정보의 시의성(timeliness)은 정보 이용성과 그 정보가 나타내는 사건 또는 현상간의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시의성은 상대적으로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산된다. 통상적인 측정 방법은 평균 산출 시간이다. 최대 산출시간은 가장 나쁜 경우로서 나타난다.

정시성(punctuality)은 자료의 공표날짜와 자료를 공표해야할 목표날짜간, 예를 들어 자료를 공표한다고 발표한 공식적인 날짜 또는 규정에 적시되었거나 사전에 이용자

와 협의한 날짜간의 시차를 나타낸다.

한국복지패널은 8차 조사부터 조사시점을 앞당겨 조사연도와 조사기준 연도 의 시차를 단축함으로써, 회상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자료 공표 시점은 매년 12월에 실시되는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이후를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동일한 시기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라. 비교성

비교성(comparability)의 목표는 지리적 영역, 비지리적 영역, 또는 시점들 간에 통계를 비교하여 적용된 통계적 개념과 정의의 상이성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교성을 분류하면 크게 지리적 비교성, 시간에 대한 비교성, 영역간 비교성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한국복지패널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조사항목별로 유사한 개념과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과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가계조사’ 결과를 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패널조사의 성격상 매년 조사항목에 대해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복지 관련 정책상의 복지 수요 대상자나 금액, 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마. 일관성

통계의 일관성(coherence)은 다양한 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신뢰성 있게 결합될 수 있는 타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비일관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더 쉽다. 통계가 서로 다른 자료원으로부터 산출될 경우, 상이한 접근, 분류, 방법론적 표준에 근거한 통계와는 완전히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매년 산출되는 각종 사회지표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시계열성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매년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경상소득 비교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3. 자체품질진단 결과

한국복지패널은 201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중 4.1점이며, 시의성(5.0), 비교성(5.0), 일관성(3.0)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항목에서는 모두 4.0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2-3-1〉 평가 요소별 평균 점수

통계명칭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관련성	평균
한국복지패널조사	4.0	5.0	5.0	3.0	4.0	4.1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http://narastat.kr/>

〈표 2-3-2〉 세부 주요문항별 평가 점수

품질차원	문항번호	문항 내용	점수
정확성	4-6	과대·과소 포함	3
	5-7	원자료 에디팅(내검) 필요성 평가	4
	5-9	조사에서 단위 무응답률	5
시의성	5-11	조사시점간격/공표	5
비교성	5-12	개념의 비교성	5
일관성	5-14-1	다른 통계와의 일관성 평가	3
관련성	5-2	이용자 정보	4
	5-3	이용자 충족성	4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 <http://narastat.kr/>



제3장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제1절 조사내용

제2절 조사방법

제1절 조사내용

1. 조사 설문지의 구성

한국복지패널의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차 이후에는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및 가구원은 각각 원·신규로 구분되기 때문에 원가구용(유형1), 신규가구용(유형2), 원가구원용(유형3), 신규가구원용(유형4), 부가조사의 총 5종의 조사표로 구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용 설문에는 원가구용 설문과 더불어 2012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및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중심)로부터 분리된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8차 신규가구용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원용 설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차년도에 가구원용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을 조사하기 위한 8차 신규가구원용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부가조사 설문은 각 년도마다 별도의 주제(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조사된다. 현재 부가조사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 등 세 주제에 대해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주기에 따라 2013년 8차 조사에서는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4차/7차년도에는 아동 부가조사, 2차/5차/8차년도에는 복지인식 부가조사, 3차/6차년도에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림 3-1-1] 조사 설문 구성



〈표 3-1-1〉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구분		내 용
가구	원가구 (유형1)	- 7차년도에 조사 완료된 패널 가구 (6차년도의 원가구 및 신규가구)
	8차 신규가구 (유형2)	- 2012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직장, 학업, 위탁,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 가구(유형1: 1~7차년도 조사완료가구)로부터 분리된 가구 ※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분리된 가구원은 원가구에 속하는 가구원(9개월 이상 생계를 함 께한 가구원)이므로 8차 신규가구(유형2)로 조사하지 않고, 원가구(유형1)로 조사
가구원	원가구원 (유형3)	- 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원설문 응답 가구원 - 만15세 이상(1997년 출생자 및 그 전 출생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 2012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여 8차 신규가구용(유형2) 설문으로 조사하더라도, 2012년(7차년도)에 가구원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이면 원가구원용(유형3)으로 조사
	8차 신규가구원 (유형4)	- 7차년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1) 2012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2) 2012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8차년도에 출생, 결혼, 합가 등으로 원가구 혹은 신규가구에 새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진입한 가구원은 2012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 가구 원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차 신규가구원용 설문 대상이 아님

다음으로 8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에 대해 살펴보면(표 3-1-2 참조), 먼저 가구용 설문은 표본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기준 년도는 2012년 1년, 조사기준시점은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다. 가구원용 설문은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만 15세 이상 여부의 판단은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하되, 신규 진입자와 2012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용 설문의 조사기준년도와 시점은 가구용 설문과 동일하다. 8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한 복지인식 설문의 대상은 7차 전체 표본가구 중 지역별(16개시도)/계층별(저소득, 일반)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준시점은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과 달리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표 3-1-2〉 8차년도 조사표 유형별 조사대상 및 조사기준시점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년도: 2012.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 (중고생 제외) -2012.2.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년도: 2012.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7차 총 표본가구 중 조사대 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만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2. 조사문항

가구용(유형1·유형2), 가구원용(유형3·유형4), 부가조사용(복지인식) 각 설문의 조사 영역은 다음 〈표 3-1-3〉과 같다. 가구용 설문은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는데, 구체 적으로 보면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 경제활동상태, 건강 및 의료실태,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총 1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 문은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응답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로, 해당되는 가구원 개인만 이 응답할 수 있는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단, ‘교육’과 ‘개인사’의 경우 유형4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됨). 복지인식 부가조사 설문은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와 성향 등의 조사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3〉 8차년도 조사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가구용 (원·신규)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가구원용 (원·신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교육(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됨) G. 개인사(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됨)
복지인식 부가조사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III. 정치참여와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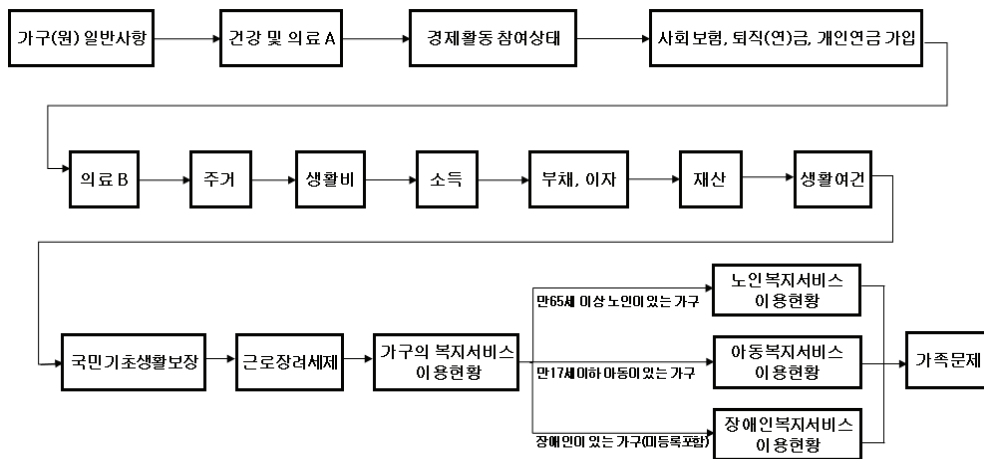
이상 큰 틀에서 살펴본 3개 조사표의 조사영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 3-1-4〉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 관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에 나뉘어져 있다. 근로 관련 문항은 주로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설문에 배치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근로능력정도 및 경제활동상태 관련 문항들은 가구용 설문에 삽입되어 있다. 가구의 경제상황은 가구단위의 소득과 지출 및 재산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가구용 설문에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 외 가구여건 관련 문항은 주로 가구용 조사 설문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다만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등에 대한 인식 문항은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별 가입 및 수급현황은 문항의 적절한 응답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으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기타 개인의 의식 및 인식과 관련된 문항이나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등에 관련된 문항들은 가구원용 설문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4〉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G. 개인사
2. 근로활동	1) 직업이력	가구원용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B. 근로
3.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VII. 생활비, X. 재산
	3) 재산 및 부채	가구용 IX. 부채 및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4) 기초생활	가구용 XI. 생활여건
4.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II. 건강 및 의료A, V. 의료B
	3) 주거	가구용 VI. 주거
	4) 가족관계	가구용 XVII. 가족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5) 기타 가구여건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1/4/7차) 장애인 부가조사(3/6차)
5.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1) 사회보험	가구용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제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3/6차)
6. 기타	1) 기타 생활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가구원용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2)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3) 복지·사회·정치문제 인식	부가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2/5/8차) 가구원용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성역할)

앞서는 크게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하에서는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별로 좀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용(유형1·유형2) 설문에서는 가구원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의료이용현황,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의료, 주거, 지출·소득·재산·생활여건 등 욕구영역별 가구여건을 파악하고, 더불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 가구의 사회보장 가입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가구용 설문의 전체적인 조사영역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3-1-2]와 같으며, 영역별 세부 조사내용은 <표 1-1-5>와 같다.

[그림 3-1-2] 가구용(유형1·유형2) 설문의 조사영역 흐름도



<표 3-1-5> 가구용(유형1·유형2) 설문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가구일반사항	1) 가구원수(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	2012년 1년간
	2)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전체 가구원 대상
	3) 가구 일반사항 - 가구형태: 단독가구, 모/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기타 - 기초보장수급형태: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특례가구 등 - 의료급여수급형태: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가유공자 ※ 기초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 세분화: 가구원 전부 수급, 가구원 중 일부수급	2012.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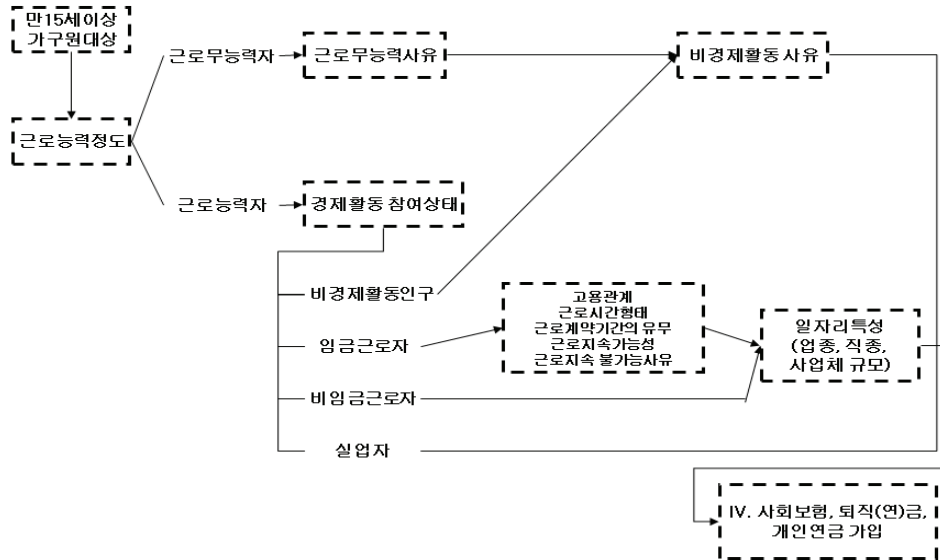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I. 건강 및 의료 A	1) 건강상태	2012. 12. 31 기준 전체 가구원 대상,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횟수, 만성질환, 주요병명,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2012년 1년간 전체 가구원 대상,
III. 경제활동상태	1) 근로능력정도 -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	2012.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2) 경제활동참여상태 - 2012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2012.12.31기준 경제활동 참여상태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근로지속 가능 성 및 불가능 사유,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4) 비취업자: 비경제활동 사유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형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가입종별, 국민연금 납부여 부, 미납유형, 납부예외 사유 및 기간, 미납 이유 및 기간, 미가 입 이유	전체 가구원 대상 (다만, 만 15세 미만 가구원 등 해당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은 '비해당'으로 기입)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금 적용여부, 퇴직연금 가입여부	
	4) 개인연금 가입 여부	
	5)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가입여부	
V. 의료 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직장/지역 가입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형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건강보험 이용시 문제점	2012. 12. 31 기준 또는 2012년 1년간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종류, 의료급여 이용시 문제점	
	3) 민간의료보험 12월 보험료	
VI. 주거	1) 이사경험 여부	2012년 1년간
	2)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 점유형태	2012.12.31 기준
	3) 주택 구입 - 주택 가격(보증금), 주택비용 마련 방법, 지난 1년간 주택관련 총 부채 원금 상환액, 12.31기준 주거관련 부채액, 연체 횟수	2012.12.31 기준 2012년 1년간
	4)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 주택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여부 등 - 방갯수, 주거면적,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 종류 및 사 용형태	2012.12.31 기준
	5) 주거복지사업의 이용경험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2012년 1년간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VII. 생활비	1) 비목별 생활비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2012년 1년간 월평균액
	2) 사적이전지출 -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 등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환산)	
	3)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4) 총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5)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 적정생활비 - 한 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 한 달 동안 생활하는 필요한 적정생활비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12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총급여액, 고용주자영자 순소득 및 전입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자규모·자가소비액판매수입이전소비액잡수입총비용·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이전소비액잡수입총비용·순소득, 기타근로소득	2012년 1년간 총액
	2) 원천별 가구 소득(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기타정보보조금, 기타소득, 현금금, 사적이전소득(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에게 받은 현금과 현물, 9개월 미만 동거가구원의 현금과 현물 소득,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개월수 및 급여액	
IX. 부채, 이자	1) 부채 -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탄 계돈 등)별 금액	2012.12.31 기준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 제외한 기타 이자)	2012년 1년간 총액
X. 재산	1) 부동산 - 소유부동산(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별 금액 - 점유부동산별(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금액	2012.12.31 기준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3) 금융재산 - 금융재산별(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타기전 부은 것등, 기타) 금액	
	4) 기타 재산 -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대수 및 가격 - 기타 재산별(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등 운송생계수단, 귀금속 등) 총액	
XI. 생활여건	1) 박탈지표 - 집세 미납·공과금 미납·세금 미납·공교육비 미납·난방 못함·의료서비스 이용 못함·신용불량 경험 여부·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급여 자격 정지 여부	2012년 1년간
	2) 식생활 보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료품 미구입 및 균형잡힌 식사 불가 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식 및 결식 경험여부·경험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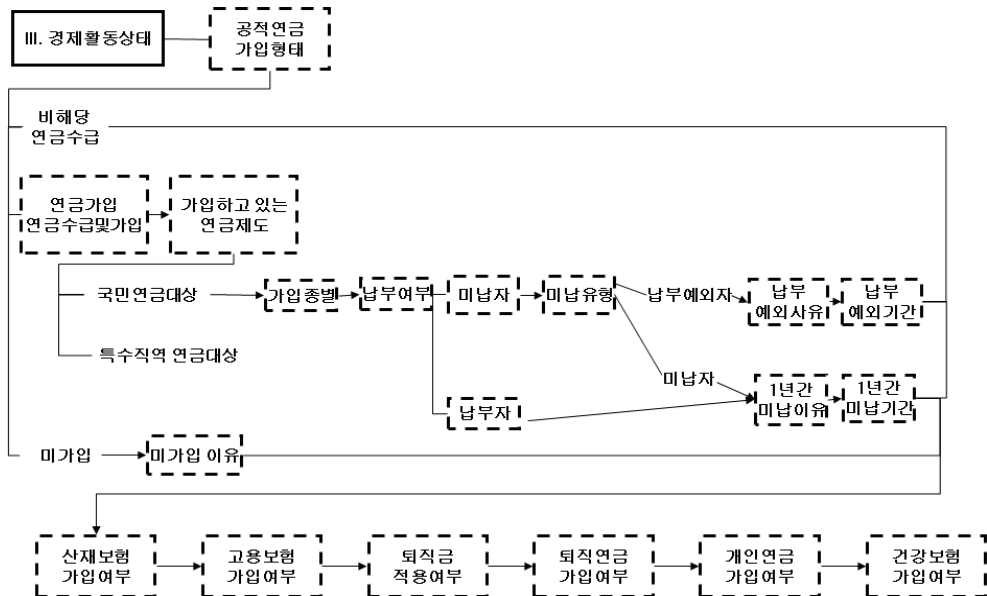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XII. 국민기초 생활보장	1) 급여 신청 및 탈락 -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선정탈락사유, 선정탈락 후 생계해결방법	2012년 1년간
	2) 2012년 1년간 수급이력 - 수급이력, 수급이유, 급여수준 평가, 수급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 피 후 필요지원 비목	
	3) 수급 탈피 -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XII-1. 근로장려 세제	1) 제도인식, 신청여부 - 제도인식여부, 급여신청여부, 조사시점 기준 급여요건 충족여부 인식 및 급여신청여부	2012년 5월 경, 2012년 기준
	2) 급여수급 경험 - 급여수급여부, 급여 사용처, 수급급여 실생활 도움정도, 근로의 욕에 대한 영향	2012년 추석 즈음 기준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가구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여부, 월단위 본인부담액, 급여종류별 이 용경험 여부	2012년 1년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2012년 1년간,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아동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2012년 1년간 만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2) 아동 건강 - 신규 진입한 아동 여부, 출생 시 체중,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3)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 이용여부, 이용기관, 월평균 사교육비, 월평균 보육비	
XVI.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이용	1)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2012년 1년간 등록·비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XVII. 가족	1) 가족의 갈등 -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 가족갈등 대처 방법	2012년 1년간

가구용 설문 영역 중 일련의 논리를 가지고 구성된 경제활동상태 영역, 사회보험/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구체적인 논리도는 각각 다음의 [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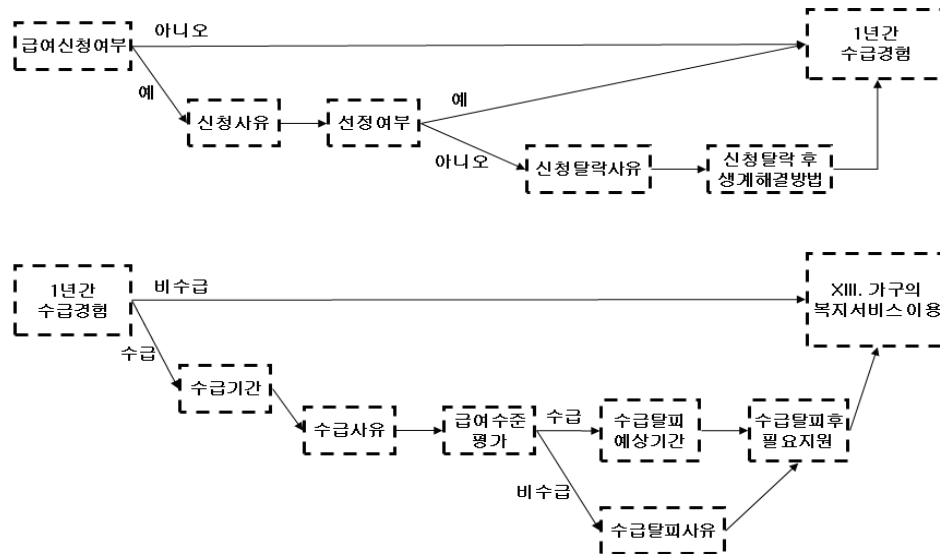
[그림 3-1-3] 가구용 조사표 Ⅲ.경제활동상태 영역 논리도



[그림 3-1-4] 가구용 조사표 IV.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그림 3-1-5] 가구용 조사표 XII.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다음은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에 해당하는 설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용 설문은 중·고등학생이 아닌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퇴직금·개인연금 수급,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과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교육, 개인사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구원용(원·신규) 설문 의 각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다음 <표 3-1-6>과 같다.

<표 3-1-6> 가구원용(유형3·유형4) 설문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여부/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일시금/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일시금/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보훈연금·기타연금 일시금/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2012년 1년간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수급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수급여부,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수 및 총 급여액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퇴직금 수급여부,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B. 근로	1) 근로유형	2012.12.31기준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2) 취업자 - 실직경험여부, 실직사유, 현직장 근속년수, 근로개월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 평균 임금,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노조가입여부,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2012.12.31 기준, 2012년 1년간
	3) 미취업자 -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총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희망임금,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지난주 알맞은 일자리 유무, 지난 4주간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4) 직업기술 - 새로이 습득한 직업기술 종류 및 해당 직종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여부, 유해환경 근로경험 여부	2012년 1년간
	2) 생활만족 - 건강상태가족의 수입주거 환경가족관계직업사회적 친분관계여가생활 만족도 등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지역사회활동 -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2012년 1년간
	2) 부모님과 의 접촉정도 - 비동거 부모님의 유무/왕래 횟수/전화통화 횟수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전일제와 가족일상생활 양립,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노동과 가족관계, 전업주부 역할과 소득활동 역할 간 중요성,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 소득기여,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2012년 조사일 현재
E. 생활습관, 가족관계, 정신건강	1) 생활습관 및 출산경험 여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출산 경험여부	2012년 조사일 현재 2012년 1년간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존중감	2012년 조사일 현재
	3) 가족관계 - 부부폭력 경험, 부부폭력 가해 경험, 가족생활부부관계자녀와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12년 1년간, 2012년 조사일 현재
	4) 자살관련 -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	2012년 조사일 현재
F. 교육 (신규가구원용)	1) 최종학력	
	2) 출신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 - 일반계(일반) 등 17가지 유형, 소재지(사군구 단위까지 기재)	
	3) 출신 대학전공계열 및 소재지 - 인문계열 등 12가지 유형, 소재지(사군구 단위까지 기재)	
G. 개인사 (신규가구원용)	1) 아동기 - 성장지역, 경제생활상태, 조실부모·부모이혼·학업중단·친척집성장 경험 여부 및 연령	
	2) 부모님 -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경험 및 경제적 도움 정도	
	3) 직업이력 - 만15세 이후 첫 직장·이후 가장 최근까지 6개 주요 직장의 근무 기간 및 고용형태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 기술 직종	
	5) 다문화가정 여부 -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되며, 조사내용은 사회계층구조 및 소득격차, 정책영역별 정부역할, 복지제도 및 운영·재원부담 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조세부담 및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 수준과 성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3-1-7〉 복지인식 부가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구조 및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 제도영역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인식 - 복지영역별 운영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II.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수준 및 부담에 대한 인식 - 세금 사용 영역 및 방식에 대한 인식
III. 정치참여와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 정도 및 정치성향에 대한 인식

제2절 조사방법

1. 현지조사 방법

가. 조사준비

1) CAPI 시스템 개선

2009년의 5차 조사부터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시스템을 적용하여 그동안 전통적인 PAPI(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을 탈피한 최신의 조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을 위한 CAPI 시스템은 4차 조사에서 추적조사 시 개발된 Blaise 기반의 CAPI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진일보한 조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와 C언어를 이용한 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CAPI 시스템 개발기간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CAPI

Manager, CAPI Interviewer, CAPI Reviewer, DB 및 전송 프로토콜 등을 개발하였으며, 그 후 약 15일간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2013년 1월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시스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2) 사전 안내문의 발송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에서는 현지 실사에 앞서 2012년 7차 조사에서 구축한 7,617 가구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사전 안내문은 두 번을 발송하였는데, 연초에 연하장을 보내 7차 조사 조사 협조에 대한 고마움과 8차 조사 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설날을 맞이하여 설 선물과 함께 조사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였다.

패널 조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조사 대상가구들의 원활한 조사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표본 가구들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사를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이사 가구 파악을 위하여 이사하였음을 연구원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이사 가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원에 잘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면 조사 대상가구의 이사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3) 조사원 모집 및 교육훈련

2013년도 8차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등록된 조사원 pool 중에서 패널조사 및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평가 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조사지도원 10명과 조사원 30명으로 총 40명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의 8차 조사에서도 7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CAPI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조사원들의 CAPI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 교육은 컴퓨터활

용 교육 1일과 조사표 교육 1일 등 총 3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둘째 날은 간은 CAPI 시스템 개발업체인 한국리서치의 협조로 CAPI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수집 및 전송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되었고, 나머지 1일간은 종이 조사표를 중심으로 조사표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 마지막 1일은 요도 확인방법,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 등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한국리서치의 조사원강의실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진들이 각각 자신의 조사표 개발 파트에 따라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① 조사의 취지와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 ② 조사표 종류별 작성에 따른 지침서 설명, ③ 조사에 따른 기타 주의사항, 즉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연령조건표, 사회복지제도 참고자료, 시세 및 소득 참고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명부 활용방법과 조사안내문 및 팸플릿 배포, 가구방문 시 인사말 등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나.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1) 조사기간 및 현지조사의 운영

현지조사는 2013년 1월 12일~2012년 6월 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특히 조사의 초기단계에는 CAPI 시스템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조사지역당 가구 수를 일부 조정하여 할당하였고, 점차로 시스템에 적응되면서 조사 진행도가 본 궤도에 이르렀다. 본 조사이후 조사초기에 일정상 누락된 패널가구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기간은 26인의 조사원이 약 14일간 CAPI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절차는 조사지도원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패널가구들에 대한 조사협조를 부탁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여야 할 공공부조 수급액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조사팀은 4인 1조로 운영하여 조사지도원 1인이 3인의 조사원을 통솔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지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지도원은 조사원의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에디팅하고 미흡한 경우 재조사를 지시하며, 조사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상의 애로사항이나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원에게 바로 연락함으로써 통일적 추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이 CAPI 시스템으로 구현된 노트북상의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에디팅 단계에서 전화면접 및 추가 검증을 통해 응답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설문지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2. 조사자료 처리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CAPI 시스템에 의해 자동 저장되며, 저장된 자료에 대한 현지 오류검증과정을 1차적으로 수행한 후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오류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작성상의 오류(미기입 또는 오기입)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후 지도원이 최종 점검 작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다.

1차 조사부터 4차 조사까지는 종이조사표(PAPI)를 이용한 조사이므로 조사완료 후 별도의 코딩 및 입력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5차 조사 이후부터는 CAPI 시스템을 도입하여 별도의 입력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 에디팅(soft editing) 과정을 통해 오류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최종 에디팅이 완료된 자료는 SAS 및 STATA 데이터 포맷으로 한국복지패널 조사DB에 저장되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에 따라 SAS 및 STATA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분석 보고서에 필요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제1절 일반적 특성

제2절 경제활동

4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 경제활동

제1절 일반적 특성

전체적으로 기타가구(72.6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단독가구(25.34%)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는 1.12%, 부자가구는 0.51%이었고, 소년소녀가장가구는 0.37%로 나타났다.

〈표 4-1-1〉 가구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가구	25.34	49.12	16.03
모자가구	1.12	2.36	0.64
부자가구	0.51	0.52	0.51
소년소녀가장가구	0.37	0.99	0.13
기타가구	72.65	47.01	82.69
계	100.00	100.00	100.00

균등화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일반가구로, 그 미만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가구에서는 기타가구가 82.69%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47.0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단독가구와 모부자가구의 비중은 저소득가구(각각 49.12%, 2.88%)가 일반가구(각각 16.03%, 1.1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0.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에서는 0.13%에 불과하였다.

다음의 〈표 4-1-2〉는 가구규모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규모는 1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3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2인(25.18%), 3인(21.35%), 4인(20.91%)의 순이었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4명 이하인 가구가 92.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가구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인	25.34	49.12	16.03
2인	25.18	31.69	22.63
3인	21.35	11.76	25.11
4인	20.91	5.03	27.14
5인	5.57	1.90	7.01
6인	1.18	0.37	1.50
7인 이상	0.45	0.13	0.58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의 〈표 4-1-3〉는 평균 가구원수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가 2.6명이며, 일반가구 2.9명, 저소득가구 1.8명으로 나타나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1명 정도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가구유형별 평균가구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가구원수	표준오차
전 체	2.6	0.02
저소득	1.8	0.02
일 반	2.9	0.02

1.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의 〈표 4-1-4〉는 복지패널 조사대상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가구주와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가운데 가구주가 35.07%, 가구주의 배우자가 24.03%, 가구주 및 배우자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18%,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등 직계 비속이 36.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직계존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3.05%로 일반가구의 2.02%보다 약간 높았으며, 직계비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22.95%로 일반

가구의 39.09%보다 낮았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남성(50.07%)과, 여성(49.93%)의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56.27:43.73로 여성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51.24:48.76로 남성 가구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20세 미만인 경우가 21.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40대(17.06%), 30대(16.01%), 50대(14.83%), 20대(13.63%)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45.59%로 일반가구의 11.16%에 비해 약 4.1배 정도나 높았다.

〈표 4-1-4〉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5.07	49.94	32.33
	가구주의 배우자	24.03	20.54	24.68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2.18	3.05	2.02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6.57	22.95	39.09
	기타친인척(형제자매포함)	2.14	3.51	1.89
성별	남성	50.07	43.73	51.24
	여성	49.93	56.27	48.76
연령	20세 미만	21.95	14.96	23.24
	20~30세 미만	13.63	6.38	14.97
	30~40세 미만	16.01	7.70	17.54
	40~50세 미만	17.06	10.99	18.17
	50~60세 미만	14.83	14.37	14.91
	60~70세 미만	8.45	15.90	7.08
	70~80세 미만	5.78	20.66	3.03
	80세 이상	2.29	9.03	1.05
학력	초등졸 이하	24.62	45.08	20.85
	중학교졸 이하	9.67	14.29	8.82
	고등학교졸 이하	28.38	25.12	28.98
	전문대졸 이하	10.95	6.31	11.80
	대학교졸 이하	23.45	7.89	26.32
	대학원졸 이상	2.92	1.30	3.22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	비장애인	93.29	81.05	95.55
	장애인	6.71	18.95	4.45
	중증장애인(1,2급)	1.75	4.84	1.19
	경증장애인(3급이하)	4.64	13.54	2.99
	비등록장애인	0.32	0.57	0.27
만성질환	비해당	65.78	39.99	70.53
	있음	34.23	60.01	29.47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4.09	2.48	4.38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61	1.16	1.69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28.53	56.37	23.40
혼인상태	비해당	18.52	12.66	19.59
	유배우	50.91	43.47	52.28
	사별	5.49	17.56	3.27
	이혼	3.22	8.63	2.22
	별거	0.43	0.92	0.34
	미혼	21.38	16.61	22.26
	기타(사망 등)	0.04	0.14	0.03
종교	있음	49.41	54.12	48.54
	없음	50.59	45.88	51.46
동거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4.90	97.25	94.47
	비동거	5.09	2.75	5.53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14	0.59	1.25
	해외근무 중	0.17	0.06	0.19
	학업(해외유학포함)	3.02	1.19	3.36
	입원, 요양	0.06	0.13	0.05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2	-	0.02
	가출	0.02	0.09	0.01
	분가	0.30	0.21	0.32
	사망	0.09	0.34	0.04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자녀	0.06	-	0.07
	기타(군복무중)	0.19	0.14	0.20
	무응답	0.02	-	0.02
계		100.00	100.00	100.00

주: 하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전체 가구원의 학력분포는 고졸 이하(28.3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초졸(24.62%), 대졸(23.45%), 전문대졸(10.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고졸(28.98%), 대졸(26.32%), 전문대졸(11.80%)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졸 이하가 45.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25.12%), 중졸(14.29%), 대졸(7.89%)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은 높고 학력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원에서 장애를 가진 가구는 6.71%였으며, 이중 1, 2급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는 1.75%, 3급 이하 경증장애를 가진 경우가 4.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등록장애인의 비율도 0.32%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장애 가구원 비율이 18.95%로 나타나서 일반가구의 4.45%에 비해 약 4.3배 정도 높았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중증장애인 가구원 비율은 4.84%로 일반가구의 1.19%에 비해 약 4.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경증장애인 가구원의 비율도 13.54%로 일반가구의 2.99%에 비해 약 4.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 중 34.23%의 가구원에서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원 60.01%로 일반가구(29.47%)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8.53%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56.37%를 차지하였다.

2012년 현재 가구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50.91%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은 저소득가구에서는 사별이 17.56%, 이혼이 8.63%로 나타나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50대 연령층이 많은 일반가구에 서는 52.28%에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은 49.41%, 종교가 없는 사람은 50.59%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종교가 있는 가구원(48.54%)과 종교가 없는 가구원(51.46%)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가구원의 비율(54.12%)이 종교가 없는 가구원(45.88%)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원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5.09%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3.02%는 학업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른 지방 근무, 분가, 해외근무, 사망 등으로 가구원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원도 있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입원 혹은 요양,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비동거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학업과 타지방 근무로 인한 비동거로 나타났다.

2.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1-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남성 가구주(81.5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남성 가구주가 57.94%, 여성가구주가 42.06%, 일반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88.25% 여성가구주가 11.75%로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중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대 가구주가 26.50%, 50대 가구주가 25.32%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27.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30대 가구주가 20.16%, 40대 가구주가 30.65%로 나타나 근로활동이 활발한 30·40대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가 60.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5〉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81.53	57.94	88.25
	여성	18.47	42.06	11.75
연령	20세 미만	0.04	0.16	0.01
	20~30세 미만	3.04	1.80	3.39
	30~40세 미만	16.93	5.59	20.16
	40~50세 미만	26.50	11.92	30.65
	50~60세 미만	25.52	20.16	27.04
	60~70세 미만	13.77	17.79	12.62
	70~80세 미만	10.40	28.75	5.18
	80세 이상	3.80	13.83	0.95
학력	초등졸 이하	17.08	47.11	8.53
	중학교졸 이하	10.42	15.65	8.93
	고등학교졸 이하	32.76	22.63	35.64
	전문대졸 이하	9.07	5.32	10.14
	대학교졸 이하	26.15	8.09	31.29
	대학원졸 이상	4.52	1.21	5.46
장애	비장애인	89.60	78.07	92.88
	장애인	10.41	21.93	7.12
	중증장애인(1,2급)	1.81	4.25	1.11
	경증장애인(3급 이상)	7.85	16.76	5.31
	비등록장애인	0.75	0.92	0.70
만성질환	비해당	51.99	25.50	59.53
	있음	48.01	74.50	40.46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4.29	2.70	4.74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51	1.17	1.61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42.21	70.63	34.11
혼인상태	비해당	0.01	0.03	-
	유배우	72.09	43.51	80.22
	사별	11.22	30.95	5.60
	이혼	7.85	15.00	5.81
	별거	1.04	1.65	0.87
	미혼	7.80	8.85	7.50
	기타	0.00	0.00	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종교	있음	48.17	54.98	46.23
	없음	51.83	45.02	53.77
동거여부	동거(같이살고 있다)	96.82	98.90	96.22
	비동거	3.18	1.10	3.78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2.77	0.77	3.33
	해외근무 중	0.34	0.12	0.41
	학업(해외유학포함)	0.02	0.11	-
	입원, 요양	0.01	-	0.01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2	-	0.03
	사망	0.02	0.10	-
계		100.00	100.00	100.00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가구주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가 3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졸 이하가 26.15%, 초졸 이하 17.08%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졸 이하의 비율이 4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가 22.6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는 고졸이하의 비율이 35.64%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이하 31.29%, 전문대졸 이하 10.14%의 순이었다.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가구는 10.41%였으며, 이 중 1,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는 1.81%, 3급 이하 경증장애를 가진 경우가 7.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록장애인의 비율도 0.75%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장애 가구주 비율이 21.93%로 나타나서 일반가구의 7.12%에 비해 약 3.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중증장애인 가구주 비율은 4.25%, 경증장애인 가구주 비율은 16.76%로 일반가구의 중증장애인 가구주(1.11%) 및 경증 장애인 가구주(5.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48.01%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74.5%로 일반가구(40.46%)에 비해 약 1.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2.21%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70.63%를 차지하였다.

전체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72.09%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60대 이상 가구주가 많은 저소득가구에서는 사별이 30.95%, 이혼이 15%로 나타나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50대 가구주가 많은 일반가구에서는 80.22%에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종교가 있는 가구주는 48.17%, 종교가 없는 가구주는 51.83%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주(53.77%)가 높게 나타났으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종교가 있는 가구주(54.98%)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주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3.18%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2.77%는 타지방 근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근무, 입원 혹은 요양, 학업 등으로 가구원과 같이 살지 않는 가구주도 있었다. 특히,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다른 지방에 근무가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2절 경제활동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33%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소득가구는 71.84%, 일반가구는 95.53%로 나타났다. 단순근로가능 또는 단순근로미약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은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에게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중증장애가 5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91.33	71.84	95.53
	단순근로가능	3.91	12.50	2.06
	단순근로미약자	3.57	12.26	1.70
	근로능력 없음	1.19	3.40	0.71
계		100.00	100.00	100.00
근로무능력 사유	중증장애	54.19	51.29	57.17
	질병 또는 부상	33.74	37.37	29.99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11.96	11.11	12.83
	기타	0.12	0.23	0.00
계		100.00	100.00	100.00

근로가 가능한 가구원(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자)를 대상으로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가구의 25.90%, 일반가구의 30.92%로 분석된 반면, 저소득가구는 2.57%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밖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2-2〉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25.90	2.57	30.92
임시직 임금근로자	13.68	7.89	14.92
일용직 임금근로자	5.96	9.03	5.30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50	1.92	0.19
고용주	2.04	0.28	2.42
자영업자	8.60	9.36	8.44
무급가족종사자	2.75	3.60	2.57
실업자	1.33	2.08	1.17
비경제활동인구	39.23	63.27	34.06
계	100.00	100.00	100.00

반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실업자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1.33%이었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39.23%로 나타났다. 이를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저소득가구에서 63.27%, 일반 가구에서 34.06%로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표 4-2-2 참조).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응답한 가구원의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가구 중에서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가 30.33%, 학업이 26.27%, 가사가 24.15%를 보였다. 이를 소득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근로의사 없음이 약 56%를 차지한 반면, 일반가구는 학업이 약 32%, 가사가 약 28%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구직활동포기가 7.28%, 근로무능력이 5.38%를 보였으며, 일반가구는 취업준비가 5.60%, 양육이 5.24%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4-2-3〉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3.03	5.38	2.09
군복무	0.92	0.51	1.08
학업	26.27	10.99	32.38
진학준비	1.20	0.19	1.60
취업준비	5.04	3.65	5.60
가사	24.15	14.08	28.18
양육	3.87	0.44	5.24
간병	0.60	0.94	0.46
구직활동포기	3.97	7.28	2.65
근로의사 없음	30.33	55.58	20.24
기타	0.62	0.96	0.48
계	100.00	100.00	100.00

주된 경제활동 상태에서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업종 및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제조업이 20.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순을 보였다.

이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8.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단순노무종사자가 35.59%로 약 1/3 정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가 23.79%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경우는 전체 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4-2-4〉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6.76	24.96	4.66
	광업	0.11	0.00	0.12
	제조업	19.20	11.08	20.1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92	0.02	1.0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64	0.54	0.65
	건설업	6.62	4.99	6.80
	도매 및 소매업	12.61	13.67	12.48
	운수업	4.72	2.94	4.93
	숙박 및 음식점업	6.93	8.88	6.7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6	1.09	3.62
	금융 및 보험업	3.43	1.40	3.67
	부동산 및 임대업	0.73	0.57	0.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8	0.88	2.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51	4.47	4.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34	5.48	5.32
	교육 서비스업	8.60	3.53	9.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22	3.46	5.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0	2.01	1.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59	6.70	4.35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1.42	3.33	1.20
	국제 및 외국기관	0.12	0.00	0.13
	계	100.00	100.00	10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종	관리자	3.89	1.42	4.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26	5.89	19.68
	사무 종사자	15.99	2.90	17.49
	서비스 종사자	9.66	9.39	9.70
	판매종사자	10.23	10.03	10.2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6.49	23.79	4.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08	4.88	8.45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24	6.11	10.71
	단순노무종사자	16.86	35.59	14.71
	군인	0.29	0.00	0.33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원(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1~4명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가구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61.29%로 약 2/3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구원이 전체의 16%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 가구는 2.74%, 일반가구는 17.5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일반가구의 가구원이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5〉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4.67	61.29	31.61
5~9명	12.50	12.13	12.54
10~29명	13.30	11.90	13.46
30~49명	5.36	3.14	5.62
50~69명	3.55	3.39	3.56
70~99명	2.55	1.06	2.72
100~299명	7.42	2.37	8.00
300~499명	2.17	0.97	2.31
500~999명	2.05	0.37	2.24
1,000명 이상	16.00	2.74	17.53
잘 모름	0.42	0.62	0.40
계	100.00	100.00	100.00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단, 중고생은 제외) 중에서 취업자인 경우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일반 가구는 약 22일, 저소득 가구는 약 20일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 가구는 약 46시간, 저소득 가구는 약 43시간으로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30	10.83	11.35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1.63	19.77	21.84
주당 평균 근로시간	46.26	43.12	46.48

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단, 중고생은 제외) 중에서 1년 동안 근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은 72.10%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근로 경험이 있는 가구원 중에서 8.99%는 안전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약 51%가 근로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11.03%가 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에서는 약 77%가 근로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8.71%가 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노동환경 유해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27.90		49.05		23.47	
해당	72.10	100.00	50.95	100.00	76.52	100.00
그렇다	6.48	8.99	5.62	11.03	6.66	8.71
아니다	65.62	91.01	45.33	88.97	69.86	91.29
계	100.00		100.00		100.00	

2.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패널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가구주 중 89.13%가 근로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67.21%, 일반가구는 95.85%이었다. 근로무능력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0.86%로 이들에게 근로무능력 사유를 조사한 결과, 59.12%가 중증장애라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질병 또는 부상이 40.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가구에서는 중증장애가 80.36%로 가장 높았다.

〈표 4-2-8〉 가구주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능력 정도	근로가능	89.13	67.21	95.85
	단순근로가능	5.51	16.59	2.12
	단순근로미약자	4.50	14.36	1.47
	근로능력없음	0.86	1.84	0.56
계		100.00	100.00	100.00
근로무능력 사유	중증장애	59.12	38.13	80.36
	질병 또는 부상	28.98	40.26	17.56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11.90	21.61	2.08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의 경우, 전체가구의 36.86%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 자영업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58.68%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하였으며, 자영업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7.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조사되어 소득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9〉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36.86	3.20	47.19
임시직 임금근로자	12.42	8.43	13.65
일용직 임금근로자	6.70	9.99	5.70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83	2.76	0.24
고용주	3.74	0.47	4.75
자영업자	15.43	14.63	15.67
무급가족종사자	0.41	0.30	0.44
실업자	1.08	1.56	0.93
비경제활동인구	22.52	58.68	11.43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응답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의 75.91%가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직활동 포기, 가사, 근로무능력, 취업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4-2-10〉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3.81	3.14	4.88
군복무	0.00	0.00	0.00
학업	0.33	0.50	0.07
진학준비	0.00	0.00	0.00
취업준비	3.21	1.78	5.45
가사	4.85	4.42	5.51
양육	0.14	0.00	0.36
간병	1.32	1.40	1.20
구직활동포기	9.39	8.98	10.03
근로의사 없음	75.91	78.87	71.25
기타	1.04	0.91	1.25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그들의 업종 및 직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24.92%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23.72%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직종을 조사한 결과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가, 일반가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많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11〉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7.43	24.92	4.99
	광업	0.16	0.00	0.18
	제조업	21.85	8.39	23.7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30	0.03	1.48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	0.30	1.10
	건설업	10.06	6.26	10.59
	도매 및 소매업	10.83	13.84	10.41
	운수업	7.38	4.09	7.84
	숙박 및 음식점업	4.64	8.69	4.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1	1.28	3.47
	금융 및 보험업	2.88	1.35	3.09
	부동산 및 임대업	1.09	0.90	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7	0.70	2.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2	5.72	4.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94	6.69	6.97
	교육 서비스업	5.06	2.65	5.3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5	3.05	2.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9	1.42	1.3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30	7.15	3.9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0.70	2.56	0.45
	국제 및 외국기관	0.06	0.00	0.07
	계	100.00	100.00	10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종	관리자	5.93	1.64	6.5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87	5.03	16.24
	사무 종사자	13.94	2.58	15.52
	서비스 종사자	6.91	8.32	6.72
	판매종사자	8.69	9.87	8.5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7.27	23.88	4.9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12	5.64	13.0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11	7.24	16.21
	단순노무종사자	14.60	35.80	11.65
	군인	0.55	0.00	0.63
계		100.00	100.00	100.00

취업한 가구주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34.8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41%는 천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61.08%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구주는 22.94%를 보였다.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구주는 저소득가구의 절반정도 수준인 31.22%이었으며, 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구주는 20.52%로 분석되었다.

〈표 4-2-12〉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4.87	61.08	31.22
5~9명	11.25	11.84	11.17
10~29명	11.82	11.10	11.92
30~49명	4.93	3.27	5.16
50~69명	3.57	2.41	3.73
70~99명	2.59	1.29	2.77
100~299명	8.04	3.19	8.71
300~499명	2.45	1.34	2.61
500~999명	1.75	0.37	1.94
1,000명 이상	18.41	3.30	20.52
잘 모름	0.33	0.83	0.26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주의 경우 1년간 평균적으로 약 12개월동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약 22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49시간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일반가구의 가구주보다 다소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3〉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단위: 월, 일, 시간)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63	11.02	11.71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1.79	20.06	22.03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52	45.06	48.82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근로 경험이 있는 가구주 중 17.32%는 근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근로 경험이 있는 가구주 중에서 12.52%는 안전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11.86%가 일반가구의 가구주는 12.64%가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4〉 노동환경 유해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17.32		8.29		47.06	
해당	82.68	100.00	91.71	100.00	52.94	100.00
그렇다	10.35	12.52	11.59	11.86	6.28	12.64
아니다	72.33	87.48	80.12	88.14	46.66	87.36
계	100.00		100.00		100.00	



제5장 가구경제

제1절 소득

제2절 지출

제3절 재산 및 부채

제1절 소득

1. 경상소득

〈표 5-1-1〉에서 전체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4,437만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3,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204만원, 일반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5,703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5-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3,652	4,437	44.59
저소득	1,093	1,204	12.84
일반	4,889	5,703	58.23

2. 근로소득

〈표 5-1-2〉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소득으로는 상용근로소득과 임시·일용근로소득을 합하여 임금소득으로 파악하였고, 그 외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5-1-2〉로부터 임금소득에 대한 평균은 2,809만원, 사업소득에 대한 평균은 683만원, 농림축어업소득에 대한 평균은 85만원, 부업소득에 대한 평균은 4만원이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평균 임금소득은 각각 360만원, 3,769만원, 사업소득은 각각 49만원, 932만원, 농림축어업소득은 각각 19만원, 112만원, 부업소득은 각각 3만원, 4만원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가 모든 근로소득항

목들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임금소득	전체	1,910	2,809	37.52
	저소득	0	360	10.52
	일반	3,264	3,769	50.82
사업소득	전체	0	683	28.77
	저소득	0	49	5.99
	일반	0	932	43.93
농림축어업소득	전체	0	85	7.73
	저소득	0	19	6.44
	일반	0	112	11.46
부업소득	전체	0	4	0.67
	저소득	0	3	0.31
	일반	0	4	1.03

주: 해당소득이 없는 가구까지도 포함해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단 무응답은 제거함.

3. 근로소득 이외 소득

〈표 5-1-3〉은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재산소득, 사회보험소득, 민간보험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항목은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정부보조금 형태의 소득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외 소득 중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기타소득이 평균 349만원으로 가장 높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322만원, 재산소득이 평균 197만원, 사회보험이 평균 192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정부보조금의 평균은 각각 38만원, 103만원이며, 민간보험은 평균 3만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종위값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전체	0	197	7.73
	저소득	0	52	3.08
	일반	0	254	11.76
사회보험	전체	0	192	7.16
	저소득	0	88	3.74
	일반	0	232	10.86
민간보험	전체	0	3	0.54
	저소득	0	1	0.27
	일반	0	4	0.83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 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전체	152	322	5.63
	저소득	262	363	6.28
	일반	122	305	8.04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전체	0	38	1.82
	저소득	0	125	4.71
	일반	0	4	0.81
기타 정부보조금	전체	8	103	2.15
	저소득	113	145	2.77
	일반	0	87	2.96
기타소득	전체	4	349	21.32
	저소득	3	215	30.21
	일반	4	402	28.82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 조사 이후부터의 기초보고서에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제2절 지출

1. 총 가계지출

지출부문은 식료품비(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육료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조(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생활비항목들과 농림축산증사가정 혹은 어가인 경우 자가소비액, 가구부채에 대한 이자지출까지도 지출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든 항목들을 포괄해서 총 가계지출이라 칭하기

로 한다. 지출액은 농림축산어가의 자가소비액과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월평균 지출로 조사하였으며, 연간지출로 조사된 자가소비액과 이자지출은 12(개월)로 나누어 월단위로 통일하였다.

월평균 총 가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5-2-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총 가계지출 중위값은 292만원, 평균은 338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중위값이 102만원이고, 평균이 127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는 중위값 372만원, 평균 420만원으로 평균으로만 비교하였을때 일반가구의 총가계지출이 저소득가구보다 약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총가계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월간 총 가계지출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92	338	2.85
저소득	102	127	1.59
일반	372	420	3.62

2. 항목별 총생활비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지출비중은 아래의 <표 5-2-2>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 평균 338만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로 전체의 20.65%를 차지하고 있으며 70만원의 지출규모를 보인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18.13%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소비지출로 61만원의 지출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통신비는 14.49%, 교육비는 6.55%, 송금보조는 5.51%, 사회보장부담금은 5.21%, 보건의료비는 4.74%, 광열수도비는 4.03%, 세금은 3.97%, 교양오락비는 3.91%, 주거비는 3.44%, 의류·신발비는 3.26%, 가구·가사용품비는 3.02%, 이자지출은 2.84%, 자가소비액(농축산)은 0.21%의 지출비중을 보이며, 어업 종사가가구의 자가소비액은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지출항목별 구성비중

(단위: 만원, %)

지출항목	전체		저소득		일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70	20.65	37	29.13	83	19.64
주거비	12	3.44	8	6.46	13	3.10
광열수도비	14	4.03	10	8.19	15	3.52
가구·가사용품비	10	3.02	4	3.23	13	3.00
의류·신발비	11	3.26	3	2.36	14	3.36
보건의료비	16	4.74	11	8.50	18	4.29
교육비	22	6.55	5	3.62	29	6.88
교양오락비	13	3.91	3	2.36	17	4.12
교통·통신비	49	14.49	14	11.10	63	14.90
기타소비지출	61	18.13	20	15.59	78	18.45
송금보조	19	5.51	4	3.31	24	5.76
세금	13	3.97	1	1.10	18	4.31
사회보장부담금	18	5.21	3	1.97	24	5.62
자가소비액(농축산)	1	0.21	1	0.63	1	0.17
자가소비액(어업)	0	0.00	0	0.00	0	0.00
이자지출	10	2.84	3	2.52	12	2.90
총가계지출	338	100.00	127	100.00	420	100.0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지출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으로는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는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은 지출비중을 보인다. 반면에 교육비, 사회보장부담금, 송금보조, 그리고 세금은 저소득가구보다는 일반가구에서 더 높은 지출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소비액은 소득집단별 지출비중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재산 및 부채

1. 재산

가구의 재산은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을 합한 값이며, 여기에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재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을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며, 구성항목은 조사 기준시점인 2012년 12월 31일 당시 명의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가. 총재산 및 순재산

총재산에는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재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이 포함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을,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포함시켰다. 전체 가구의 총재산 평균값은 2억 7,541만원이고,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9,944만원, 일반가구가 3억 4,443만원이다.

〈표 5-3-1〉 총재산가액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4,860	26,896	523.43
저소득	3,320	9,944	315.51
일반	20,850	33,548	770.97

다음으로 순재산은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다. 총부채에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돈), 외상, 미리탄 계돈 등이 포함된다. 순재산은 전체 가구 평균이 2억 3,575만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8,364만원, 일반가구가 2억 9,534만원이다.

〈표 5-3-2〉 순재산가액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150	22,935	488.84
저소득	2,700	8,364	297.37
일반	17,200	28,646	723.08

나. 소유부동산

소유부동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된다. 먼저 소유부동산 가격은 평균 8,283만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가 3,278만원, 일반가구가 1억 244만원이다.

〈표 5-3-3〉 소유부동산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8,283	388.21
저소득	0	3,278	224.43
일반	0	10,244	587.49

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채권 등이 포함된다. 먼저 금융재산 평균은 4,433만원이고, 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108만원, 일반가구가 5,737만원이다.

〈표 5-3-4〉 금융재산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500	4,433	99.86
저소득	200	1,108	54.83
일반	2,656	5,737	147.37

2. 부채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일반사채, 카드빚 등이 포함된다. 먼저 총 부채액의 평균은 3,983만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597만원, 일반가구가 4,918만원이다.

〈표 5-3-5〉 총부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500	3,983	111.42
저소득	0	1,597	104.20
일반	1,004	4,918	161.36

총 이자액에는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⁹⁾가 포함된다. 총 이자액과 기타이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 5-3-6〉과 같다⁹⁾. 먼저 총 이자액의 평균은 116만원이고,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38만원, 일반가구가 146만원이다. 다음으로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액을 살펴보면, 평균은 61만원인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27만원, 일반가구가 75만원이다.

〈표 5-3-6〉 총 이자액과 기타 이자액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총 이자액	전체	0	116	4.31
	저소득	0	38	2.76
	일반	0	146	6.46
기타 이자액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제외)	전체	0	61	3.62
	저소득	0	27	2.56
	일반	0	75	5.43

9)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는 제6장 주거 부분에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제6장 주거 및 건강

제1절 주거

제2절 건강

6

주거 및 건강 <<

제1절 주거

1. 주거실태 및 주거환경

〈표 6-1-1〉은 한국복지패널 가구의 주택 유형을 파악한 결과로, 전체가구 중에는 일반아파트가 38.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서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19.46%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각각 29.34%, 27.76%로 일반가구(12%, 20.82%)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영구 임대아파트의 비율 역시 6.84%로 일반가구(1.15%)보다 높았다.

〈표 6-1-1〉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 단독주택	16.88	29.34	12.00
다가구용 단독주택	22.77	27.76	20.82
다세대주택	11.04	10.51	11.24
연립주택(빌라)	2.98	2.19	3.29
일반 아파트	38.75	19.46	46.31
영구임대아파트	2.75	6.84	1.15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09	1.37	2.3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0.59	0.51	0.62
오피스텔	0.56	0.32	0.66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0.01	0.04	0.00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0.09	0.31	0.01
기타	0.03	0.05	0.02
국민임대아파트	1.45	1.31	1.50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주거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중 자가의 비율이 53.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보증부 월세(18.78%), 전세(17.56%) 순서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 주거 점유형태를 비교하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자가 비율이 각각 41.36%, 57.76%로 가장 높았으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매월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는 보증부 월세(반 전세)인 경우가 24.83%로 전세에 비해 높았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전세 비중이 보증부 월세에 비해 약 2.65%p 높았다.

〈표 6-1-2〉 주거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가	53.15	41.36	57.76
전세	17.56	13.74	19.0
보증부 월세	18.78	24.83	16.41
월세	1.78	3.77	1.00
기타	8.74	16.31	5.77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표 6-1-3〉에서 주택의 면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6~99㎡ 미만인 경우가 36.12%로 가장 높았으며 33~66㎡ 미만(28.75%), 99~132㎡ 미만(23.71%) 순서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절반을 약간 넘는 약 55.3%가 66㎡ 미만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일반가구는 66㎡ 이상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약 72.9%로 나타났다.

〈표 6-1-3〉 주택 면적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3㎡ 미만	6.29	12.05	4.04
33~66㎡ 미만	28.75	43.28	23.06
66~99㎡ 미만	36.12	33.49	37.15
99~132㎡ 미만	23.71	10.44	28.91
132~165㎡ 미만	3.73	0.48	5.00
165㎡ 이상	1.39	0.25	1.84
계	100.00	100.00	100.0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하여 주택의 견고성과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87%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9.65%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10.12%)에 비해 불안정한 구조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거의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4〉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7.20	80.35	89.88
아니오	12.80	19.65	10.12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가구가 89.4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5.83%에서 이와 같은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8.54%)에 비해 약 2배 정도 수준이었다.

〈표 6-1-5〉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9.41	84.17	91.46
아니오	10.59	15.83	8.54
계	100.00	100.00	100.0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6.24%였으나 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8.94%로 일반가구(5.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6-1-6〉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6.24	8.94	5.18
아니오	93.76	91.06	94.82
계	100.00	100.00	100.00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와 관련된 주택의 안전성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98.49%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에서 0.95%에 불과한 반면, 저소득가구는 2.94%로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6-1-7〉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8.49	97.06	99.05
아니오	1.51	2.94	0.95
계	100.00	100.00	100.00

2. 주택가격

앞서 제시한 주거실태 및 주거환경에 이어서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반 전세), 월세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주택 가격 및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평균과 구간별 분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억 3만원이며 중위값은 1억 5,000만원 수준이나,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평균 2억 2,655만원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자가의 주택 가격 평균은 1억 553만원에 그쳐 절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8〉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5,000	20,003	284.48
저소득	7,500	10,553	275.39
일반	17,500	22,655	370.94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은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과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전세 보증금 평균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9,2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집단별로 구분하면 일반가구가 10,599만원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4,452만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6,500	9,245	307.86
저소득	3,000	4,452	198.58
일반	8,000	10,599	404.82

다음으로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5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평균이 1,950만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83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표 6-1-10〉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700	1,536	64.13
저소득	300	837	47.03
일반	1,000	1,950	104.14

마지막으로,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월세 부담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2만원이었으며, 일반가구가 평균 27만원인데 반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1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1〉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	22	0.43
저소득	13	16	0.42
일반	25	27	0.66

제2절 건강

1. 건강상태

〈표 6-2-1〉과 〈표 6-2-2〉는 복지패널 응답자들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표이다. 〈표 6-2-1〉은 전체 가구원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 6-2-2〉는 가구원들 중 가구주의 건강상태만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표 6-2-1〉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중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고 응답한 가구원은 75.77%로,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는 가구원은 10.98%로 나타나 건강한 상태인 가구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의 33.28%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6.57%)와 비교하여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일반가구는 81.77%, 저소득 가구는 45.46%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일반가구의 가구원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전체 가구원의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17.10	6.86	19.13
건강한 편이다	58.67	38.60	62.64
보통이다	13.24	21.25	11.6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46	28.31	5.73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52	4.97	0.84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표 6-2-2〉를 살펴보면, 건강하다(아주 건강+건강한 편)고 응답한 가구주는 65.79%였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는 가구주는 16.79%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답변한 가구주가 42.27%로 일반가구(8.98%)에 비해서 매우 높았으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32.73%)보다 일반가구(75.93%)가 많아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 수준이 일반가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2-2〉 가구주의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12.98	3.19	15.99
건강한 편이다	52.81	29.54	59.94
보통이다	17.41	24.99	15.09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4.55	35.91	8.00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24	6.36	0.98
계	100.00	100.00	100.00

패널가구원의 소득집단별 주요병명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가구원 중에서 39.95%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주요병명을 비교하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34.89%인 반면에, 저소득가구는 65.5%로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가구원의 주요병명으로는 기타질병을 제외하고 고혈압(7.43%),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6.41%), 치아우식증(충치)(3.03%)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주요병명

은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14.84%), 고혈압(14.65%), 당뇨병(6.38%) 순으로 높았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기타질환을 제외하고 고혈압(6.00%),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4.74%), 치아우식증(충치)(3.41%) 순으로 높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고혈압,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사이에 큰 비율차이를 보였던 병은 우울증이었으며 저소득가구의 주요병명 중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의 그것보다 5.47배 높았다.

〈표 6-2-3〉 주요병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60.05	34.50	65.11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1.31	2.01	1.17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6.41	14.84	4.74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1.13	2.11	0.94
만성간염, 간경변	0.49	0.76	0.44
당뇨병	2.99	6.38	2.32
갑상선질환	0.93	0.73	0.96
고혈압	7.43	14.65	6.00
중풍, 뇌혈관질환	0.99	2.66	0.66
심근경색증, 협심증	0.99	2.64	0.66
폐결핵, 결핵	0.11	0.23	0.08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기침)	0.10	0.19	0.08
천식	0.33	0.80	0.24
백내장, 녹내장	0.23	0.37	0.20
만성중이염	0.06	0.13	0.04
만성심부전증(만성신장질환)	0.37	0.63	0.32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0.52	1.02	0.42
골다공증	0.37	0.86	0.27
빈혈	0.10	0.07	0.11
고지혈증	0.40	0.59	0.37
치질(치핵)	0.12	0.10	0.13
만성부비동염(축농증)	0.15	0.07	0.17
기관지확장증	0.03	0.02	0.03
알레르기성 비염	1.31	0.54	1.46
턱관절질환	0.03	0.00	0.03
아토피성 피부염	0.52	0.61	0.50
요실금	0.00	0.02	0.00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우울증	0.52	1.64	0.30
치아우식증(충치)	3.03	1.10	3.41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0.57	0.12	0.66
기타질환	7.88	8.46	7.76
희귀난치성 질환	0.49	1.06	0.38
저혈압	0.03	0.07	0.02
계	100.00	100.00	100.00

〈표 6-2-4〉에서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중 34.54%의 가구원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61.08%의 가구원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일반가구(29.30%)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기간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 이환 가구원 중 57.20%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이 6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65.46	38.92	70.71
있음	34.54	61.08	29.30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11	2.66	4.40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60	1.22	1.68
6개월 이상 투병·투약	28.83	57.20	23.22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표 6-2-5〉에서 가구주의 만성질환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 중 48.45%의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주가 75.72%로 일반가구(40.09%)에 비해서 매우 컸으며 이환기간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 이환 가구원 중 71.85%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저소득 가구주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6-2-5〉 가구주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51.55	24.28	59.91
있음	48.45	75.72	40.09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24	2.74	4.70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46	1.13	1.56
6개월 이상 투병·투약	42.75	71.85	33.83
계	100.00	100.00	100.00

2. 의료이용 현황

여기서는 패널가구원들의 건강검진 횟수, 주로 이용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제시한다.

의료기관 이용현황 중 건강검진횟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51회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43회로 일반가구(0.52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6〉 건강검진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51	0.00
저소득	0.00	0.43	0.01
일반	1.00	0.52	0.00

다음으로 외래진료횟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11.24회 진료를 받았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20.99회로 일반가구(9.31회)보다 더 자주 진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6-2-7〉 외래진료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5.00	11.24	0.15
저소득	12.00	20.99	0.44
일반	5.00	9.31	0.15

〈표 6-2-8〉에서 입원횟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12회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19회, 일반가구는 0.11회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입원횟수가 많았다.

〈표 6-2-8〉 입원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12	0.00
저소득	0.00	0.19	0.01
일반	0.00	0.11	0.00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7일이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3.64일, 일반가구의 경우 1.31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2-9〉 입원일수

(단위: 일)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1.70	0.08
저소득	0.00	3.64	0.24
일반	0.00	1.31	0.08

민간의료보험¹⁰⁾의 2012년 1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가입률은 69.82%였으며,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가입률이 32.02%로 전체 가입률의 절반도 되지 않아 일반(84.62%)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0〉 민간의료보험 가입률1)(가구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69.82	32.02	84.62
미가입	30.18	67.98	15.38
계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원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 1건 이상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처리함.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3.01건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는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가 0.79건으로 일반가구(3.88건)에 비해서 매우 낮았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 1인당 1건도 되지 않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저소득가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와 함께 보면 그 위험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2-11〉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1)(가구 기준)

(단위: 건)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0	3.01	0.04
저소득	0.00	0.79	0.03
일반	3.00	3.88	0.05

주: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민간의료보험 중 연금성격이 아닌 순수질병보장성격의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조사함. 한편 주계약자가 남편, 종계약자로 아내, 자녀들까지 보장받는 가족의료보험의 경우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기입하도록 함. 또한 납입기한이 끝났으나 보장받는 보험의 경우 가입건수에 포함함.

10)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가입건수, 월평균 보험료는 표본가구 전체를 10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 가족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2절 가족문제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1. 가족관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5.81%의 가구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25.33%로 일반가구(50.1%)보다 낮았다.

〈표 7-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5.81	25.33	50.10
없다	54.19	74.67	49.90
계	100.00	100.00	100.00

〈표 7-1-2〉에서 1년 동안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를 살펴보면, 1년에 평균적으로 16회 왕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 보다는 일반가구가 왕래 횟수가 더 많았다.

〈표 7-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16	0.40
저소득	0	8	0.54
일반	0	17	0.52

따로 사는 부모와 1년 동안 전화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에서는 평균적으로 38회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표 7-1-3>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연락횟수가 더 적었다.

<표 7-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단위: 회)

구분	종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8	0.64
저소득	0	14	0.69
일반	0	43	0.83

2. 성역할에 대한 인식

<표 7-1-4>에서 전체가구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문항은 그렇다는 의견이 64.78%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았으며,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문항 역시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중요성에 대부분 가구원이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62%로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서는 그렇다는 의견이 70.42%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진출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문항 모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높아 가족에 대한 책임감,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적었다.

〈표 7-1-4〉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㉔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2.00	18.93	14.30	57.57	7.21	100.00
㉕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67	10.94	10.46	65.35	12.58	100.00
㉖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75	8.44	12.48	65.54	12.80	100.00
㉗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8.04	54.58	12.76	22.50	2.12	100.00
㉘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0.89	11.46	17.22	63.82	6.60	100.00
㉙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16.51	47.30	17.75	17.09	1.35	100.00
㉚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15.68	42.83	13.71	25.87	1.91	100.00
㉛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37.04	49.91	7.42	5.17	0.46	100.00

제2절 가족문제

1. 가족문제 및 가족갈등 대처방법

2012년 1년간 가족 내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를 2순위까지를 조사하였다.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36.52%로 가장 많았고 ‘가구원의 건강’이 26.64%, ‘경제적 어려움’이 20.70%로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18.65%로 일반가구의 43.52%보다 낮게 나타나 저소득가구에서 가족 갈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의 건강’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응답은 저소득가구에서 40.04%인데 비해 일반가구에서는 21.39%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라는 응답은 저소득가구에서 31.99%인데 비해 일반가구에서는 16.27%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1순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중에 45.50%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구원의 건

강'이 18.52%, '경제적 어려움'이 16.48%로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35.91%, '경제적 어려움'이 26.25%, '가구원의 건강'이 24.63%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가 50.91%, '가구원의 건강'이 15.07%, '경제적 어려움'이 10.97%로 나타났다.

〈표 7-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어려움 없다	36.52	18.65	43.52	45.50	35.91	50.91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20.70	31.99	16.27	16.48	26.25	10.97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4.20	3.33	4.54	4.92	3.96	5.47
자녀교육 혹은 행동	4.93	1.52	6.27	6.16	2.60	8.17
가구원의 건강	26.64	40.04	21.39	18.52	24.63	15.07
가구원의 알코올	0.27	0.31	0.25	0.18	0.30	0.11
가족 내 폭력	0.03	0.06	0.02	0.05	0.15	0.00
가구원간 관계	1.37	1.20	1.44	2.62	2.43	2.73
가구원의 가출	0.06	0.13	0.03	0.18	0.18	0.18
주거관련 문제	1.89	0.98	2.25	2.67	1.69	3.22
기타	1.28	0.85	1.45	0.97	0.54	1.21
자녀의 결혼문제	2.11	0.95	2.57	1.74	1.35	1.9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순위 응답 비율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순위 응답 비율은 1순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가족 내 갈등 요인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1순위에 응답하고 2순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도록 하였음.

2012년 1년간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족갈등 대처방법과 관련된 하위 5개 문항에 각각 1~5점을 부여한 후 평균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갈등 대처방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의 가족갈등 대처방법의 평균은 4.4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평균은 4.3점, 일반가구의 평균은 4.5점으로 일반가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2-2〉 가족갈등 대처방법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6	4.4	0.01
저소득	4.4	4.3	0.01
일반	4.6	4.5	0.01

주: 직계혈족 1촌이 없거나 비가구원 직계혈족 1촌이 있더라도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던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1~5로 응답한 5개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며 값이 클수록 가족갈등 대처방법이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함. ⊕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코딩한 후 계산하였음.

2. 가족의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가. 흡연에 관한 생활습관

7차 조사부터 기족가구원과 신규가구원에게 각기 다르게 질문하고 있다.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흡연경험, 금연계획, 간접흡연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신규가구원에게만 생애동안의 흡연경험(총량, 시기, 기간)을 질문하였다.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에도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21.63%가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선 21.07%가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선 21.74%로 나타났다.

〈표 7-2-3〉 현재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피움	21.63	21.07	21.74
피우지 않음	78.37	78.93	78.26
계	100.00	100.00	100.00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 이상 금연한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28.68%가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가구원은 28.37%, 일반가구원은 28.74%가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4〉 하루이상 금연 시도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8.68	28.37	28.74
없다	71.32	71.63	71.26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지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75.99%는 '0시간(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15.59%는 '1시간 미만', 3.00%는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가구원은 81.03%, 일반가구원은 74.94%로 나타났다.

〈표 7-2-5〉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시간(없음)	75.99	81.03	74.94
1시간 미만	15.59	10.91	16.57
1시간 이상	3.00	2.21	3.17
모름/무응답	5.41	5.84	5.32
계	100.00	100.00	100.00

나. 음주에 관한 생활습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평소에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 중 13.52%는 '월 1회 이하', 24.17%는 '월 2~4회', 14.08%는 '주 2~3회', 6.51%는 '주 4회 이상', 41.72%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6%,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37.23%로 나타났다.

〈표 7-2-6〉 음주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월 1회 이하	13.52	9.11	14.44
월 2~4회	24.17	13.46	26.41
주 2~3회	14.08	8.03	15.35
주 4회 이상	6.51	6.25	6.57
전혀 마시지 않는다	41.72	63.16	37.23
계	100.00	100.00	100.00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응답한 가구원 중에서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과음횟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32.56%는 과음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7.66%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23.44%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9.76%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6.58%는 ‘거의 매일’ 과음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전혀 과음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3%,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31.60%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매일 과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8.34%,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6.37%로 나타났다.

〈표 7-2-7〉 과음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32.56	40.33	31.60
몇 달에 한 번 정도	17.66	18.17	17.60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3.44	18.85	24.00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9.76	14.32	20.43
거의 매일	6.58	8.34	6.37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응답한 가구원 중에서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76.0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1.63%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4.57%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00%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0.45%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23%,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76.07%로 나타났다.

〈표 7-2-8〉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6.08	76.23	76.07
몇 달에 한 번 정도	11.63	10.63	11.75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4.57	4.09	4.63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00	2.09	1.99
거의 매일	0.45	1.00	0.38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응답한 가구원 중에서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몇 번인지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82.2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2.64%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9.81%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9〉 주변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2.28	78.67	82.72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	2.64	3.60	2.52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	9.81	11.76	9.57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응답한 가구원 중에서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21.65%가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0〉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1.65	20.07	21.84
없다	73.08	73.97	72.97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다. 정신건강 등 기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출산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1.11%가 출산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0.62%,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1.21%가 출산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1〉 출산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11	0.62	1.21
없다	50.18	56.80	48.80
비해당(남성)	48.70	42.58	49.99
계	100.00	100.00	100.00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일 직전 1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개 문항(CESD-11)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우울 정도는 평균 5.3점, 저소득가구원은 10.2점, 일반가구원은 4.3점으로 나타났다.

〈표 7-2-12〉 우울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8	5.3	0.07
저소득	7.3	10.2	0.15
일반	1.8	4.3	0.07

주: 기존에 '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로 되어 있는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고, 이때 하위문항 ㉠, ㉡는 역점수 처리하여 우울총점을 계산함. 이 우울총점에 20/11을 곱함(만점은 60점임). 이렇게 계산한 변수의 중위값,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10개 문항(Rosenberg Self-Esteem Scales)으로 조사하여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1점, 저소득가구원은 2.8점, 일반가구원은 3.2점으로 나타났다.

〈표 7-2-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2	3.1	0.00
저소득	2.9	2.8	0.01
일반	3.2	3.2	0.00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하고 평균을 계산한 변수의 중위값,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 하위문항 ㉠, ㉡, ㉢, ㉣는 역점수 처리하였음.

남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남성 응답자의 62.80%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0.29%가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 남성 가구원 중에서는 55.92%, 일반 남성 가구원 중에서는 64.03%로 나타났다.

〈표 7-2-14〉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2.80	55.92	64.03
1~2번	0.29	0.69	0.21
3~5번	0.02	0.08	0.00
6번 이상	0.05	0.01	0.05
비해당(배우자 없음)	32.99	39.77	31.78
모름/무응답	3.86	3.53	3.91
계	100.00	100.00	100.00

여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여성응답자의 60.0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0.51%가 '1~2번', 0.06%가 '3~5번', 0.11%가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여성 가구원 중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4%, 일반 여성 가구원 중에서는 6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0.07	44.24	63.87
1~2번	0.51	0.33	0.55
3~5번	0.06	0.17	0.04
6번 이상	0.11	0.3	0.07
비해당(배우자 없음)	38.17	53.95	34.38
모름/무응답	1.08	1.01	1.09
계	100.00	100.00	100.00

라. 자살

7차 조사부터 신규가구원과 기존가구원의 질문방식이 달라졌다. 신규가구원에게는 생애 동안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를 질문하였고, 기존가구원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를 질문하였다.

신규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신규가구원 중에서 2.9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3.75%, 일반가구원은 2.8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6〉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97	3.75	2.88
없다	80.63	76.65	81.11
모름/무응답	16.39	19.60	16.01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신규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0.1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규가구원 중 저소득가구원은 0.00%, 일반가구원은 0.15%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7〉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3	0.00	0.15
없다	83.48	80.40	83.84
모름/무응답	16.39	19.60	16.01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신규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0.05%가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 0.00%,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0.06%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7-2-18〉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5	0.00	0.06
없다	83.56	80.40	83.93
모름/무응답	16.39	19.60	16.01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기존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기존가구원 중에서 3.1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7.48%, 일반가구원은 2.2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19〉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생각(기존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18	7.48	2.27
없다	91.75	86.96	92.77
모름/무응답	5.07	5.56	4.96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존가구원만 응답함.

기존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기존가구원 중에서 0.50%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1.45%, 일반가구원은 0.3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20〉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계획(기존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0	1.45	0.30
없다	94.43	92.99	94.74
모름/무응답	5.07	5.56	4.96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존가구원만 응답함.

기존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기존가구원 중에서 0.1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0.47%, 일반가구원은 0.0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2-21〉 지난 한 해 동안 자살 시도(기존가구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4	0.47	0.08
없다	94.79	93.98	94.96
모름/무응답	5.07	5.56	4.96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존가구원만 응답함.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제8장 생활실태 및 자원활동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도

제2절 가구의 생활여건

제3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8

생활실태 및 자원활동 <<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도

가구원들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원이 60.0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불만족하는 가구원이 42.66%로 만족하는 가구원(29.83%)보다 높아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1〉 건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3.41	11.11	1.80
대체로 불만족	14.50	31.55	10.95
그저 그렇다	22.02	27.52	20.88
대체로 만족	52.28	27.20	57.50
매우 만족	7.80	2.63	8.87
계	100.00	100.00	100.00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구원이 39.92%로 그저 그렇다(31.34%), 만족한다(28.74%)보다 높았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원이(65.68%)로 일반가구(34.55%)보다 크게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수입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6.32	17.20	4.05
대체로 불만족	33.60	48.48	30.50
그저 그렇다	31.34	26.08	32.43
대체로 만족	26.99	8.10	30.92
매우 만족	1.75	0.14	2.09
계	100.00	100.00	100.00

〈표 8-1-3〉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62.9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주거 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저소득가구 50.98%에 비해 일반가구가 65.44%로 높았다. 저소득가구의 불만족응답은 20.02%로 일반가구(13.13%)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가 주거환경에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3〉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1.72	3.28	1.40
대체로 불만족	12.59	16.74	11.73
그저 그렇다	22.74	29.00	21.44
대체로 만족	57.45	47.06	59.62
매우 만족	5.49	3.92	5.82
계	100.00	100.00	100.00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2.06%, 불만족한다는 4.04%로 대부분의 가구원들이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5.89%로, 일반가구는 85.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가구에서 가족관계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비율도 10.14%로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1-4〉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61	1.98	0.33
대체로 불만족	3.43	8.16	2.45
그저 그렇다	13.90	23.97	11.80
대체로 만족	66.63	58.32	68.36
매우 만족	15.43	7.57	17.06
계	100.00	100.00	100.00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본인직업에 만족하는 경우가 53.33%로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1.13%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경우도 31.89%였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가 57.79%로 저소득가구보다 높았다. 반면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1-5〉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31	5.18	1.71
대체로 불만족	13.19	21.80	11.40
그저 그렇다	31.17	41.13	29.10
대체로 만족	48.38	30.31	52.13
매우 만족	4.95	1.58	5.66
계	100.00	100.00	100.00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76.26%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원이 58.92%로, 일반가구(79.87%)보다는 작았으나 절반이상이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1.05%로 일반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1-6〉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40	1.28	0.21
대체로 불만족	3.86	9.77	2.63
그저 그렇다	19.48	30.02	17.29
대체로 만족	68.08	52.54	71.32
매우 만족	8.18	6.38	8.55
계	100.00	100.00	100.00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4.62%로 가장 높았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1.43%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과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반가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7.73%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7〉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06	3.77	1.71
대체로 불만족	19.41	25.12	18.22
그저 그렇다	33.91	41.43	32.34
대체로 만족	41.83	28.31	44.65
매우 만족	2.79	1.38	3.08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63.04%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 한다는 응답자는 6.0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20%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하는 경우도 37.42%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8.37%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2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불만족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표 8-1-8〉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44	1.38	0.24
대체로 불만족	5.59	13.01	4.05
그저 그렇다	30.93	48.20	27.33
대체로 만족	61.10	36.97	66.12
매우 만족	1.94	0.45	2.25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가구의 생활여건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해당을 제외한 가구 중 3.06%가 경험이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 6.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1.66%)보다 높았다.

〈표 8-2-1〉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39.47	100.00	43.12	100.00	38.03	100.00
있다	1.21	3.06	2.67	6.20	0.63	1.66
없다	38.26	96.94	40.45	93.80	37.40	98.34
비해당	60.54		56.88		61.97	
계	100.00		100.00		100.00	

주: 2012년 1년 내내 주거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임.

〈표 8-2-2〉에서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중 4.2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중 7.66%가 경험이 있어 일반가구(2.91%)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2-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25	7.66	2.91
없다	95.75	92.34	97.09
계	100.00	100.00	100.00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중에서 0.43%가 경험이 있었으며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가구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8-2-3〉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3	1.02	0.20
없다	99.57	98.98	99.80
계	100.00	100.00	100.00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비해당을 제외한 가구 중 0.29%가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가 0.59%로 일반가구(0.25%)보다 조금 높았다.

〈표 8-2-4〉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31.75	100.00	13.78	100.00	38.80	100.00
있다	0.09	0.29	0.08	0.59	0.10	0.25
없다	31.66	99.71	13.70	99.41	38.70	99.75
비해당 ¹⁾	68.24		86.22		61.20	
계	100.00		100.00		100.00	

주: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임.

〈표 8-2-5〉에서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중에서 1.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4.26%로 일반가구(0.27%)보다 크게 높았다.

〈표 8-2-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0	4.26	0.27
없다	98.60	95.74	99.73
계	100.00	100.00	100.00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여부는 전체적으로 0.87%가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가 1.99%로 나타나 일반가구(0.43%)보다 높았다.

〈표 8-2-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87	1.99	0.43
없다	99.13	98.01	99.57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중 5.76%가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9.6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4.24%)보다 높았다.

〈표 8-2-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5.76	9.65	4.24
없다	94.24	90.35	95.76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비해당을 제외한 가구 중에서 전체적으로 1.2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중 2.94%가 일반가구 중 0.71%가 경험이 있었다.

〈표 8-2-8〉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해당	93.88	100.00	79.08	100.00	99.67	100.00
있다	1.17	1.24	2.32	2.94	0.71	0.71
없다	92.71	98.76	76.76	97.06	98.96	99.29
비해당 ¹⁾	6.12		20.91		0.33	
계	100.00		100.00		100.00	

주: 1) 2012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만을 받는 가구

제3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가구원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2.71%가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14.42%로 저소득가구(4.53%)보다 높았다.

〈표 8-3-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2.71	4.53	14.42
아니다	87.29	95.47	85.58
계	100.00	100.00	100.00

먼저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구원들의 연간 기부액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39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평균 19만원을 기부하여 일반(40만원)과 비교해서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3-2〉 연간 기부액수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3	39	2.55
저소득	0	19	3.58
일반	18	40	2.76

다음으로 〈표 8-3-3〉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9회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평균 20회로 일반가구(9회)보다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단위: 회)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9	0.67
저소득	12	20	2.47
일반	0	9	0.69



제9장 사회보장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제2절 공공부조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¹¹⁾

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먼저 4대 사회보험 중 2012년 12월 31일 기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의 가입여부¹²⁾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9-1-1>과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비해당¹³⁾이 52.17%, 가입이 40.88%, 수급이 6.65%, 수급하면서 가입이 0.13%, 미가입¹⁴⁾이 0.17%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비해당 비율(67.73%)이 일반가구(49.09%)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입율(19.89%)은 일반가구(45.0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급률은 저소득가구 12.08%, 일반가구 5.58%로 저소득가구의 수급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2.17	67.73	49.09
수급	6.65	12.08	5.58
가입	40.88	19.89	45.03
수급하면서 가입	0.13	0.21	0.12
미가입	0.17	0.09	0.18
계	100.00	100.00	100.00

11) 본 절에서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비롯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 및 수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입에 대한 문항들은 가구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급에 대한 문항들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어 조사대상이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2012년 1년간의 수급경험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12) 공적연금 가입 실태는 제도상의 가입 실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실체는 가입자의 유소득배우자로 가입대상이라든 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제도상으로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 간주되어 적용제외대상이 되어있다면 '비해당'으로 표기하였다.

13)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혹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아닌 만 18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인 자,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학생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14) 공적연금제도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앞의 <표 9-1-1>에서 공적연금 가입자(가입자 혹은 수급하면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9-1-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92.01%)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외에는 공무원연금(6.48%), 사학연금(1.06%), 군인연금(0.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반가구의 경우 91.31%로 전체 가구의 경우보다 약간 낮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100%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92.01	100.00	91.31
공무원연금	6.48	0.00	7.05
사학연금	1.06	0.00	1.16
군인연금	0.39	0.00	0.42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0.06	0.00	0.07
계	100.00	100.00	100.00

2012년 1년간 공적연금 수급실태를 살펴보면(표 9-1-3 참조) 전체 중 수급자는 8.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수급비율(15.15%)이 전체가구나 일반가구(7.40%)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9-1-3> 공적연금 수급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	8.74	15.15	7.40
비수급	91.26	84.85	92.60
계	100.00	100.00	100.00

15) <표 9-1-3>에서 공적연금 수급률 8.74%는 <표 9-1-1>의 6.78%(수급 6.65%, 수급하면서 가입 0.13%)와 차이가 난다. 이는 <표 9-1-1>의 수치는 가구용 설문을, <표 9-1-3> 수치는 가구원용 설문을 각각 근거로 하고 있는데,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문항은 보훈연금을 제외하고 있지만, 가구원용 조사표에서는 보훈연금을 포함하여 수급현황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가구용 조사표의 경우 대표가구원이 주로 응답을 한 반면, 가구원용 조사표는 당사자가 직접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일련의 사유로 인해 미완이 되는 경우도 두 수치간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공적연금 수급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종류별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76.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12.93%, 보훈연금 5.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에서도 유사하게 국민연금 70.53%, 공무원연금 18.10%, 보훈연금 4.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90.5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는 보훈연금이 6.57%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 수급률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반면, 특수직연금 수급률은 일반가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9-1-4>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76.53	90.54	70.53
공무원연금	12.93	0.85	18.10
사립학교교원연금	1.22	0.18	1.66
군인연금	1.61	0.19	2.22
별정직우체국연금	0.02	0.00	0.03
보훈연금	5.34	6.57	4.81
기타	0.01	0.00	0.0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0.35	0.06	0.47
국민연금, 군인연금	0.36	0.00	0.52
국민연금, 보훈연금	1.45	1.60	1.38
공무원연금, 보훈연금	0.12	0.00	0.17
군인연금, 보훈연금	0.07	0.00	0.11
계	100.00	100.00	100.00

2. 건강보험 가입 실태

다음으로 건강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9-1-5>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93.34%, 미가입자가 6.66%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가입률(77.65%)이 일반가구(99.49%)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가입종류별로 보면 전체가구의 69.51%는 직장가입자, 30.49%는 지역가입자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61.08%, 38.92%, 일반가구의 경우 각각 72.09%, 27.91%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서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미가입가구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1종(78.98%)과 의료급여 2종(17.86%)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81.21%)이 2종(16.34%)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40.81%)에 비해 2종(43.87%)의 비율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표 9-1-5〉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93.34	77.65	99.49
	직장	69.51	61.08	72.09
	지역	30.49	38.92	27.91
	소계	100.00	100.00	100.00
미가입		6.66	22.35	0.51
	의료급여 1종	78.98	81.21	40.81
	의료급여 2종	17.86	16.34	43.87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2.58	2.46	4.69
	미가입	0.59	0.00	10.63
	소계	100.00	10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앞의 〈표 9-1-5〉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가입 실태를 가구단위로 살펴본 결과라면, 다음 〈표 9-1-6〉은 개인단위로 가구원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¹⁶⁾. 그 결과를 보면 앞서 가구단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단위 가입 실태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¹⁷⁾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9-1-6〉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전체가구의 경우 42.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16) 가구단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실태 조사문항에서는 예컨대, 한 가구 내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7)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로도 저소득가구의 경우 38.54%, 일반가구의 경우 43.33%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17.28%, 의료급여 1종 16.06%,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14.94%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31.99%로 저소득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13.82%, 지역가입자가 10.1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1-6〉 건강보험 가입 실태(개인 단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장가입자	27.70	6.01	31.99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2.54	38.54	43.33
지역가입자	11.32	17.28	10.14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14.00	14.94	13.82
의료급여 1종	2.94	16.06	0.34
의료급여 2종	1.42	6.78	0.3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0.08	0.39	0.01
미가입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3.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다음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실태로 다음 〈표 9-1-7〉과 같다. 전체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47%, 미가입률은 10.64%로 나타났다¹⁸⁾.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입률(5.66%)이 일반가구의 가입률(26.99%)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8) 15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에 종사하거나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용주·자영자(단,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입 가능), 비경제활동인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65세 이상 노인 등은 고용보험의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표 9-1-7〉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5.89	84.76	62.16
가입	23.47	5.66	26.99
미가입	10.64	9.58	10.85
계	100.00	100.00	100.00

2012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9-1-8〉과 같다. 전체가구 중에서 고용보험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는 1.70%로 나타났으며, 소득 계층별로는 저소득가구 1.38%, 일반가구 1.77%로 나타났다.

〈표 9-1-8〉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0	1.38	1.77
없다	98.30	98.62	98.23
계	100.00	100.00	100.00

4.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산재보험의 가입실태(2012년 12월 31일 기준)는 다음 〈표 9-1-9〉과 같다¹⁹⁾. 전체 가구의 경우 가입(24.63%)이 미가입(11.86%)을 약 2배 이상 상회하고 있고, 소득계층별로 볼 때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전체가구와 비슷하게 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반대로 미가입(11.01%)이 가입(6.81%)을 약 2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15세 이상 응답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및 농어민, 비경제활동인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은 산재보험의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표 9-1-9〉 산재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3.51	82.17	59.81
가입	24.63	6.81	28.16
미가입	11.86	11.01	12.03
계	100.00	100.00	100.00

다음 〈표 9-1-10〉은 2012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수급한 경험을 설문한 결과이다. 전체가구의 경우 수급경험이 없다가 99.6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가 극소수라는 특징은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9-1-10〉 산재보험 급여 수급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3	0.34	0.32
없다	99.67	99.66	99.68
계	100.00	100.00	100.00

5. 퇴직(연)금 적용 및 수급실태

다음 〈표 9-1-11〉은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의 적용 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가구의 경우 16.44%가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9.04%는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불과 3.76%만이 적용을 받을 것인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18.95%가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퇴직금 적용에 있어서도 소득계층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1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4.50	81.50	61.13
적용	16.44	3.76	18.95
미적용	19.04	14.74	19.89
모름	0.02	0.00	0.02
계	100.01	100.00	100.01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9-1-12〉와 같다. 전체적으로 6.34%만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입비율(0.67%)이 일반가구의 가입비율(7.47%)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9-1-12〉 퇴직연금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4.51	81.53	61.14
가입	6.34	0.67	7.47
미가입	29.14	17.80	31.38
모름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2012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인 96.27%가 수급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1.37%에 불과한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4.23%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이 역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13〉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73	1.37	4.23
없다	96.27	98.63	95.77
계	100.00	100.00	100.00

6. 개인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다음으로, <표 9-1-14>는 개인연금 가입 실태(2012년 12월 31일 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중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개인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신보험 가입여부도 본 문항에서 같이 설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7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미가입 비율이 95.96%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73.91%로 개인연금 가입도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1-14>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연금만 가입	6.89	1.18	8.02
종신보험만 가입	11.43	2.58	13.19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4.13	0.29	4.89
미가입	77.55	95.96	73.91
계	100.00	100.00	100.00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2012년 1년간)에 대해서는 <표 9-1-15>를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99.55%) 응답자가 수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계층별로도 유사하다.

<표 9-1-15>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5	0.35	0.47
없다	99.55	99.65	99.53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7.6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고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 94.22%는 일반수급가구로 나타났다. 그 밖에 조건부수급가구는 5.42%, 특례가구는 0.24%로 조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한 가구 중에서 약 80%는 가구원 전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수급형태

(단위: %)

구분		비율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92.34	
	수급가구	7.66	100.00
	일반수급가구	7.22	94.22
	조건부수급가구	0.42	5.54
	특례가구	0.02	0.24
계		100.00	
수급형태	비수급가구	92.34	
	수급가구	7.66	100.00
	가구원 전부 수급	6.17	80.48
	가구원 중 일부 수급	1.50	19.52
계		100.00	

한편, 앞에서는 패널 가구 전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고 있는 여부를 살펴 보았다면, 다음으로는 201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가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 가구 전체 중 0.88%는 201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기 위해 신청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들이 신청한 사유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87.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9-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수급 신청여부	있다	0.88
	없다	99.12
계		100.00
신청 사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71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9.14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0.45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2.29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0.41
	계	100.00

201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기 위해서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약 51%는 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탈락된 경우가 절반이상(54.13%)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이 기준보다 많다고 응답한 가구가 10.07%,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라고 응답 가구가 9.39%이었다. 그 밖에 기타로 응답한 가구도 21.81%로 분석되었다.

〈표 9-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수급자 선정 여부	그렇다	51.23
	그렇지 않다	48.77
계		100.00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10.07
	자동차가 있어서	0.00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4.61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9.39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4.13
	기타	21.81
계		100.00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여 탈락 한 후 생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에게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4〉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 해결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20.66	50.23
빚을 내어서 생활	8.32	11.77
민간단체의 도움	0.00	4.24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37.89	12.57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11.24	8.48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2.36	4.78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9.52	7.91
기준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0.00
기타	0.00	0.00
계	100.00	100.00

2.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본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2009년부터 최초로 신청 및 급여가 제공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지여부, 신청 및 수급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 및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한 가구의 약 50% 정도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약 3%만이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5〉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구분	비율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51.62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7.65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78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2.95
계	100.00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2.13%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 중 78.13%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2-6〉 근로장려세제 신청경험 및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근로장려세제 신청경험	있다	2.13
	없다	97.87
계		100.00
신청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있다	78.13
	없다	21.87
계		100.00

마지막으로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약 87%가 일상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비(5.16%)나 저축(3.50%)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7〉 근로장려금 사용용도

(단위: %)

구분	비율
자녀 교육비	5.16
일상 생활비	87.20
의료비	0.29
문화오락비	0.00
저축	3.50
기타	3.86
계	100.00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1.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2012년 1년간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해 주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 배달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가구 중 29.96%가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 중에는 70.44%, 일반가구 중에는 14.10%가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31.25%, 저소득가구 중 67.25%, 일반가구 중 17.14%가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의료, 가구 등 물품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중 8.85%, 저소득가구 중 26.59%, 일반가구 중 1.90%가 물품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가구 중 0.67%,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2.15%, 일반가구 중에서는 0.09%가 집수리, 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중 5.53%, 저소득가구 중 8.42%, 일반가구 중 4.39%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물(알코올), 학대 혹은 가정폭력, 고민, 정신건강,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중 0.56%, 저소득가구
중 0.82%, 일반가구의 0.46%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1〉 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생계비	29.96	70.44	14.10
의료비	31.25	67.25	17.14
물품지원(식료품, 의료, 가구 등)	8.85	26.59	1.90
주택관련 서비스	0.67	2.15	0.09
취업지원 서비스	5.53	8.42	4.39
상담 서비스	0.56	0.82	0.46

2012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가구의
12.5%가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
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유형을 경험
률이 높은 바우처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68.4%가 아이사랑 보육서비스를 경험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25.9%, 일반가
구 중에서는 80.0%가 아이사랑 보육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서비스
를 이용한 가구의 18.96%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사업, 문화바우
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등의 기타 바우처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
소득가구 중에서는 58.94%, 일반가구 중에서는 8.08%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14.40%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는 5.23%, 일반가구는 16.90%가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
다고 응답했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6.59%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는 2.91%, 일반가구는 7.59%가 서비스 이용경험
이 있다고 응답했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4.64%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는 7.09%, 일반가구는 3.98%가 서비스 이용경험
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9-3-2〉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1.87	7.43	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4.64	7.09	3.98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0.94	1.27	0.8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1.17	4.42	0.29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6.59	2.91	7.59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14.40	5.23	16.90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1.84	0.80	2.12
아이사랑 보육서비스 (유아학비, 아이즐거운카드 포함)	68.42	25.87	79.99
언어발달지원사업	0.50	0.00	0.63
기타 바우처서비스	18.96	58.94	8.08

주: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012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전체 가구의 1.41%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2.69%, 일반가구 중에서는 0.90%가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금액과 급여 유형별 경험률은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9-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1	2.69	0.90
없다	98.59	97.31	99.10
계	100.00	100.00	100.00

8차년도 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32.6%의 가구에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는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의 주요 노인 복지서비스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식사 배달 서비스 등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노인가구의 71.17%가 기초노령연금을 경험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87.02%, 일반가구 중에서는 52.27%가 기초노령연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의 72.90%가 의료

비 지원을 경험하였고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81.60%, 일반가구 중에서는 62.53%가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전체 노인가구의 1.16%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경험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1.40%, 일반가구 중에서는 0.88%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의 3.89%가 노인 일자리사업 서비스를 경험하였고,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5.39%, 일반가구 중에서는 2.11%가 노인 일자리사업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의 5.09%가 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사회교육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6.21%, 일반가구 중에서는 3.76%가 사회교육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4〉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초노령연금	71.17	87.02	52.27
의료비 지원	72.90	81.60	62.53
이동편의 서비스	1.16	1.40	0.88
노인 일자리 사업	3.89	5.39	2.11
사회교육 서비스	5.09	6.21	3.76

8차년도 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17.3%의 가구에 장애인(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모두 포함)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의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장애아동 수당, 주택관련 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11.48%가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17.10%, 일반가구 중에서는 6.44%가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17.50%가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고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32.00%, 일반가구 중에서는 4.48%가 장애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12.04%가 의료재활 서비스(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재활 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포함)를 경험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13.45%, 일반가구 중에서는 10.77%가 의료재활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4.52%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경험하였고,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4.64%, 일반가구 중에서는 4.40%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1.37%가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 포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1.71%, 일반가구 중에서는 1.06%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5〉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11.48	17.10	6.44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17.50	32.00	4.48
의료재활 서비스	12.04	13.45	10.77
이동편의 서비스	4.52	4.64	4.40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1.37	1.71	1.06

8차년도 복지패널 전체 가구 중 29.7%의 가구에 만 17세 이하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의 주요 아동 복지서비스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비 지원, 예체능 교실 등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체 아동가구의 10.52%가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6.16%, 일반가구 중에서는 11.14%가 공공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가구의 31.25%가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23.11%, 일반가구 중에서는 32.40%가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가구의 70.73%가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87.84%, 일반가구 중에서는 68.32%가 무료급식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가구의 3.83%가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이용

한 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5.21%, 일반가구 중에서는 3.64%가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가구의 2.45%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8.28%, 일반가구 중에서는 1.64%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6〉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10.52	6.16	11.14
양육, 보육료,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31.25	23.11	32.40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70.73	87.84	68.32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3.83	5.21	3.64
방과후 돌봄서비스	2.45	8.28	1.64

2. 아동의 건강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새로 추가된 아동은 신생아를 비롯하여, 입양아동이나 친척아동 등 같이 살게 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가구원의 기준이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추가된 아동이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추가아동 여부와 출생 당시 체중과 선천성 기형 또는 질환 여부에 응답하였다. 전체 아동가구 중 7.3%의 가구에서 아동이 추가되었는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5.8%, 일반가구 중에서는 7.5%가 아동이 추가되었다.²⁰⁾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전체 추가된 아동 중에서 6.9%가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는 저소득가구에서 13.8%, 일반가구에서 6.2%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가구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20) 신규가구에겐 추가된 아동여부를 질문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출생 시 체중과 선천성 기형 또는 질환 여부를 질문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규가구에서 8차년도에 아동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9-3-7〉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2.5kg 이상	93.09	86.22	93.79
2.5kg 미만	6.91	13.78	6.21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가구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추가된 아동이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전체 추가된 아동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는 0.30%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에서는 0.3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표 9-3-8〉 추가된 아동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0	0.00	0.33
없다	99.70	100.00	99.67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 가구는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아동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가.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아동가구 중에서 가구의 아동 중 한 명이라도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비율은 89.08%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72.84%, 일반가구 중에서는 91.36%가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함	89.08	72.84	91.36
이용하지 않음	10.92	27.16	8.64
계	100.00	100.00	100.00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기관의 종류를 각 아동별로 최대 3개까지 조사하였다. 평균 사교육 및 보육 이용기관 수는 2.6개로 나타났는데, 저소득가구는 2.1개, 일반가구는 2.7개로 나타났다.

〈표 9-3-10〉 사교육보육 이용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	2.6	0.04
저소득	2.0	2.1	0.08
일반	2.0	2.7	0.04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기관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학원의 비율이 35.62%로 가장 높았고, 학습지 19.28%,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7.25%, 민간어린이집 8.6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는 학원 34.45%,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29.36%, 학습지 13.18%의 순서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에서는 학원 35.72%, 학습지 19.81%,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6.20%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9-3-11〉 사교육보육기관의 종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1.34	0.65	1.4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58	0.60	0.58
	민간어린이집	8.67	8.72	8.67
	가정어린이집	1.26	0.91	1.29
	직장어린이집	0.07	0.40	0.0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2.77	0.24	2.99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3.06	2.33	3.12
민간학원 및 사교육	학원	35.62	34.45	35.72
	개인·그룹과의	4.92	1.87	5.18
	학습지	19.28	13.18	19.81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7.25	29.36	16.20
	방과후 교실	1.93	5.89	1.58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찬·인척	0.52	0.00	0.56
	이웃	0.14	0.00	0.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0.19	0.46	0.17
	민간아이돌보미	0.02	0.00	0.02
	기타	0.36	0.59	0.34
	그 외 보육시설	2.03	0.34	2.17
계		100.00	100.00	100.00

나.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을 질문하였는데, 사교육비와 보육비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포함된다. 가구 전체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가구의 아동수로 나누어 아동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9.8만원, 일반가구는 23.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9-3-12〉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6.0	22.4	0.55
저소득	6.0	9.8	0.75
일반	17.5	23.8	0.61

가구 전체의 월평균 보육비를 가구의 아동수로 나누어 아동 일인당 월평균 보육비를 계산하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는 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일인당 월평균 보육비는 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1.4만원, 일반가구는 4.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9-3-13〉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일인당 월평균 보육비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	4.2	0.29
저소득	0.0	1.4	0.23
일반	0.0	4.5	0.32



제10장 복지인식 부가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전반적인 사회적 · 정치적 인식과 태도

제3절 복지재원 부담에 대한 의견

제1절 응답자 특성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부가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조사하였고, 5차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2차년도 응답자와 신규 부가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차와 5차의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표본이 표본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아니라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을 보증하기가 취약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8차년도에는 7차 전체 표본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2,399가구, 가구원 6,248명)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5,0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은 그 중 조사가 완료된 4,1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6.41%, 여성이 53.5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남성이 40.72%, 여성이 59.28%이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남성이 47.52%, 여성이 52.48%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30세 미만이 13.45%, 30~40세 미만이 20.44%, 40~50세 미만이 22.78%, 50~60세 미만이 20.78%, 60~65세 미만이 5.93%, 65세 이상이 16.62%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65세 이상이 50.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40~50세 미만이 2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가 67.61%, 사별이 6.70%, 이혼이 4.5%, 별거가 0.51%, 미혼이 20.6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유배우가 54.88%, 사별이 20.75%, 이혼이 10.69%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유배우가 70.07%, 사별이 3.97%, 이혼이 3.3%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무학이 3.44%, 초등학교가 10.85%, 중학교가 9.38%, 고등학교가 29.31%, 전문대학이 13.26%, 대학교가 30.11%, 대학원(석사)이 3.20%, 대학원(박사)이 0.45%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초등학교가 3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대학교가 3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1-1〉 응답자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46.41	40.72	47.52
	여성	53.59	59.28	52.48
	계	100.00	100.00	100.00
연령	20세 미만	0.00	0.00	0.00
	20~30세 미만	13.45	4.38	15.21
	30~40세 미만	20.44	6.31	23.18
	40~50세 미만	22.78	12.44	24.79
	50~60세 미만	20.78	17.80	21.35
	60~65세 미만	5.93	9.02	5.33
	65세 이상	16.62	50.05	10.14
	계	100.00	100.00	100.00
혼인상태	비해당	0.00	0.00	0.00
	유배우	67.61	54.88	70.07
	사별	6.70	20.75	3.97
	이혼	4.50	10.69	3.30
	별거	0.51	1.00	0.41
	미혼	20.69	12.69	22.24
	기타(사망, 무응답 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학력	무학	3.44	14.84	1.23
	초등학교	10.85	32.19	6.71
	중학교	9.38	13.73	8.54
	고등학교	29.31	21.85	30.76
	전문대학	13.26	5.61	14.74
	대학교	30.11	10.04	34.01
	대학원(석사)	3.20	1.75	3.48
	대학원(박사)	0.45	0.00	0.53
	계	100.00	100.00	100.00

제2절 전반적인 사회적 · 정치적 인식과 태도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14%, 그렇다는 응답이 22.26%,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17.50%, 보통이라는 응답이 16.55%,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6.16%,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9.60%,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80%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5.46%,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18.85%, 보통이라는 응답이 17.46%,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4.5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76%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1.63%,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17.23%, 보통이라는 응답이 16.37%,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4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15%로 나타났다.

〈표 10-2-1〉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그렇다	4.14	4.38	4.10
그렇다	22.26	25.46	21.63
대체로 그렇다	17.50	18.85	17.23
보통이다	16.55	17.46	16.3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16	24.55	26.47
그렇지 않다	9.60	6.76	10.15
전혀 그렇지 않다	3.80	2.54	4.0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장만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①로, 분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④로 설정한 후 자신의 의견을 숫자로 응답하게 한 결과, ①이 8.42%, ②가 41.03%, ③이 42.39%, ④가 8.15%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①이 7.34%, ②가 41.21%, ③이 42.14%, ④가 9.30%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①이 8.63%, ②가 41.0%, ③이 42.44%, ④가 7.93%로 나타났다.

〈표 10-2-2〉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	8.42	7.34	8.63
②	41.03	41.21	41.00
③	42.39	42.14	42.44
④ 분배만이 중요하다	8.15	9.30	7.93
모름/무응답	0.00	0.02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④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62%, 동의한다는 응답이 27.25%,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31%, 반대한다는 응답이 30.5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27%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6.3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73%, 반대한다는 응답이 30.07%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7.4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84%, 반대한다는 응답이 30.65%로 나타났다.

〈표 10-2-3〉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4.62	3.27	4.88
동의한다	27.25	26.33	27.4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5.31	37.73	34.84
반대한다	30.56	30.07	30.65
매우 반대한다	2.27	2.60	2.2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33%, 동의한다는 응답이 39.71%,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48%, 반대한다는 응답이 25.2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26%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4.9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45%, 반대한다는 응답이 21.82%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8.69%,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06%, 반대한다는 응답이 25.89%로 나타났다.

〈표 10-2-4〉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3.33	3.97	3.20
동의한다	39.71	44.92	38.69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9.48	26.45	30.06
반대한다	25.23	21.82	25.89
매우 반대한다	2.26	2.84	2.1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2.04%, 동의한다는 응답이 47.3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38%, 반대한다는 응답이 16.02%,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3.35%, 동의한다는 응답이 55.75%,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55%, 반대한다는 응답이 9.38%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1.79%, 동의한다는 응답이 45.6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93%, 반대한다는 응답이 17.31%로 나타났다.

〈표 10-2-5〉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12.04	13.35	11.79
동의한다	47.32	55.75	45.6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3.38	20.55	23.93
반대한다	16.02	9.38	17.31
매우 반대한다	1.24	0.98	1.2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5.01%, 동의한다는 응답이 28.04%,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3%, 반대한다는 응답이 33.1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5.58%, 동의한다는 응답이 33.76%,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21%, 반대한다는 응답이 28.77%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90%, 동의한다는 응답이 26.9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74%, 반대한다는 응답이 33.98%로 나타났다.

〈표 10-2-6〉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5.01	5.58	4.90
동의한다	28.04	33.76	26.9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9.33	27.21	29.74
반대한다	33.13	28.77	33.98
매우 반대한다	4.49	4.69	4.4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7.15%, 동의한다는 응답이 36.9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44%, 반대한다는 응답이 33.29%,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4.1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7.49%,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99%, 반대한다는 응답이 20.95%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4.8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33%, 반대한다는 응답이 35.68%로 나타났다.

〈표 10-2-7〉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7.15	9.93	6.61
동의한다	36.93	47.49	34.8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8.44	18.99	18.33
반대한다	33.29	20.95	35.68
매우 반대한다	4.19	2.64	4.4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56%, 동의한다는 응답이 39.2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55%, 반대한다는 응답이 29.65%,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8.00%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8.11%,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64%, 반대한다는 응답이 26.04%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9.45%,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15%, 반대한다는 응답이 30.36%로 나타났다.

〈표 10-2-8〉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4.56	5.62	4.35
동의한다	39.23	38.11	39.45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8.55	20.64	18.15
반대한다	29.65	26.04	30.36
매우 반대한다	8.00	9.58	7.6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 동의한다는 응답이 30.26%,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51%, 반대한다는 응답이 33.4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4.20%,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97%, 반대한다는 응답이 28.69%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9.50%,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61%, 반대한다는 응답이 34.35%로 나타났다.

〈표 10-2-9〉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5.19	7.01	4.84
동의한다	30.26	34.20	29.50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28.51	27.97	28.61
반대한다	33.43	28.69	34.35
매우 반대한다	2.60	2.13	2.6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02%, 동의한다는 응답이 8.3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84%, 반대한다는 응답이 51.31%,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4.51%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6.79%,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54%, 반대한다는 응답이 52.04%,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5.88%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6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89%, 반대한다는 응답이 51.17%,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4.24%로 나타났다.

〈표 10-2-10〉 국가건강보험 축소, 민간의료보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1.02	0.75	1.07
동의한다	8.33	6.79	8.62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4.84	14.54	14.89
반대한다	51.31	52.04	51.17
매우 반대한다	24.51	25.88	24.2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77%, 동의한다는 응답이 15.59%,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66%, 반대한다는 응답이 45.74%,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18.24%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13.6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79%,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7%,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0.27%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15.96%,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63%, 반대한다는 응답이 45.4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17.84%로 나타났다.

〈표 10-2-11〉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4.77	2.89	5.13
동의한다	15.59	13.68	15.96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5.66	15.79	15.63
반대한다	45.74	47.37	45.43
매우 반대한다	18.24	20.27	17.8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4.60%, 동의한다는 응답이 48.4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79%, 반대한다는 응답이 16.78%,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9.94%, 동의한다는 응답이 50.0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8.48%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5.50%, 동의한다는 응답이 48.17%,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47%로 나타났다.

〈표 10-2-12〉 유치원,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14.60	9.94	15.50
동의한다	48.48	50.08	48.17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6.79	18.48	16.47
반대한다	16.78	17.34	16.67
매우 반대한다	3.35	4.15	3.2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요양과 같은 사회서비스

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①,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⑤로 설정한 후 자신의 생각을 숫자로 응답하게 한 결과, ①이 23.92%, ②가 12.80%, ③이 19.58%, ④가 28.47%, ⑤가 15.2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①이 15.46%, ②가 8.77%, ③이 19.98%, ④가 32.67%, ⑤가 23.12%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①이 25.56%, ②가 13.58%, ③이 19.50%, ④가 27.66%, ⑤가 13.70%로 나타났다.

〈표 10-2-13〉 복지의 대상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① 모든 국민 대상	23.92	15.46	25.56
②	12.80	8.77	13.58
③	19.58	19.98	19.50
④	28.47	32.67	27.66
⑤ 가난한 사람들 대상	15.23	23.12	13.7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국가가 세금으로 복지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⑤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제3절 복지재원 부담에 대한 의견

1. 각 분야의 복지재정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이하에서는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지방정부)가 71.92%, 본인(개인)이 20.05%, 가족 친지가 6.70%, 직장이 1.3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72.8%, 본인이 20.53%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71.75%, 본인이 19.96%로 나타났다.

〈표 10-3-1〉 교육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71.92	72.80	71.75
본인(개인)	20.05	20.53	19.96
가족 친지	6.70	5.97	6.84
직장	1.33	0.71	1.4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보건의료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지방정부)가 84.74%, 본인(개인)이 10.32%, 가족 친지가 2.97%, 직장이 1.96%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86.75%, 본인이 10.1%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84.35%, 본인이 10.37%로 나타났다.

〈표 10-3-2〉 보건의료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84.74	86.75	84.35
본인(개인)	10.32	10.10	10.37
가족 친지	2.97	1.85	3.19
직장	1.96	1.30	2.0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아동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지방정부)가 65.33%, 본인(개인)이 19.81%, 가족 친지가 12.67%, 직장이 2.2%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67.83%, 본인이 18.69%, 가족 친지가 12.24%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64.84%, 본인이 20.02%, 가족 친지가 12.75%로 나타났다.

〈표 10-3-3〉 아동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65.33	67.83	64.84
본인(개인)	19.81	18.69	20.02
가족 친지	12.67	12.24	12.75
직장	2.20	1.24	2.3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노인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지방정부)가 78.35%, 본인(개인)이 9.09%, 가족 친지가 12.43%, 직장이 0.1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84.57%, 본인이 5.81%, 가족 친지가 9.41%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77.14%, 본인이 9.72%, 가족 친지가 13.02%로 나타났다.

〈표 10-3-4〉 노인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78.35	84.57	77.14
본인(개인)	9.09	5.81	9.72
가족 친지	12.43	9.41	13.02
직장	0.13	0.21	0.1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거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지방정부)가 56.75%, 본인(개인)이 37.95%, 가족 친지가 3.74%, 직장이 1.57%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68.8%, 본인이 26.77%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54.41%, 본인이 40.12%로 나타났다.

〈표 10-3-5〉 주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56.75	68.80	54.41
본인(개인)	37.95	26.77	40.12
가족 친지	3.74	4.19	3.65
직장	1.57	0.24	1.8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고용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지방정부)가 65.23%, 본인(개인)이 6.76%, 가족 친지가 0.98%, 직장이 27.0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69.24%, 직장이 25.14%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64.45%, 직장이 27.39%로 나타났다.

〈표 10-3-6〉 고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65.23	69.24	64.45
본인(개인)	6.76	5.06	7.09
가족 친지	0.98	0.56	1.06
직장	27.03	25.14	27.3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중앙/지방정부)가 92.49%, 본인(개인)이 2.52%, 가족 친지가 4.28%, 직장이 0.71%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96.39%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가가 91.74%로 나타났다.

〈표 10-3-7〉 장애인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92.49	96.39	91.74
본인(개인)	2.52	1.14	2.79
가족 친지	4.28	2.39	4.64
직장	0.71	0.08	0.8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세금부담에 대한 의견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이 0.77%, 꽤 높다는 응답이 3.17%,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7.78%, 꽤 낮다는 응답이 45.1%,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이 40.69%, 모르겠다는 응답이 2.49%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8.99%, 꽤 낮다는 응답이 45.05%,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이 40.28%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7.54%, 꽤 낮다는 응답이 45.11%,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이 40.77%로 나타났다.

〈표 10-3-8〉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나치게 높다	0.77	0.75	0.78
꽤 높다	3.17	2.56	3.28
적절한 편이다	7.78	8.99	7.54
꽤 낮다	45.10	45.05	45.11
너무 지나치게 낮다	40.69	40.28	40.77
모르겠다	2.49	2.38	2.51
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이 3.47%, 꽤 높다는 응답이 27.82%,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49.12%, 꽤 낮다는 응답이 16.05%,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이 1.38%, 모르겠다는 응답이 2.15%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꽤 높다는 응답이 18.71%,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55.07%, 꽤 낮다는 응답이 18.89%,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꽤 높다는 응답이 29.59%,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47.97%, 꽤 낮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났다.

〈표 10-3-9〉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나치게 높다	3.47	1.51	3.85
꽤 높다	27.82	18.71	29.59
적절한 편이다	49.12	55.07	47.97
꽤 낮다	16.05	18.89	15.50
너무 지나치게 낮다	1.38	1.31	1.40
모르겠다	2.15	4.50	1.69
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이 6.87%, 꽤 높다는 응답이 40.35%,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40.80%, 꽤 낮다는 응답이 7.40%,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이 1.57%, 모르겠다는 응답이 3.01%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이 5.56%, 꽤 높다는 응답이 38.85%,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45.54%, 꽤 낮다는 응답이 4.24%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이 7.12%, 꽤 높다는 응답이 40.64%,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39.88%, 꽤 낮다는 응답이 8.01%로 나타났다.

〈표 10-3-10〉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나치게 높다	6.87	5.56	7.12
꽤 높다	40.35	38.85	40.64
적절한 편이다	40.80	45.54	39.88
꽤 낮다	7.40	4.24	8.01
너무 지나치게 낮다	1.57	1.85	1.52
모르겠다	3.01	3.96	2.83
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20%, 찬성한다는 응답이 31.88%,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17.58%, 보통이라는 응답이 18.01%,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14.86%, 반대한다는 응답이 9.02%,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3.4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5.3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18.69%, 보통이라는 응답이 20.34%,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13.48%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1.22%,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17.37%, 보통이라는 응답이 17.56%,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15.13%로 나타났다.

〈표 10-3-11〉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찬성한다	5.20	5.95	5.06
찬성한다	31.88	35.30	31.22
대체로 찬성한다	17.58	18.69	17.37
보통이다	18.01	20.34	17.56
대체로 반대한다	14.86	13.48	15.13
반대한다	9.02	4.92	9.82
매우 반대한다	3.43	1.33	3.8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90%,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27.48%,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43.31%,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22.15%,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2.56%, 기타 응답이 0.61%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원 중에서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24.33%,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49.28%,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19.97%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원 중에서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28.09%,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42.15%,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22.57%로 나타났다.

〈표 10-3-12〉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3.90	2.98	4.08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27.48	24.33	28.09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43.31	49.28	42.15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22.15	19.97	22.57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2.56	2.69	2.53
기타	0.61	0.72	0.59
모름/무응답	0.01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제11장 종단분석

제1절 경제활동 및 가구경제

제2절 가구여건 및 사회보장

제3절 복지인식

본 장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구성되었다. 한국 복지패널은 8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동일 사례의 변화를 고찰하기에는 적절한 자료로 성장하였다. 방대한 분야의 정보를 자료에 담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의 특성 상 분석의 초점도 다양하다. 2013년 기초보고서에는 보편적인 관심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그 분석의 주제, 변수를 확대하여 갈 출발로 삼고자하였다.

분석의 방법도 단일 방법을 고수하지 않았다. 자료의 구성에서도 시간갭을 두는 불균형패널과 시간갭이 없는 표본으로 한정된 균형패널을 모두 허용하였다.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 달리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에 따라 개방적으로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활용한 종단분석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분석방법은 두해의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이다. 동태가 단기간(예를 들어 1년 사이)에 관찰되기 어려운 변수의 경우에는 3년 등으로 그 관찰시점의 차이를 확대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불균형패널 분석으로 8년 동안 특정 주제와 관련된 표본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분석으로는 균형패널에 종단가중치를 적용하여 8년 동안 표본의 상황변화를 비교하였다.

제1절 경제활동 및 가구경제

1. 경제활동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분석에서 취업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포함),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하여,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로 정의하

고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를 의미하며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집에서 통근하는 군복무자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취업을 유지한 경우가 5차에서 6차까지 유지한 비율은 91.29%, 6차에서 7차까지 유지한 비율은 90.87%, 7차에서 8차까지 유지한 비율은 91.55%로 분석되었다. 즉, 이전 차수에 취업한 사람은 이후 차수에도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차수에는 취업자이었으나 이후 차수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경우는 7차에서 8차간에는 7.14%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이었으나 실업자가 된 경우는 1.31%로 분석되었다.

이번에는 이전 차수에는 실업자이었으나 이후 차수에 취업자가 된 경우는 5차에서 6차에는 60.17%, 6차에서 7차에는 56.34%, 7차에서 8차에는 68.24%를 보였다. 분석결과 7차에서 8차에 다른 차수보다 좀 더 많은 가구원이 취업자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실업을 계속 유지한 경우도 7차에서 8차가 18.86%로 다른 차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전 차수에 실업자이었던 사람이 이후 차수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경우는 6차에서 7차사이가 31.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차에서 8차에서는 12.90%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는 약 80%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간 경우는 약 15% 내외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1-1〉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구분		5차 → 6차	6차 → 7차	7차 → 8차
취업자	취업자	91.29	90.87	91.55
	실업자	1.11	1.28	1.31
	비경제활동인구	7.60	7.85	7.14
실업자	취업자	60.17	56.34	68.24
	실업자	12.88	12.47	18.86
	비경제활동인구	26.95	31.18	12.90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5.13	14.14	14.96
	실업자	1.07	0.53	0.76
	비경제활동인구	83.81	85.33	84.27

주: 비교대상인 양 차수 중에서 이전 차수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다음으로는 가구원의 종사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상용직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의미하여, 임시·일용직은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이외에도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으로 근무하는 자까지 포괄한다.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근로의 종사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를 유지한 경우는 5차에서 6차에는 93.14%, 6차에서 7차에는 91.84%, 7차에서 8차에는 93.49%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차수에는 상용직이었으나, 이후 차수에는 임시·일용직으로 변화한 경우는 각 차수별로 5~6%수준이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그 종사상 형태를 유지한 경우는 각각 83.74%, 81.43%, 86.68%로 분석되었으며, 이전 차수에는 임시·일용직이었으나 이후 상용직으로 이동한 경우는 각각 12.78%, 15.05%, 9.9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주를 유지한 경우는 5차에서 6차에는 86.11%, 6차에서 7차에는 77.11%, 7차에서 8차에는 77.51%로 5차에서 6차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 차수에는 고용주이었으나 이후 차수에 자영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5차에서 6차에는 8.88%, 6차에서 7차에서는 13.78%, 7차에서 8차에는 16.85%로 7차에서 8차 사이에 고용주에서 자영업으로 변경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 차수에는 고용주이었으나 이후 상용직으로 변경된 경우는 각 차수별로 3.52%, 6.67%, 3.87%로 나타났으며, 6차에서 7차 사이에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유지한 경우는 각각 87.33%, 86.77%, 90.14%로 나타났으며 7차에서 8차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영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경우는 약 6% 내외수준을 보였으며, 자영업에서 고용주로 이동한 경우는 5차에서 6차는 5.79%, 6차에서 7차에는 5.20%로 나타났다. 반면 7차때 자영업이었던 가구원이 8차때 고용주로 이동한 경우는 2.81%로 다른 차수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1-1-2〉 종사상 변화

(단위: %)

구분		5차 → 6차	6차 → 7차	7차 → 8차
상용직	상용직	93.14	91.84	93.49
	임사·일용직	5.29	6.84	5.16
	고용주	0.28	0.58	0.21
	자영업	1.29	0.73	1.14
임사·일용직	상용직	12.78	15.05	9.97
	임사·일용직	83.74	81.43	86.68
	고용주	0.67	0.44	0.34
	자영업	2.82	3.08	3.00
고용주	상용직	3.52	6.67	3.87
	임사·일용직	1.49	2.45	1.77
	고용주	86.11	77.11	77.51
	자영업	8.88	13.78	16.85
자영업	상용직	1.25	1.94	1.69
	임사·일용직	5.63	6.09	5.36
	고용주	5.79	5.20	2.81
	자영업	87.33	86.77	90.14

주: 비교대상인 양 차수 중에서 이전 차수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가구경제

〈표 11-1-3〉, 〈표 11-1-4〉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8차에 모두 응답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계층 및 가계의 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은 8차년도에 종단 가중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11-1-3〉은 가구들의 2005년(1차 기준연도)으로부터 2012년(8차 기준연도)까지의 소득계층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소득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가구가 저소득층을 유지할 가능성은 68.29%(1차→2차), 73.81%(2차→3차), 70.21%(3차→4차), 71.65%(4차→5차), 75.76%(5차→6차), 71.42%(6차→7차), 76.55%(7차→8차)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저소득층에서 탈출하여 중산층 및 고소득층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최대 2.53%(1차→2차)에서 최소

0.27%(5차→6차)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산층의 가구가 중산층을 유지할 가능성은 76.00%(1차→2차), 80.26%(2차→3차), 81.12%(3차→4차), 82.04%(4차→5차), 81.23%(5차→6차), 80.66%(6차→7차), 79.03%(7차→8차)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으로의 변화율은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각각 7~13%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의 가구가 고소득층을 유지할 가능성은 76.74%(1차→2차), 74.13%(2차→3차), 72.53%(3차→4차), 75.83%(4차→5차), 75.56%(5차→6차), 83.83%(6차→7차), 75.46%(7차→8차)로 6차→7차(83.83%)에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의 변화율은 6차→7차(15.25%)를 제외하고는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변화율은 0.47~2.2%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3〉 소득계층별 동태적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7차→8차
저소득층	저소득	68.29	73.81	70.21	71.65	75.76	71.42	76.55
	중산	29.18	25.04	28.68	26.92	23.97	27.80	22.97
	고소득	2.53	1.15	1.11	1.43	0.27	0.78	0.48
중산층	저소득	10.62	12.04	9.82	9.76	10.07	7.15	10.02
	중산	76.00	80.26	81.12	82.04	81.23	80.66	79.03
	고소득	13.38	7.70	9.06	8.20	8.69	12.19	10.95
고소득층	저소득	1.96	0.70	2.20	1.21	0.47	0.92	0.48
	중산	21.30	25.17	25.27	22.96	23.97	15.25	24.06
	고소득	76.74	74.13	72.53	75.83	75.56	83.83	75.46

주: 1) 한국복지패널 1~8차에 모두 응답한 가구(n=5,015)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임.

2) 소득계층은 균등화 경상소득(경상소득 / $\sqrt{\text{가구원수}}$)의 중위 50% 이하를 저소득, 중위 50%~150% 이하를 중산, 중위 150% 초과를 고소득으로 분류.

다음의 〈표 11-1-4〉는 가구들의 가계의 상태를 적자, 흑자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의 변화와 흑자에서 흑자로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상태가 적자인 가구가 적자를 유지할 가능성은 33.92%(1차→2차), 49.48%(2차→3차), 43.65%(3차→4차), 43.42%(4차→5차), 45.12%(5차→6차), 46.02%(6차→7차), 45.54%(7차→8차)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적자에서 흑자로의 변화는 66.08%(1차→2차), 50.52%(2차→3차), 56.35%(3차→4차), 56.58%(4차→5차), 54.88%(5차→6차), 53.98%(6차→7차), 54.46%(7차→8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상태가 흑자인 가구가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은 75.02%(1차→2차), 74.75%(2차→3차), 78.75%(3차→4차), 77.86%(4차→5차), 78.29%(5차→6차), 75.69%(6차→7차), 74.71%(7차→8차)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흑자에서 적자로의 변화는 24.98%(1차→2차), 25.25%(2차→3차), 21.25%(3차→4차), 22.14%(4차→5차), 21.71%(5차→6차), 24.31%(6차→7차), 25.29%(7차→8차)로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4〉 가계의 동태적 상태(적자, 흑자)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7차→8차
적자	적자	33.92	49.48	43.65	43.42	45.12	46.02	45.54
	흑자	66.08	50.52	56.35	56.58	54.88	53.98	54.46
흑자	적자	24.98	25.25	21.25	22.14	21.71	24.31	25.29
	흑자	75.02	74.75	78.75	77.86	78.29	75.69	74.71

주: 1) 한국복지패널 1~8차에 모두 응답한 가구(n=5,015)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임.

2) 가계의 상태는 총소득 - 가계지출(총생활비+지출한 이자의 값)이 0이상이면 흑자, 0미만이면 적자로 하였으며, 총생활비는 연간단위임.

다음의 〈표 11-1-5〉는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가구를 포함 한, 시간갭이 존재하는 불균형패널을 분석한 결과이다. 1~8차 모두 응답한 가구의 경우라면 8차 종단가중치를, 중도소실된 가구에게는 마지막으로 조사된 차수의 종단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현재 상태를 횡단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8차에서 조사된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이하인 빈곤 가구는 21.05%를 차지하고 있다.

1~8차에 조사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가 조사된 차수 동안 빈곤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35.35%로 나타난다. 이는 1~8차 동안 조사된 모든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35.35%의 가구가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를 보면 125.39%로 나타나는데, 빈곤과 비빈곤 모두 경험이 있는 25.39%의 가구가 중복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체의 64.65%에 달하는 가구는 빈곤했던 적이 한번도 없었던 반면, 9.96%의 가구는 조사 차수동안 빈곤하지 않았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을 1년 이상 경험했던 가구 중에서 조사 차수 내내 빈곤했던 가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약 28.19%에 달한다.

패널 조사 연수 대비 빈곤 경험 기간의 경우 57.76%로 나타난다. 이는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라면 해당 가구가 조사된 기간 중 평균적으로 57.76%의 기간을 빈곤 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시간갭이 있는 불균형패널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패널가구가 조사된 차수를 막론한 결과이다. 따라서 조사된 연수에 따라 각 패널이 갖는 빈곤 기간이 빈곤 경험기간 전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표 11-1-5〉 조사 차수 동안의 빈곤 경험 및 빈곤 경험 기간

(단위: %)

구분	8차 현재	1년 이상 빈곤(비빈곤) 경험 여부	패널 조사 연수 대비 빈곤(비빈곤) 경험 기간 평균
빈곤	21.05	35.35	57.76
비빈곤	78.95	90.04	88.39
계	100.00	125.39	73.08

주: 1)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조사되었던 모든 가구(n = 9,407)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빈곤가구 구분은 경상소득의 중위 50% 기준임.

3) 빈곤(비빈곤) 경험 기간 = 빈곤(비빈곤) 경험 차수/패널 조사 차수 × 100

제2절 가구여건 및 사회보장

1. 가구여건

신용불량가구 여부의 실태 변화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가구 내 신용불량자인 가구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먼저 신용불량자가 1인 이상 있는 신용불량가구인 경우 그 유지 비율이 2차→5차에서 42.98%, 5차→8차에서

는 48.84%로 두 기간 모두 공통적으로 약 절반이 유지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2차에서 5차에 비해 5차에서 8차의 기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신용불량 가구원이 없었던 가구의 경우 대부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차→5차 97.28%, 5차→8차 96.88%), 5차에서 8차 변화의 경우 2차에서 5차에 비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가구 비율이 좀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1〉 신용불량가구 여부의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2차 → 5차	5차 → 8차
있다	있다	42.98	48.84
	없다	57.02	51.16
없다	있다	2.72	3.12
	없다	97.28	96.88

주: 비교대상인 양 차수 중에서 이전 차수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다음으로 가구원의 흡연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흡연자는 조사시점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흡연자는 평생 한 번도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없는 가구원과 조사시점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3차 조사년도)에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4~8차까지의 흡연 지속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차년도에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가구원 중 88.09%가 4차년도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흡연자의 흡연 지속률은 5차년도에는 85.03%로 3%p감소하였고, 6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81.24%, 79.99%, 77.63%로 2~3%p씩 꾸준히 감소하였다.

〈표 11-2-2〉 3차년도 흡연 가구원의 흡연 지속률

(단위: %)

구분 \ 차수	3차(기준)	4차	5차	6차	7차	8차
경험률(%)	100.00	88.09	85.03	81.24	79.99	77.63

주: 3차년도에 '담배를 피운다'라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준연도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

이어서 2008년(3차 조사년도)에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4~8차까지의 흡연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차년도에 비흡연 가구원 중 4차년도에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59%, 5차년도와 6차년도에는 각각 3.17%, 3.30%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에는 3.14%로 조금 감소했다가, 8차년도에는 다시 3.33%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11-2-3〉 3차년도 비흡연 가구원의 흡연 경험률 추이

(단위: %)

구분 \ 차수	3차(기준)	4차	5차	6차	7차	8차
경험률(%)	0.00	2.59	3.17	3.30	3.14	3.33

주: 3차년도에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준년도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

다음은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6년(2차 기준연도)으로부터 2009년(5차 기준연도), 그리고 2009년으로부터 2012년(8차 기준연도)으로의 주거 점유형태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자가인 가구가 자가 형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2차와 5차 사이(87.61%)보다 5차와 8차 사이(90.53%)에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에서 전세로의 점유형태 변화는 이전의 5.83%(2차→5차)보다 최근의 4%(5차→8차)로 변화율이 작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 가구는 점유형태를 바꾸지 않은 비율이 이전 62.38%(2차→5차)보다 최근의 64.93%(5차→8차)로 높아져 다른 점유형태를 선택하기보다 전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보증부 월세와 월세 가구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점유형태(자가 혹은 전세)로의 변화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우선 보증부 월세를 보면, 2차와 5차 사이에서는 자가와 전세로의 변화 비율이 각각 12.65%와 14.62%였던 것에 반해 5차와 8차 사이에서는 10.31%와 8.8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부월세로의 변화는 이전(2차→5차) 33.28%에서 최근(5차→8차) 36.24%로 늘어났기는 했지만, 자가 혹은 전세로의 변화는 최근(5차→8차) 8.2%와 6.75%에 그쳐 이전(2차→5차)의 14.14%와 8.59%에 비해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4〉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의 변화

(단위: %)

구분		2차 → 5차	5차 → 8차
자가	자가	87.61	90.53
	전세	5.83	4.00
	보증부 월세	1.61	1.89
	월세	0.45	0.23
	기타	4.50	3.34
전세	자가	21.14	19.59
	전세	62.38	64.93
	보증부 월세	10.03	10.18
	월세	0.73	0.63
	기타	5.72	4.67
보증부 월세	자가	12.65	10.31
	전세	14.62	8.84
	보증부 월세	66.54	75.19
	월세	2.50	2.82
	기타	3.68	2.84
월세	자가	14.14	8.20
	전세	8.59	6.75
	보증부 월세	33.28	36.24
	월세	36.87	33.51
	기타	7.13	15.30
기타	자가	24.06	20.87
	전세	17.86	11.53
	보증부 월세	7.15	7.29
	월세	3.97	1.05
	기타	46.96	59.25

주: 비교대상인 양 차수 중에서 이전 차수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사회보장

이번에는 공적연금²¹⁾의 가입형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가구용 조사표에서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은 ‘비해당²²⁾’, ‘연금수급’, ‘연금가입’, ‘연금수급하면서 가입²³⁾’,

21)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이 포함된다.

22)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혹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아닌 만 18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인 자,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미가입²⁴⁾’ 등 4가지의 응답범주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해당’과 ‘가입’이었던 경우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고 한다(2차 기준 각각 51.82%, 33.81%, 5차 기준 55.03%, 37.69%, 8차 기준 52.17%, 40.88%).

먼저, 공적연금 가입 상태에 있었던 개인들의 가입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가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2차→5차에서 82.77%, 5차→8차에서 87.71%로 2차에서 5차보다 5차에서 8차 기간에 그 유지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가입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비해당(2차→5차 11.51%, 5차→8차 8.49%)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금 수급 상태(2차→5차 4.80%, 5차→8차 3.64%)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차에서 5차에 비해 5차에서 8차로의 상태 변화를 보면 가입 유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해당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5〉 공적연금 가입형태의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2차 → 5차	5차 → 8차
가입	비해당	11.51	8.49
	수급	4.80	3.64
	가입	82.77	87.71
	수급하면서 가입	0.32	0.10
	미가입	0.59	0.05
비해당	비해당	90.54	84.60
	수급	2.07	1.20
	가입	6.90	13.99
	수급하면서 가입	0.00	0.00
	미가입	0.49	0.21

주: 비교대상인 양 차수 중에서 이전 차수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학생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즉, 국민연금 뿐 아니라 어떤 공적연금의 가입 혹은 수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3)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함.

24)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한편, 2005년(1차 기준연도)에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8차까지의 생계비 지원 지속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생계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급여를 의미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과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1차년도에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받은 경험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87.81%가 2차년도에도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경험가구의 경험 지속률은 3차년도에는 84.26%로 감소하였으며 4차년도에 다시 89.47%로 증가하였다. 5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는 87.56%, 84.54%, 85.02%, 84.8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11-2-6〉 1차년도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경험이 있는 가구의 지속률

구분 \ 차수	1차(기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경험률(%)	100.00	87.81	84.26	89.47	87.56	84.54	85.02	84.84

주: 1차년도에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연도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

이어서 2005년(1차 기준연도)에 가구복지서비스 중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8차까지의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 중 2차년도에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57%, 3차년도에는 2.38%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4차 기준연도)에는 18.30%, 5차년도 24.91%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8차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7〉 1차년도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비경험가구의 경험률 추이

구분 \ 차수	1차(기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경험률(%)	0.00	1.57	2.38	18.30	24.91	25.17	25.65	27.37

주: 1차년도에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연도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

2005년(1차 기준연도)에 가구복지서비스 중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8차까지의 의료비 지원 지속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현금, 현물, 재할서비스 모두 포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지원²⁵⁾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1차년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88.79%가 2차년도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의료비 지원 경험가구의 경험 지속률은 3차년도 86.60%, 4차년도 83.52%, 5차년도 83.54%, 6차년도 79.10%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7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는 80.83%, 83.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8〉 1차년도 의료비 지원 경험이 있는 가구의 지속률

구분 \ 차수	1차(기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경험률(%)	100.00	88.79	86.60	83.52	83.54	79.10	80.83	83.45

주: 1차년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연도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

이어서 2005년(1차 기준연도)에 가구복지서비스 중 의료비 지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8차까지의 의료비 지원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 의료비 지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 중 2차년도에 의료비 지원 경험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64%, 3차년도 3.34%, 4차년도 3.91%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5차 기준연도)에는 23.0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

25) 건강보험의 경우 도서벽지지역, 농어촌 지역, 노인세대, 저소득세대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2급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가 있다.

다. 6차년도에는 14.61%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7차년도에는 26.53%, 8차년도에는 30.3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9〉 1차년도 의료비 지원 비경험가구의 경험률 추이

구분 \ 차수	1차(기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경험률(%)	0.00	2.64	3.34	3.91	23.06	14.61	26.53	30.30

주: 1차년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연도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함.

제3절 복지인식

복지인식의 종단적 추이는 2010년(5차 조사)과 2013년(8차 조사)의 복지인식 부가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597명을 대상으로 8차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5차 조사)과 2013년(8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회 불평등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소득/재산 불평등도 인식 점수(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 인식이 높음)는 5차년도 평균 5.2점, 8차년도 평균 5.2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사회에의 성장-분배 중요도 인식 점수(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배를 더욱 중요시함)는 5차년도 평균 2.6점, 8차년도 평균 2.5점으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소득격차 해소의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 책임에 적극 동의)는 5차년도 평균 2.4점, 8차년도 평균 2.3점으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세에 적극 동의)는 5차년도 평균 3.2점, 8차년도 평균 2.9점으로 다소 감소했다.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세에 적극 동의)는 5차년도 평균 3.2점, 8차년도 평균 3.2점이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3-1〉 사회 불평등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

구분	차수	5차		8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리사회의 소득/재산의 불평등도 인식	전체	5.17	1.26	5.22	1.21
	일반	5.11	1.23	5.20	1.16
	저소득	5.39	1.38	5.28	1.40
우리사회에의 성장-분배 중요도 인식	전체	2.55	0.99	2.51	0.77
	일반	2.54	0.98	2.50	0.78
	저소득	2.62	1.05	2.55	0.74
소득격차 해소의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	전체	2.41	1.14	2.31	0.94
	일반	2.41	1.13	2.28	0.92
	저소득	2.42	1.15	2.41	1.02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전체	3.19	1.09	2.94	0.95
	일반	3.18	1.08	2.93	0.95
	저소득	3.21	1.15	2.97	0.99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전체	3.17	1.08	3.24	0.92
	일반	3.14	1.08	3.21	0.92
	저소득	3.27	1.08	3.38	0.93

주: 응답 결과를 점수화하여 계산한 값. 우리사회의 소득/재산의 불평등도 인식은 0~7점, 우리사회에의 성장-분배 중요도 인식은 0~4점, 소득격차 해소의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는 0~5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0~5점,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동의의 범위는 0~5점의 값을 가지며, 각 값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010년(5차 조사)과 2013년(8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복지인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적극 동의함)는 5차년도 평균 2.9점에서 8차년도 평균 3.1점으로 다소 증가했다. 일반가구는 전체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5차년도 평균 3.0점에서 8차년도 평균 3.4점으로 다소 증가했다. 어린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보육의 가족 책임에 적극 동의함)는 5차년도 평균 3.7점에서 8차년도 평균 3.5점으로 감소했다. 일반가구는 전체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5차년도 3.9점, 8차년도 3.9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부양의 자녀 책임에 적극 동의함)는 5차년도 평균 3.2점에서 8차년도 평균 3.0점으로 다소 감소했다. 일반가구는 5차년도 3.2점에서 8차년도 2.9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저소득가구는 5차년도 3.3점, 8차년도 3.4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근로빈곤층에게도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가 생활보장에 적극 동의함)는 5차년도는 평균 3.1점, 8차년도는 평균 2.9점이었으며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의 근로의욕 감소영향에 대한 동의 점수(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의욕 감소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 동의함)는 5차년도 4.2점에서 8차년도 4.3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표 11-3-2〉 일반적 복지 인식의 추이

구분	차수	5차		8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선별복지-보편복지의 선호도	전체	2.91	1.20	3.10	1.07
	일반	2.89	1.18	3.05	1.06
	저소득	2.97	1.29	3.35	1.10
어린자녀는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	전체	3.70	1.03	3.52	0.95
	일반	3.65	1.04	3.45	0.97
	저소득	3.88	0.99	3.87	0.78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전체	3.23	1.16	3.00	1.02
	일반	3.21	1.18	2.93	1.01
	저소득	3.34	1.12	3.35	1.00
근로빈곤층에게도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체	3.05	1.23	2.94	1.14
	일반	3.05	1.23	2.92	1.13
	저소득	3.05	1.26	3.01	1.20
사회복지의 근로의욕 감소 영향에 대한 인식	전체	4.21	1.58	4.29	1.56
	일반	4.21	1.59	4.28	1.59
	저소득	4.19	1.52	4.33	1.41

주: 응답 결과를 점수화 하여 계산한 값. 모두 0~5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선별복지-보편복지의 선호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할 수 있음.

2010년(5차 조사)과 2013년(8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지영역의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영역의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확충이 적극 필요함을 의미한다. 건강보험/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점수는 5차년도 평균 4.6점에서 8차년도 평균 3.5점으로 1.1점 감소했다. 일반가구의 경우 5차년도 4.5점, 8차년도 3.5점으로 약 1점 감소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5차년도 4.9점, 8차년도 3.6점으로 약 1.3점 감소했다. 국민연금(노령연금)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점수는 5차년도 평균 4.6점에서 8차년도 평균 3.4점으로 감소했다. 일반가구의 경우 5차년도 4.5점, 8차년도 3.4점으로 전체 경향과 유사하게 감소했고, 저소득가구는 5차년도 5.0점에서 8차년도 3.7점으로 다소 크게 감소했다. 실업대책/고용보험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점수는 5차년도 평균 4.5점에서 8차년도 평균 3.4점으로 감소했다. 빈곤층 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점수는 5차년도 평균 4.7점에서 8차년도 평균 3.6점으로 감소했다. 일반가구의 경우 5차년도 4.6점, 8차년도 3.6점으로 전체경향과 유사하게 감소했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5차년도 5.0점, 8차년도 3.7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노인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점수는 5차년도 평균 4.6점에서 8차년도 평균 3.6점으로 감소했다. 일반가구의 경우 5차년도 4.5점, 8차년도 3.5점으로 전체경향과 유사하게 감소했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5차년도 5.0점, 8차년도 3.7점으로 다소 크게 감소했다. 장애인 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점수는 5차년도 평균 4.8점에서 8차년도 평균 3.8점으로 감소했다. 아동부양 가족지원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점수는 5차년도 평균 4.8점에서 8차년도 평균 3.5점으로 감소했다.

〈표 11-3-3〉 복지영역의 정부지출 확충에 대한 인식 추이

구분	차수	5차		8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건강보험/보건	전체	4.56	9.17	3.49	0.78
	일반	4.48	8.85	3.45	0.80
	저소득	4.90	10.39	3.64	0.68
국민연금(노령연금)	전체	4.60	9.20	3.44	0.88
	일반	4.51	8.89	3.39	0.90
	저소득	4.99	10.39	3.67	0.75
실업대책/고용보험	전체	4.53	9.18	3.44	0.76
	일반	4.45	8.86	3.41	0.77
	저소득	4.88	10.41	3.57	0.67
빈곤층 생활지원	전체	4.68	9.18	3.61	0.71
	일반	4.60	8.86	3.58	0.71
	저소득	5.03	10.39	3.71	0.71
노인생활지원	전체	4.63	9.16	3.56	0.71
	일반	4.54	8.85	3.53	0.72
	저소득	4.99	10.37	3.69	0.61
장애인 생활지원	전체	4.77	9.30	3.82	0.63
	일반	4.68	8.83	3.80	0.64
	저소득	5.12	11.03	3.89	0.58
아동부양 가족지원	전체	4.76	9.15	3.45	0.86
	일반	4.70	8.84	3.43	0.87
	저소득	5.02	10.38	3.53	0.83

주: 응답 결과를 점수화 하여 계산한 값. 모두 0~5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확충이 적극 필요함을 의미함.

2010년(5차 조사)과 2013년(8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치 성향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비선택’은 응답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라 밝힐 수 없다’, ‘나와 관련이 없다’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한 경우이다. ‘모름/무응답’은 응답자가 단순히 ‘모르겠다’라고 답하거나 정확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이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차년도 28.94%에서 8차년도 24.10%로 다

소 감소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차년도 34.05%에서 8차년도에 38.22%로 다소 증가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5차년 30.46%에서 8차년도 34.75%로 증가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5차년도 5.35%에서 8차년도 2.93%로 감소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5차년도 1.20%, 8차년도에 0.00%이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가구 중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차년도 37.92%에서 8차년도 44.39%로 증가했다. 일반가구의 경우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가구 중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차년도 33.62%에서 8차년도에 39.54%로 증가했다.

〈표 11-3-4〉 정치 성향의 추이

(단위: %)

구분 \ 차수		5차	8차
전체	진보	28.94	24.10
	중도	34.05	38.22
	보수	30.46	34.75
	비선택	5.35	2.93
	모름/무응답	1.20	0.00
	계	100.00	100.00
저소득	진보	16.17	19.20
	중도	35.79	32.19
	보수	37.92	44.39
	비선택	9.71	4.22
	모름/무응답	0.41	0.00
	계	100.00	100.00
일반	진보	32.09	25.17
	중도	33.62	39.54
	보수	28.62	32.64
	비선택	4.28	2.65
	모름/무응답	1.39	0.00
	계	100.00	100.00

참고문헌 <<

- 강석훈(2003).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4.
- 김규성(2006). 유한모집단에서 가중평균에 포함된 가중치의 효과. *조사연구* 7(2), pp.53~69.
- 김영원·류제복·박진우·홍기학(2000).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자유아카데미.
- 김재광·정상아·김진수(2008).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가중치 산출을 위한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T2008-1.
- 김종호(1991). *표본조사법*. 자유아카데미.
- 박홍래(1993). *통계조사론*. 영지문화사.
- 손창균(2008).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 조정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11월호, pp.6~23.
- 윤여인(2007). 우리나라의 패널 조사 현황과 과제. *패널리뷰*.
- Biemer, P. P., and Lyberg, L. E.(200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John Wiley & Sons, Inc.
- Brewer, K.(2002). *Combined Survey Sampling Inference*, Arnold.
- Chambers, P. L., and Skinner, C.J.(2003). *Analysis Of Survey Data*, London, John Wiley & Sons, Inc.
- Cochran, W.G.(1977). *Sampling Techniques*, John Wiley & Sons, Inc.
- Groves, R. M., et al.(1992). *Nonsampling Error in Surveys*, John Wiley & Sons, Inc.
- Groves, R.M., et al.(2002). *Survey Nonresponse*, John Wiley & Sons, Inc.
- Kasprzyk, D., et al.(1989). *Panel Surveys*, John Wiley & Sons, Inc.
- Lohr, S.L.(199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Duxbury Press.
- SAS Inc., *SAS/STAT User's Guide*, Version 9, SAS Publishing.
- Scheaffer, R.L., Mendenhall, W., and Ott, R.L.(2004). *Elementary Survey Sampling*, 6th Ed., Duxbury Press.
- Stata Corp., <http://www.stata.com>
- Thompson, S.K.(2002). *Sampling*, 2nd Ed., John Wiley & Sons, Inc.
- 미국 PSID <http://psidonline.isr.unich.edu>
- 미국 SIPP <http://www.sipp.census.gov/sipp/>
- 영국 BHPS <http://www.iser.essex.ac.uk/bhps>

유럽연합 ECHP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chp>

캐나다 SLID <http://www.statcan.ca/english/survey/household/dynamic/income.htm>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http://www.kli.re.kr/klips/ko/main/main.jsp>

한국복지패널 <http://www.koweps.re.kr>

호주 HILDA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CNEF <http://www.human.cornell.edu/pam/research/centers-programs/german-panel/cnef.cfm>

LIS <http://www.lisdatacenter.org/>

Stata Corp. <http://www.stata.com>

부 록

〈부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

1. 일반적 특성

〈부표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구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가구	92.34	75.00	99.13
수급가구	7.66	24.99	0.87
일반수급가구	7.22	23.65	0.78
조건부수급가구	0.42	1.28	0.09
특례가구	0.02	0.06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1-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가구	92.34	75.00	99.13
수급가구	7.67	24.99	0.87
가구원 전부수급	6.17	20.95	0.37
가구원중 일부수급	1.50	4.04	0.50
계	100.01	28.15	71.85

〈부표 1-1-3〉 가구유형별 평균가구원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가구원수	표준오차
전 체	2.6	0.02
저소득	1.8	0.02
일 반	2.9	0.02

〈부표 1-1-4〉 가구원의 최종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졸 이하	4.48	11.31	3.76
고등학교졸 이하	28.97	38.49	27.97
전문대졸 이하	16.11	13.97	16.34
대학교졸 이하	48.14	36.23	49.39
대학원졸 이상	2.31	-	2.55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년도 신규가구원 3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5〉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73.42	53.09	75.39
일반계(특목:과학고)	1.51	1.72	1.50
일반계(특목:외국어고)	0.47	-	0.51
일반계(특목:예술고)	0.79	-	0.87
일반계(특목:체육고)	0.14	1.59	-
실업계(농업)	1.34	-	1.47
실업계(공업)	8.28	12.80	7.85
실업계(상업)	9.09	28.76	7.19
실업계(수산 및 해양)	0.72	-	0.80
실업계(가사 및 실업)	0.84	1.23	0.81
실업계(종합)	0.92	0.83	0.93
특성화고	1.28	-	1.41
대안학교	0.70	-	0.77
검정고시	0.32	-	0.35
기타	0.16	-	0.18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년도 신규가구원 375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3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6〉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21.06	39.68	13.24
부산광역시	12.49	7.76	10.19
대구광역시	5.88	7.59	3.13
인천광역시	2.94	10.50	5.06
광주광역시	3.16	1.16	3.34
대전광역시	3.67	-	3.94
울산광역시	2.28	2.76	0.25
경기도	21.69	5.19	21.00
강원도	3.22	3.53	3.45
충청북도	3.22	0.87	2.53
충청남도	2.93	-	3.84
전라북도	1.86	9.98	7.02
전라남도	5.29	1.38	3.63
경상북도	3.77	1.59	6.87
경상남도	4.65	5.61	10.46
제주도	0.24	2.39	1.26
외국	1.16	-	0.80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년도 신규가구원 375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3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7〉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18.88	23.17	18.55
사회계열(경상계열)	8.26	4.50	8.55
사회계열(법학계열)	3.22	2.73	3.26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9.03	19.07	8.25
교육계열	5.78	4.03	5.91
공학계열	25.34	24.12	25.43
자연계열	9.39	1.58	9.99
의약계열(의학)	4.15	-	4.47
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6.10	7.70	5.98
예체능계열	8.01	10.92	7.79
기타	1.84	2.18	1.81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년도 신규가구원 375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2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8〉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17.02	46.43	14.75
부산광역시	10.56	7.23	10.82
대구광역시	2.79	3.33	2.75
인천광역시	5.49	11.48	5.02
광주광역시	5.25	-	5.65
대전광역시	7.45	-	8.03
울산광역시	0.64	-	0.69
경기도	13.31	9.17	13.63
강원도	3.12	3.03	3.13
충청북도	3.00	1.16	3.14
충청남도	5.96	-	6.42
전라북도	6.69	2.73	6.99
전라남도	3.78	7.70	3.48
경상북도	4.34	6.21	4.19
경상남도	8.03	1.52	8.53
제주도	1.22	-	1.32
외국	1.35	-	1.45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년도 신규가구원 375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2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9〉 가구주의 최종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졸 이하	2.22	0.52	2.46
고등학교졸 이하	50.13	96.27	43.77
전문대졸 이하	6.30	-	7.17
대학교졸 이하	34.14	3.21	38.41
대학원졸 이상	7.20	-	8.20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 조사 신규가구원 375명 중 가구주 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0〉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63.69	64.56	63.56
일반계(특목:과학고)	2.67	-	3.04
일반계(특목:체육고)	1.52	12.34	-
실업계(농업)	0.39	-	0.45
실업계(공업)	12.67	-	14.46
실업계(상업)	15.32	23.1	14.23
실업계(수산및해양)	2.47	-	2.82
대안학교	1.26	-	1.44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 조사 신규가구원 375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1〉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17.52	75.89	9.31
부산광역시	21.61	-	24.65
대구광역시	12.97	-	14.79
인천광역시	2.71	-	3.10
광주광역시	1.66	-	1.89
대전광역시	13.06	-	14.90
울산광역시	0.45	-	0.51
경기도	0.58	-	0.67
충청북도	0.84	6.77	-
충청남도	8.39	-	9.57
전라북도	4.93	-	5.62
전라남도	4.20	5.00	4.08
경상북도	6.29	12.34	5.44
경상남도	4.79	-	5.47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 조사 신규가구원 375명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2〉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19.44	-	19.60
사회계열(경상계열)	22.57	-	22.76
공학계열	46.98	-	47.37
자연계열	3.67	100.00	2.88
예체능계열	7.33	-	7.39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 조사 신규가구원 375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1-1-13〉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9.71	100.00	8.96
부산광역시	33.42	-	33.69
대구광역시	4.64	-	4.68
광주광역시	3.40	-	3.43
대전광역시	31.02	-	31.28
전라남도	9.33	-	9.41
경상북도	8.48	-	8.55
계	100.00	100.00	100.00

주: 8차 조사 신규가구원 375명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주 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경제활동

〈부표 2-2-1〉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형태	직접고용	92.02	84.60	92.69
	간접고용	4.19	8.22	3.83
	특수고용	3.78	7.19	3.48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8.68	27.82	6.96
	전일제	91.32	72.18	93.04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계약기간 정해짐	28.87	55.88	26.45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71.13	44.12	73.55
근로지속 가능성	계속 근로 가능	64.81	30.35	67.91
	계속 근로 불가능	35.19	69.65	32.0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2〉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33.82	29.71	34.63
목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23.58	28.95	22.53
사업주가 그만두라던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0.54	39.46	40.75
현재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1.98	1.62	2.05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0.00	0.00	0.00
특정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08	0.27	0.0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3〉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77.03	86.67	76.18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 됨	7.64	11.29	7.3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4.81	1.05	5.1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10.51	1.00	11.3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4〉 취업 가구원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폐업 경험여부	있다	13.19	20.43	12.37
	없다	86.81	79.57	87.63
사직, 폐업 사유	파산, 폐업, 휴업 등	10.50	13.38	9.95
	정리해고	0.50	2.24	0.18
	권고사직/명예퇴직	1.66	1.11	1.77
	정년퇴직	0.80	0.26	0.91
	계약기간 만료	11.02	14.69	10.33
	소득/보수 적음	11.10	13.49	10.65
	일거리 부족	12.51	16.67	11.72
	일의 장래성 없음	7.14	3.34	7.85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3.64	0.15	4.30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10.04	6.02	10.80
	자기(가족) 사업 시작	5.74	5.87	5.72
	가사 문제	1.06	1.68	0.94
	건강/고령 등	4.12	9.45	3.11
	거리가 멀어서	0.63	1.34	0.49
	학업/군 입대 등	1.41	1.67	1.36
	좀 더 좋은 일자리	15.73	5.71	17.62
	출산/육아	0.24	0.00	0.28
	기타	2.16	2.94	2.0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5〉 가구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및 구직기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3.99	3.75	4.09
	아니다	96.01	96.25	95.91
구직기간	1년 미만	99.73	99.24	99.83
	1년 이상 3년 미만	0.25	0.75	0.15
	3년 이상 5년 이상	0.02	0.02	0.02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6.93	8.96	6.16

〈부표 2-2-6〉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이 때문에	20.22	33.60	15.12	9.94	8.35	14.13
성차별 때문에	0.00	0.00	0.00	0.00	0.00	0.00
외모 때문에	0.00	0.00	0.00	1.46	0.00	5.31
학력이 낮기 때문에	2.30	7.77	0.22	1.94	2.34	0.88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11.60	12.85	11.12	16.77	16.46	17.59
경력이 부족해서	8.00	3.57	9.69	12.02	13.96	6.92
건강문제로	2.63	6.80	1.04	1.33	1.42	1.11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7.54	5.85	8.19	5.98	8.06	0.52
신용불량자라서	0.14	0.52	0.00	0.00	0.00	0.00
가사일 때문에	0.00	0.00	0.00	0.54	0.74	0.00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4.01	0.00	5.54	0.00	0.00	0.00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24.82	26.18	24.30	15.77	15.46	16.57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2.87	0.00	3.96	4.82	4.71	5.10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4.60	2.87	5.26	9.86	10.35	8.60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8.74	0.00	12.06	12.82	12.36	14.04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0.87	0.00	1.20	6.74	5.80	9.23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1.65	0.00	2.28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표 2-2-7〉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0	189	6.14
저소득	180	162	9.74
일반	200	200	7.57

〈부표 2-2-8〉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13.17	13.40	13.07
	아니다	86.83	86.60	86.93
근로 가능 여부	그렇다	43.68	49.62	41.13
	아니다	56.32	50.38	58.8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9〉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81	6.00	14.80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8.77	36.12	40.13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9.58	19.86	19.4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2.47	1.63	2.9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4.15	5.66	3.37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3.23	30.73	19.3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10〉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1.38	0.00	1.46
기능장	0.00	0.00	0.00
기사	8.37	22.55	7.55
산업기사	1.15	0.00	1.22
기능사	18.31	7.52	18.93
기타 공인 면허자격증	63.08	61.50	63.17
자격증 없는 기능자	7.72	8.43	7.6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11〉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3.86	0.00	4.08
화공·세라믹	2.57	0.00	2.72
전기·전자	1.05	0.00	1.11
통신	1.22	0.00	1.29
조선	0.21	0.00	0.23
항공	0.00	0.00	0.00
섬유	0.00	0.00	0.00
토목·건축	0.35	0.00	0.37
광업자원	0.00	0.00	0.00
정보처리	3.12	27.68	1.70
국토개발	1.22	0.00	1.29
농림	0.00	0.00	0.00
해양	0.00	0.00	0.00
산업디자인	1.14	0.00	1.21
에너지	0.82	0.00	0.87
환경	1.21	0.00	1.28
안전관리	0.00	0.00	0.00
산업응용	4.04	0.00	4.28
교통	8.02	1.08	8.42
공예	3.41	0.00	3.61
사무관리	8.85	0.00	9.36
음료품·식료품	8.54	19.22	7.92
위생	4.18	5.72	4.09
보건·의료·사회	19.61	19.07	19.64
금융·무역·유통	1.99	0.00	2.11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12.09	0.00	12.79
외국어·관광	1.94	4.67	1.78
기타	10.54	22.55	9.8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12〉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고용형태	직접고용	91.68	81.97	92.76
	간접고용	4.61	9.98	4.01
	특수고용	3.71	8.05	3.23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4.62	24.08	2.44
	전일제	95.38	75.92	97.56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	계약기간 정해짐	22.90	53.21	19.50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77.10	46.79	80.50
근로지속 가능성	계속 근로 가능	72.17	31.58	76.72
	계속 근로 불가능	27.83	68.42	23.2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13〉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34.67	31.36	35.76
목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25.28	32.76	22.82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37.93	35.11	38.86
현재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2.07	0.77	2.50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0.00	0.00	0.00
특정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05	0.00	0.0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14〉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73.11	83.76	71.9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 됨	7.82	13.13	7.23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4.83	1.54	5.20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14.24	1.57	15.6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15〉 취업 가구주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폐업 경험여부	있다	11.23	20.77	9.91
	없다	88.77	79.23	90.09
사직, 폐업 사유	파산, 폐업, 휴업 등	11.15	14.14	10.28
	정리해고	0.79	2.68	0.24
	권고사직/명예퇴직	3.03	1.71	3.41
	정년퇴직	1.76	0.40	2.15
	계약기간 만료	12.94	18.18	11.42
	소득/보수 적음	9.80	14.53	8.43
	일거리 부족	15.12	17.11	14.54
	일의 장래성 없음	4.30	0.86	5.30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2.29	0.23	2.89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10.48	6.85	11.54
	자기(가족) 사업 시작	6.01	5.04	6.29
	가사 문제	0.48	1.84	0.09
	건강/고령 등	4.33	10.09	2.66
	거리가 멀어서	0.35	0.90	0.19
	학업/군 입대 등	0.00	0.00	0.00
	좀 더 좋은 일자리	14.62	3.96	17.71
	출산/육아	0.00	0.00	0.00
	기타	2.55	1.47	2.8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16〉 가구주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4.80	2.70	7.97
	아니다	95.20	97.30	92.03
구직기간	1년 미만	99.83	99.79	99.85
	1년 이상 3년 미만	0.16	0.20	0.15
	3년 이상 5년 이상	0.00	0.02	0.00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6.29	5.95	6.47

〈부표 2-2-17〉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나이 때문에	28.36	27.77	28.66	23.29	33.81	18.31
성차별 때문에	0.00	0.00	0.00	0.00	0.00	0.00
외모 때문에	0.00	0.00	0.00	1.46	4.54	0.00
학력이 낮기 때문에	0.00	0.00	0.00	2.22	0.00	3.26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10.80	7.20	12.65	18.40	28.32	13.69
경력이 부족해서	2.01	5.93	0.00	8.40	0.00	12.38
건강문제로	2.43	2.69	2.30	1.38	2.66	0.77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11.08	12.62	10.29	1.33	1.26	1.37
신용불량자라서	0.00	0.00	0.00	0.00	0.00	0.00
가사일 때문에	0.00	0.00	0.00	0.00	0.00	0.00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0.00	0.00	0.00	0.00	0.00	0.00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0.00	0.00	0.00	0.00	0.00	0.00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32.03	41.85	27.00	9.96	3.40	13.07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6.25	0.00	9.46	3.25	0.00	4.79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6.67	1.94	9.09	3.87	10.79	0.59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0.36	0.00	0.55	17.71	3.08	24.64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0.00	0.00	0.00	8.73	12.14	7.1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표 2-2-18〉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0	232	12.30
저소득	150	172	16.16
일반	250	262	15.06

〈부표 2-2-19〉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직활동 여부	그렇다	11.71	11.89	11.42
	아니다	88.29	88.11	88.58
근로 가능 여부	그렇다	50.91	45.83	59.35
	아니다	49.09	54.17	40.6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20〉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2.74	12.65	12.8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3.89	15.74	34.37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5.16	32.76	15.40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0.00	0.00	0.0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4.24	4.68	3.68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33.96	34.17	33.6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2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0.00	0.00	0.00
기능장	0.00	0.00	0.00
기사	16.67	0.00	18.10
산업기사	3.97	0.00	4.31
기능사	9.12	13.67	8.73
기타 공인 면허자격증	69.71	86.33	68.29
자격증 없는 기능자	0.53	0.00	0.5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22〉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2.97	0.00	3.22
화학·세라믹	5.37	0.00	5.83
전기·전자	3.62	0.00	3.93
통신	4.20	0.00	4.56
조선	0.74	0.00	0.80
항공	0.00	0.00	0.00
섬유	0.00	0.00	0.00
토목·건축	1.22	0.00	1.32
광업자원	0.00	0.00	0.00
정보처리	3.66	41.73	0.39
국토개발	4.21	0.00	4.57
농림	0.00	0.00	0.00
해양	0.00	0.00	0.00
산업디자인	0.00	0.00	0.00
에너지	0.00	0.00	0.00
환경	4.18	0.00	4.54
안전관리	0.00	0.00	0.00
산업응용	13.94	0.00	15.14
교통	8.10	2.59	8.58
공예	0.00	0.00	0.00
사무관리	5.62	0.00	6.11
음료품·식료품	0.00	0.00	0.00
위생	3.82	13.67	2.97
보건·의료·사회	17.78	42.01	15.70
금융·무역·유통	6.88	0.00	7.47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8.37	0.00	9.09
외국어·관광	0.00	0.00	0.00
기타	5.33	0.00	5.78
계	100.00	100.00	100.00

〈부록 2〉 가구 경제

1. 소득

〈부표 2-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 미만	12.38	43.96	-
1,000~2,000 미만	15.75	44.3	4.56
2,000~3,000 미만	13.79	10.41	15.11
3,000~4,000 미만	12.62	1.31	17.05
4,000~5,000 미만	10.97	0.03	15.26
5,000 이상	34.49	-	48.01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에서 3,000~5,000구간의 경상소득이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은 적으나 가구규모가 큰 가구들의 공공부조소득이 높기 때문임.

〈부표 2-1-2〉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보유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없다	27.71	56.99	16.24
	있다	72.29	43.01	83.76
사업소득	없다	80.87	92.48	76.32
	있다	19.13	7.52	23.68
농림축어업소득	없다	92.59	90.27	93.5
	있다	7.41	9.73	6.5
부업소득	없다	95.28	91.52	96.76
	있다	4.72	8.48	3.24
계		100.00	100.00	100.00

주: 부업소득의 비율이 3차 조사의 7.5에 비해 많이 줄어든 이유는 4차 조사부터는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조사하였기 때문임.

〈부표 2-1-3〉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500 미만	34.30	72.94	19.16
	500~1,000 미만	5.76	12.31	3.19
	1,000~1,5000 미만	5.38	7.53	4.53
	1,500~2,000 미만	5.48	5.07	5.63
	2,000~2,5000 미만	5.36	1.72	6.78
	2,500~3,000 미만	5.03	0.34	6.87
	3,000 이상	38.71	0.09	53.84
	계	100.00	100.00	100.00
사업소득 (자영업 포함)	500 미만	83.25	96.27	78.15
	500~1,000 미만	1.63	1.28	1.77
	1,000~1,5000 미만	1.92	1.15	2.22
	1,500~2,000 미만	1.72	0.72	2.12
	2,000~2,5000 미만	2.17	0.48	2.84
	2,500~3,000 미만	1.10	0.06	1.52
	3,000 이상	8.20	0.05	11.39
	계	100.00	100.00	100.00
농림축어업소득	500 미만	96.38	97.42	95.98
	500~1,000 미만	1.27	1.75	1.09
	1,000~1,5000 미만	0.65	0.55	0.69
	1,500~2,000 미만	0.39	0.18	0.47
	2,000~2,5000 미만	0.25	0.11	0.31
	2,500~3,000 미만	0.24	-	0.33
	3,000 이상	0.81	-	1.13
	계	100.00	100.00	100.00
부업소득	500 미만	99.90	100.00	99.87
	500~1,000 미만	0.05	-	0.07
	1,000~1,5000 미만	0.01	-	0.02
	1,500~2,000 미만	-	-	-
	2,000~2,5000 미만	-	-	-
	2,500~3,000 미만	-	-	-
	3,000 이상	0.03	-	0.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1-4〉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보유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없다	62.63	76.34	57.26
	있다	37.37	23.66	42.74
사회보험	없다	74.09	72.79	74.59
	있다	25.91	27.21	25.41
민간보험	없다	99.05	99.43	98.91
	있다	0.95	0.57	1.09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없다	0.45	0.08	0.59
	있다	99.55	99.92	99.4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없다	92.11	74.61	98.97
	있다	7.89	25.39	1.03
기타정부보조금	없다	48.99	20.05	60.33
	있다	51.01	79.95	39.67
기타소득	없다	2.00	2.26	1.90
	있다	98.00	97.74	98.10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없다	68.56	81.70	63.42
		있다	31.44	18.30	36.58
	임대료	없다	86.50	91.36	84.59
		있다	13.50	8.64	15.41
사회보험	기타	없다	99.73	99.96	99.64
		있다	0.27	0.04	0.36
	공적연금	없다	77.49	74.82	78.53
		있다	22.51	25.18	21.47
	고용보험	없다	96.33	97.97	95.68
		있다	3.67	2.03	4.32
	산재보험	없다	99.38	99.66	99.27
		있다	0.62	0.34	0.73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여부(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민간보험	개인연금	없다	99.06	99.46	98.91
		있다	0.94	0.54	1.09
	퇴직연금	없다	99.99	99.96	100.00
		있다	0.01	0.04	-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없다	34.37	28.85	36.54
		있다	65.63	71.15	63.46
	민간보조금	없다	2.10	2.07	2.11
		있다	97.90	97.93	97.8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없다	92.11	74.61	98.97
		있다	7.89	25.39	1.03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없다	95.13	86.15	98.65
		있다	4.87	13.85	1.35
	기초노령연금	없다	76.90	45.35	89.27
		있다	23.10	54.65	10.73
	한부모가족지원	없다	99.69	99.37	99.81
		있다	0.31	0.63	0.19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없다	99.92	99.76	99.98
		있다	0.08	0.24	0.02
	양육수당	없다	99.21	99.45	99.12
		있다	0.79	0.55	0.88
	보육료 지원	없다	91.10	97.43	88.61
		있다	8.90	2.57	11.39
	학비지원	없다	95.61	93.88	96.29
		있다	4.39	6.12	3.71

〈부표 2-1-5〉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여부(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급식비 지원	없다	96.09	93.85	96.96
		있다	3.91	6.15	3.04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없다	85.96	71.68	91.55
		있다	14.04	28.32	8.45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없다	82.86	65.39	89.70
		있다	17.14	34.61	10.30
기타소득 ¹⁾	기타	없다	84.69	68.32	91.11
		있다	15.31	31.68	8.89
	증여·상속	없다	99.28	99.65	99.13
		있다	0.72	0.35	0.87
	경조금	없다	95.11	96.81	94.44
		있다	4.89	3.19	5.56
	보상금	없다	98.01	97.61	98.16
		있다	1.99	2.39	1.84
	사고보험금	없다	90.11	95.85	87.86
		있다	9.89	4.15	12.14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없다	90.15	96.45	87.69
		있다	9.85	3.55	12.31
	동산, 부동산 매매차익	없다	98.23	99.23	97.84
		있다	1.77	0.77	2.16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등)	없다	2.88	2.47	3.03
			97.12	97.53	96.97

주: 1)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전체	0	80	3.62
		저소득	0	24	1.70
		일반	0	101	5.50
	임대료	전체	0	115	6.24
		저소득	0	28	2.36
		일반	0	149	9.55
	기타	전체	0	3	0.90
		저소득	0	0	0.12
		일반	0	4	1.39
사회보험	공적연금	전체	0	169	6.84
		저소득	0	78	3.51
		일반	0	204	10.40
	고용보험	전체	0	13	0.92
		저소득	0	8	1.06
		일반	0	15	1.32
	산재보험	전체	0	10	1.83
		저소득	0	2	0.84
		일반	0	12	2.80
민간보험	개인연금	전체	0	3	0.54
		저소득	0	1	0.27
		일반	0	4	0.83
	퇴직연금	전체	0	0	0.00
		저소득	0	0	0.00
		일반	0	0	0.00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전체	60	218	4.80
		저소득	150	287	6.15
		일반	50	191	6.64
	민간보조금	전체	15	104	3.33
		저소득	16	76	2.99
		일반	15	114	4.9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전체	0	38	1.82
		저소득	0	125	4.71
		일반	0	4	0.81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전체	0	5	0.34
		저소득	0	13	0.83
		일반	0	2	0.26
	기초노령연금	전체	0	29	0.66
		저소득	113	70	1.24
		일반	0	13	0.61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계속)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기타 정부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	전체	0	0	0.05
		저소득	0	0	0.10
		일반	0	0	0.06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전체	0	0	0.06
		저소득	0	0	0.17
		일반	0	0	0.02
	양육수당	전체	0	1	0.18
		저소득	0	1	0.30
		일반	0	1	0.23
	보육료 지원	전체	0	28	1.20
		저소득	0	7	0.81
		일반	0	37	1.79
	학비지원	전체	0	7	0.60
		저소득	0	7	0.76
		일반	0	7	0.8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전체	0	3	0.31
		저소득	0	7	0.68
		일반	0	2	0.32
	농어업 정부보조금	전체	0	4	0.37
		저소득	0	3	0.36
		일반	0	4	0.54
	긴급복지 지원금	전체	0	0	0.07
		저소득	0	1	0.19
		일반	0	0	0.01
	바우처 지원금	전체	0	7	0.89
		저소득	0	8	1.10
		일반	0	7	1.25
	근로장려세제	전체	0	1	0.14
		저소득	0	1	0.20
		일반	0	2	0.20
	급식비 지원	전체	0	3	0.22
		저소득	0	6	0.45
		일반	0	2	0.24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전체	0	2	0.08
		저소득	0	4	0.16
		일반	0	1	0.08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전체	0	4	0.13
		저소득	0	7	0.27
		일반	0	2	0.13

〈부표 2-1-6〉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계속)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기타 정부보조금	기타	전체	0	7	0.46
		저소득	0	9	0.59
		일반	0	7	0.63
기타소득	증여·상속	전체	0	24	4.54
		저소득	0	7	3.39
		일반	0	31	6.81
	경조금	전체	0	54	3.89
		저소득	0	41	5.34
		일반	0	59	5.32
	보상금	전체	0	22	6.03
		저소득	0	36	13.70
		일반	0	17	5.81
	사고보험금	전체	0	41	4.99
		저소득	0	28	8.31
		일반	0	46	6.34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해약금	전체	0	93	10.37
		저소득	0	15	3.49
		일반	0	124	15.95
	동산, 부동산 매매차익	전체	0	106	15.56
		저소득	0	77	23.76
		일반	0	117	20.53
	기타	전체	4	8	0.96
		저소득	3	9	2.08
		일반	4	8	0.98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 조사이후부터의 기초보고서에
서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50 미만	69.95	83.5	64.64
	50~100 미만	5.74	3.15	5.82
	100~150 미만	3.97	2.67	3.05
	150~200 미만	3.28	1.52	2.42
	200~250 미만	2.46	1.45	2.13
	250~300 미만	0.61	0.38	1.15
	300 이상	13.98	4.22	15.9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회보험	50 미만	74.35	72.81	74.95
	50~100 미만	0.38	0.33	0.4
	100~150 미만	2.99	5.99	1.81
	150~200 미만	3.47	5.53	2.66
	200~250 미만	2.55	3.68	2.1
	250~300 미만	1.99	2.35	1.85
	300 이상	14.27	9.31	16.22
	계	100.00	100.00	100.00
민간보험	50 미만	99.12	99.66	98.91
	50~100 미만	0.01	-	0.02
	100~150 미만	0.19	0.09	0.24
	150~200 미만	0.09	0.06	0.1
	200~250 미만	0.05	0.07	0.05
	250~300 미만	0.05	0.03	0.05
	300 이상	0.48	0.1	0.64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의 부모나 자녀로 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 보조금 (현금 및 현물)	50 미만	25.02	17.31	28.04
	50~100 미만	13.63	11.9	14.31
	100~150 미만	10.97	7.22	12.44
	150~200 미만	6.87	5.61	7.36
	200~250 미만	6.54	6.44	6.58
	250~300 미만	3.93	4.3	3.78
	300 이상	33.04	47.21	27.48
	계	100.00	100.00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50 미만	92.36	75.34	99.02
	50~100 미만	0.25	0.67	0.08
	100~150 미만	0.19	0.59	0.03
	150~200 미만	0.29	0.83	0.08
	200~250 미만	0.39	1.25	0.06
	250~300 미만	0.66	2.08	0.1
	300 이상	5.87	19.24	0.6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1-7〉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50 미만	57.92	28.93	69.29
	50~100 미만	4.57	5.86	4.06
	100~150 미만	13.54	29.75	7.2
	150~200 미만	6.29	13.84	3.34
	200~250 미만	5.1	5.98	4.75
	250~300 미만	2.67	3.59	2.31
	300 이상	9.9	12.06	9.05
	계	100.00	100.00	100.00
기타소득	50 미만	77.44	88.24	73.21
	50~100 미만	2.58	1.72	2.92
	100~150 미만	3.21	1.78	3.77
	150~200 미만	1.34	0.64	1.62
	200~250 미만	1.68	0.44	2.17
	250~300 미만	0.81	0.45	0.95
	300 이상	12.94	6.73	15.37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차 조사이후부터의 기초보고서부터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2. 지출

〈부표 2-2-1〉 월간 총 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 미만	2.84	10.06	0.00
50~100 미만	11.55	39.34	0.66
100~150 미만	9.16	21.10	4.48
150~200 미만	10.10	14.72	8.29
200~300 미만	17.90	10.04	20.98
300 이상	48.45	4.73	65.5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2-2-2〉 지출항목별 생활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식료품비	합계	66	70	0.44
		가정식비	40	42	0.26
		외식비	20	24	0.23
		주류·담배비	1	4	0.08
	주거비	합계	7	12	0.21
		월세	0	5	0.14
		주거관리비	4	7	0.18
	광열수도비		13	14	0.07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4	10	0.22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	7	0.14
		보육료비	0	3	0.15
	의류·신발비		7	11	0.14
	보건의료비		8	16	0.27
	교육비	합계	0	22	0.50
		공교육비	0	9	0.31
		사교육비	0	13	0.36
	교양오락비		6	13	0.26
	교통·통신비	합계	35	49	0.73
		교통비	20	36	0.69
		통신비	12	13	0.11
	기타소비지출		47	61	0.72
	송금보조 (사적이전)	합계	5	19	0.42
		비동거가구원	0	5	0.26
		부모	0	8	0.21
		자녀	0	4	0.21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2	0.09
	세금		4	13	0.35
	사회보장부담금		13	18	0.23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4
	자가소비액(어업)		0	0	0.00
	이자지출		0	10	0.36

〈부표 2-2-2〉 지출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저소득	식료품비	합계	33	37	0.33
		가정식비	25	28	0.23
		외식비	4	7	0.14
		주류·담배비	0	2	0.08
	주거비	합계	4	8	0.23
		월세	0	5	0.17
		주거관리비	1	4	0.17
	광열수도비		10	10	0.08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1	4	0.17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	3	0.14
		보육료비	0	1	0.09
	의류·신발비		2	3	0.06
	보건의료비		5	11	0.30
	교육비	합계	0	5	0.28
		공교육비	0	3	0.22
		사교육비	0	2	0.15
	교양오락비		1	3	0.12
	교통·통신비	합계	8	14	0.32
		교통비	4	8	0.27
		통신비	4	6	0.10
	기타소비지출		11	20	0.52
	송금보조 (사적이전)	합계	0	4	0.26
		비동거가구원	0	1	0.15
		부모	0	1	0.05
		자녀	0	2	0.19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0	0.05
	세금		0	1	0.08
	사회보장부담금		0	2	0.09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6
	자가소비액(어업)		0	0	0.00
	이자지출		0	3	0.23

〈부표 2-2-2〉 지출항목별 생활비 평균(계속)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일반	식료품비	합계	79	83	0.54
		가정식비	45	47	0.35
		외식비	28	30	0.30
		주류·담배비	2	5	0.11
	주거비	합계	7	13	0.31
		월세	0	5	0.20
		주거관리비	5	8	0.26
	광열수도비		14	15	0.10
	가구·가사용품비	합계	5	13	0.32
		가구집기·가사용품비	5	9	0.21
		보육료비	0	4	0.22
	의류·신발비		11	14	0.19
	보건의료비		10	18	0.38
	교육비	합계	0	29	0.74
		공교육비	0	12	0.45
		사교육비	0	17	0.55
	교양오락비		9	17	0.38
	교통·통신비	합계	46	63	1.05
		교통비	30	46	1.01
		통신비	15	16	0.13
	기타소비지출		64	77	0.97
	송금보조 (사적이전)	합계	10	24	0.62
		비동거가구원	0	7	0.40
		부모	4	11	0.31
		자녀	0	5	0.31
		기타(가구원이 아닌 친지)	0	2	0.14
	세금		7	18	0.53
	사회보장부담금		20	24	0.31
	자가소비액(농축산)		0	1	0.05
	자가소비액(어업)		0	0	0.00
	이자지출		0	12	0.54

3. 재산

〈부표 2-3-1〉 소유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체	0	2,916	130.55
	저소득	0	1,025	108.07
	일반	0	3,656	192.94
주택외 건물	전체	0	1,744	173.07
	저소득	0	173	39.39
	일반	0	2,360	267.09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 식장, 기타 부동산	전체	0	3,623	308.09
	저소득	0	2,079	187.71
	일반	0	4,228	467.01

주: 주택외 건물에는 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게), 창고, 상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이 포함됨.

〈부표 2-3-2〉 점유부동산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703	52.38
저소득	0	116	19.92
일반	0	933	80.30

〈부표 2-3-3〉 점유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세보증금 준 것 (가게, 사업장 등)	전체	0	186	14.22
	저소득	0	38	6.05
	일반	0	244	21.76
기타	전체	0	517	48.92
	저소득	0	78	16.00
	일반	0	689	75.26

주: 기타에는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이 포함됨.

〈부표 2-3-4〉 금융재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예금	전체	500	2,426	71.78
	저소득	150	923	49.56
	일반	650	3,016	106.82
적금 (정기적금, 연금형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	전체	48	1,467	42.15
	저소득	0	114	11.10
	일반	750	1,998	63.29
주식·채권	전체	0	364	21.49
	저소득	0	42	9.07
	일반	0	490	32.78
타기전 부은 갯돈	전체	0	9	1.37
	저소득	0	1	0.60
	일반	0	12	2.09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전체	0	167	18.92
	저소득	0	28	7.23
	일반	0	222	29.05

〈부표 2-3-5〉 농기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8	5.31
저소득	0	20	3.95
일반	0	45	7.97

〈부표 2-3-6〉 농기계 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동력탈곡기	전체	0	0	0.02
	저소득	0	0	0.04
	일반	0	0	0.02
경운기	전체	0	3	0.25
	저소득	0	3	0.32
	일반	0	3	0.35
콤바인	전체	0	8	2.55
	저소득	0	4	1.84
	일반	0	10	3.83
트랙터	전체	0	16	2.39
	저소득	0	8	1.70
	일반	0	19	3.59
기타 농기계	전체	0	11	1.53
	저소득	0	6	1.40
	일반	0	13	2.25

〈부표 2-3-7〉 농축산물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95	18.40
저소득	0	108	26.76
일반	0	90	24.71

〈부표 2-3-8〉 농축산물 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소	전체	0	58	12.67
	저소득	0	88	24.52
	일반	0	46	14.64
돼지	전체	0	1	1.56
	저소득	0	0	0.00
	일반	0	1	2.41
닭	전체	0	0	0.07
	저소득	0	0	0.01
	일반	0	0	0.10
재고농산물	전체	0	4	3.29
	저소득	0	0	0.13
	일반	0	6	5.10
기타 농축산물	전체	0	32	12.49
	저소득	0	20	10.40
	일반	0	36	18.57

〈부표 2-3-9〉 자동차가액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80	548	10.93
저소득	0	87	6.00
일반	380	729	15.81

〈부표 2-3-10〉 기타 동산부동산 재산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257	13.63
저소득	0	42	7.39
일반	0	341	20.63

〈부표 2-3-11〉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 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전체	0	3	0.97
	저소득	0	0	0.04
	일반	0	5	1.51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전체	0	177	13.14
	저소득	0	32	7.29
	일반	0	234	19.95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전체	0	76	3.11
	저소득	0	11	1.10
	일반	0	101	4.74
기타	전체	0	0	0.26
	저소득	0	0	0.15
	일반	0	1	0.39

4. 부채

〈부표 2-4-1〉 부채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금융기관대출 (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전체	0	2,221	81.54
	저소득	0	921	75.95
	일반	0	2,730	118.89
일반사채	전체	0	72	9.38
	저소득	0	80	21.87
	일반	0	69	8.68
카드빚	전체	0	47	5.09
	저소득	0	41	9.08
	일반	0	49	6.24
전세(임대)보증금 (받은돈)	전체	0	1,449	60.21
	저소득	0	415	47.03
	일반	0	1,854	89.18
외상, 미리탄계돈	전체	0	31	2.62
	저소득	0	5	1.39
	일반	0	42	3.98
기타부채	전체	0	163	15.64
	저소득	0	134	13.36
	일반	0	174	23.18

주: 미리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여야 하는 금액만 기재하도록 함.

〈부록 3〉 주거 및 건강

1. 주거

〈부표 3-1-1〉 2011년 1년 동안 이사 경험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99	8.06	12.15
없다	89.01	91.94	87.85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의 경우는 이사 경험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가구는 제외하였음.

〈부표 3-1-2〉 주거 위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하층	0.45	0.69	0.35
반지하층	3.42	5.63	2.55
지상	96.00	93.39	97.02
옥탑	0.14	0.29	0.0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3〉 방의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	8.57	12.87	6.89
2개	30.96	47.98	24.30
3개	53.66	36.23	60.49
4개	5.88	2.63	7.16
5개 이상	0.92	0.30	1.1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4〉 상·하수도 사용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	99.48	98.89	99.71
공동사용	0.49	1.02	0.29
없음	0.03	0.09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5〉 부엌 사용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입식	98.79	97.24	99.39
단독사용-재래식	0.68	1.92	0.19
공동사용-입식	0.33	0.54	0.25
공동사용-재래식	0.00	0.00	0.00
없음	0.21	0.30	0.1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6〉 화장실 사용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수세식	96.73	91.43	98.81
단독사용-재래식	1.83	4.83	0.66
공동사용-수세식	1.20	2.93	0.52
공동사용-재래식	0.21	0.71	0.01
없음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7〉 목욕시설 사용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96.77	91.30	98.91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0.82	1.92	0.39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0.31	0.62	0.19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0.03	0.11	0.00
없음	2.06	6.05	0.5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8〉 난방시설 사용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탄 또는 재래식(빨감) 아궁이	0.21	0.68	0.03
연탄보일러	0.81	1.56	0.51
나무·석탄보일러	0.65	1.02	0.50
기름보일러	14.41	28.06	9.07
가스보일러	67.97	54.49	73.26
전기보일러	4.56	4.65	4.53
중앙난방(지역난방)	11.01	8.46	12.00
전기장판	0.25	0.75	0.06
기타	0.12	0.34	0.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9〉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1.15	4.02	0.34
1천만~5천만원 미만	10.27	28.89	5.04
5천만~1억원 미만	17.05	25.45	14.70
1억~2억원 미만	34.15	27.85	35.92
2억~3억원 미만	16.71	8.20	19.09
3억원 이상	20.68	5.59	24.9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2.49	3.68	2.16
1천만~3천만원 미만	16.20	41.75	8.98
3천만~5천만원 미만	17.61	22.94	16.11
5천만~1억원 미만	29.42	21.83	31.56
1억원 이상	34.28	9.80	41.1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1〉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51.62	71.05	40.09
1천만~3천만원 미만	32.11	22.69	37.70
3천만~5천만원 미만	8.32	4.59	10.53
5천만~1억원 미만	7.25	1.67	10.56
1억원 이상	0.71	0.00	1.1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0만원 미만	69.32	86.32	58.38
30만~50만원 미만	24.40	12.53	32.05
50만~100만원 미만	5.88	1.15	8.93
100만원 이상	0.39	0.00	0.6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자기돈	88.84	17.50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99	6.76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14	7.48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5.97	68.11
사채	0.07	0.15
계	100.00	100.00

주: 주택의 구입비용 및 보증금의 전액을 한 가지 비용으로만 지불한 경우는 2순위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부표 3-1-14〉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88.84	86.92	89.48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99	6.56	3.12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14	2.48	0.7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5.97	3.95	6.64
사채	0.07	0.09	0.0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5〉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17.50	20.50	16.93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6.76	11.37	5.89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7.48	13.67	6.30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68.11	53.99	70.80
사채	0.15	0.48	0.0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16〉 총 원금 상환액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223	20.69
저소득	0	79	23.12
일반	0	250	25.37

주: 부채를 가진 사람은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1,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표 3-1-17〉 상환 후 남은 용자액 또는 부채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3,107	107.28
저소득	0	1,071	83.81
일반	1,500	3,492	131.44

주: 부채를 가진 사람은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1,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표 3-1-18〉 주거 관련 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평균

(단위: 만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40	149	5.45
저소득	0	53	4.67
일반	54	167	6.67

주: 부채를 가진 사람은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1,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표 3-1-19〉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체한 적이 없다	99.40	97.95	99.67
1회	0.18	0.30	0.15
2~3회	0.16	0.26	0.14
4회 이상	0.27	1.49	0.04
계	100.00	100.00	100.00

주: 부채를 가진 사람은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1,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표 3-1-20〉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1.21	2.67	0.63
아니오	38.26	40.45	37.40
비해당	60.54	56.88	61.97
모름/비해당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비해당은 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무상으로 주거하고 있는 경우이다.

〈부표 3-1-21〉 영구임대아파트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98	6.91	1.44
없다	97.02	93.09	98.5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2〉 공공(국민)임대아파트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2	1.36	1.86
없다	98.28	98.64	98.1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3〉 전세자금(용자)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1	0.56	0.63
없다	99.39	99.44	99.3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4〉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7	0.55	0.02
없다	99.83	99.45	99.9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5〉 주택구입자금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7	0.06	0.08
없다	99.93	99.94	99.9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1-26〉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9	1.71	0.15
없다	99.41	98.29	99.85
계	100.00	100.00	100.00

주: 기타 주거복지관련 사업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긴급가계 생활자금이 포함.

2. 건강

〈부표 3-2-1〉 병원에 입원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90.68	86.36	91.53
지병·질병	6.32	10.49	5.49
사고	2.02	2.38	1.95
출산	0.82	0.45	0.89
건강검진	0.04	0.06	0.04
요양/휴식	0.05	0.15	0.02
상·정형/교정	0.01	0.01	0.01
기타	0.07	0.09	0.0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2-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17.84	11.47	19.10
종합, 대학병원	7.20	10.57	6.53
지역 내 병·의원	73.02	74.49	72.73
한방 병·의원	1.27	1.28	1.26
보건소	0.63	2.11	0.34
기타	0.05	0.08	0.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3-2-3〉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¹⁾(가구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	16	0.24
저소득	0	4	0.15
일반	17	21	0.33

주: 1) 2011년 12월 기준 한 가구가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월평균 보험료의 합을 조사함.

〈부록 4〉 가족

1.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부표 4-1-1〉 성역할에 대한 인식(저소득가구)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㉔ 여성의 전일근로자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1.60	15.79	12.52	63.35	6.73	100.00
㉕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86	9.04	8.51	67.51	14.09	100.00
㉖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66	7.29	11.99	68.12	11.93	100.00
㉗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4.93	45.65	13.55	32.38	3.49	100.00
㉘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0.91	9.33	14.95	68.98	5.83	100.00
㉙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13.35	40.07	19.93	24.45	2.19	100.00
㉚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14.91	35.96	15.29	30.63	3.21	100.00
㉛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32.61	49.59	9.66	7.55	0.59	100.00

〈부표 4-1-2〉 성역할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㉔ 여성의 전일근로자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2.08	19.58	14.67	56.37	7.31	100.00
㉕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63	11.34	10.87	64.90	12.27	100.00
㉖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77	8.67	12.58	65.00	12.98	100.00
㉗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8.69	56.44	12.59	20.44	1.84	100.00
㉘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0.89	11.90	17.69	62.75	6.76	100.00
㉙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17.17	48.80	17.30	15.55	1.17	100.00
㉚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15.83	44.26	13.38	24.88	1.64	100.00
㉛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37.96	49.97	6.95	4.68	0.44	100.00

2. 가족문제

〈부표 4-2-1〉 생애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갑(100개비) 미만	3.06	0.40	3.37
5갑(100개비) 이상	18.73	15.78	19.07
피운 적 없음	78.22	83.82	77.55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가구원의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 흡연경험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66.07	75.34	65.28
20~30대(20~39세)	33.93	24.66	34.72
40~50대(40~59세)	0.00	0.00	0.0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가구원의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3〉 총 흡연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7.25	6.34	7.33
1년~5년 미만	46.91	49.27	46.71
5년~10년 미만	14.18	4.24	15.03
10년~15년 미만	5.72	0.00	6.21
15년 이상	25.94	40.15	24.7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가구원의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4〉 하루 평균 흡연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반갑 이내(~10개비)	43.40	51.38	41.78
반갑~한갑 이내(11~20개비)	47.78	42.21	48.9
한갑~두갑 이내(21~40개비)	8.61	6.41	9.06
두갑 초과(41개비~)	0.21	0.00	0.25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5〉 향후 금연 계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2.57	1.97	2.69
6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3.73	1.86	4.11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 계획 있음	41.55	38.41	42.18
현재로서는 금연 계획 없음	52.16	57.76	51.02
계	100.00	100.00	100.00

주: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6〉 담배연기 노출시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시간	10.79	11.26	10.73
2시간	31.86	32.09	31.82
3시간	29.21	39.88	27.65
4시간	10.13	4.40	10.96
5시간 이상	18.01	12.37	18.84
계	100.00	100.00	100.00

주: 담배연기를 맡지 않는다('0시간')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7〉 음주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2잔 정도	22.96	29.97	22.10
3~4잔 정도	24.30	25.40	24.16
5~6잔 정도	15.14	16.14	15.02
7~9잔 정도	22.53	18.18	23.07
10잔 이상	15.07	10.31	15.65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8〉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7.31	86.00	87.47
몇 달에 한번 정도	6.12	6.01	6.14
한 달에 한두번 정도	1.05	1.08	1.05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20	0.59	0.16
거의 매일	0.04	0.35	0.00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9〉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91.61	90.36	91.76
몇 달에 한번 정도	2.32	2.20	2.33
한 달에 한두번 정도	0.57	0.68	0.56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18	0.41	0.15
거의 매일	0.06	0.38	0.02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10〉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8.45	78.22	78.47
몇 달에 한번 정도	13.03	10.87	13.30
한 달에 한두번 정도	2.66	3.64	2.54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47	0.71	0.44
거의 매일	0.12	0.58	0.06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11〉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0.40	80.64	80.37
몇달에 한번 정도	11.43	10.15	11.59
한달에 한두번 정도	2.58	2.69	2.57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25	0.52	0.22
거의 매일	0.06	0.03	0.06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12〉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91.24	87.99	91.64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다	2.28	4.30	2.03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	1.21	1.74	1.14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13〉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14	8.20	5.88
없다	88.59	85.84	88.93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14〉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41	11.06	9.21
없다	85.31	82.97	85.6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15〉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6	2.84	1.63
없다	92.97	91.2	93.19
모름/무응답	5.27	5.97	5.1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부표 4-2-16〉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49.07	41.25	50.47
1~2번	9.30	9.22	9.31
3~5번	3.20	3.55	3.14
6번 이상	1.59	2.68	1.39
비해당(배우자 없음)	32.99	39.77	31.78
모름/무응답	3.86	3.53	3.9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7〉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1.77	54.72	63.03
1~2번	1.20	1.57	1.13
3~5번	0.13	0.33	0.09
6번 이상	0.06	0.09	0.05
비해당(배우자 없음)	32.99	39.77	31.78
모름/무응답	3.86	3.53	3.9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8〉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45.79	30.94	49.36
1~2번	9.34	7.57	9.76
3~5번	3.36	3.23	3.39
6번 이상	2.26	3.30	2.02
비해당(배우자 없음)	38.17	53.95	34.38
모름/무응답	1.08	1.01	1.0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19〉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9.17	42.76	63.11
1~2번	0.98	1.00	0.98
3~5번	0.36	0.62	0.30
6번 이상	0.23	0.65	0.12
비해당(배우자 없음)	38.17	53.95	34.38
모름/무응답	1.08	1.01	1.0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0〉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9.07	2.23	10.50
만족	49.51	36.45	52.25
약간 만족	14.71	15.82	14.48
보통	15.71	25.83	13.6
약간 불만족	2.59	4.74	2.15
불만족	1.85	5.20	1.15
매우 불만족	0.55	1.24	0.40
비해당(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0.58	2.64	0.15
모름/무응답	5.41	5.84	5.3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1〉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7.43	2.18	8.53
만족	30.49	17.86	33.13
약간 만족	8.14	7.31	8.31
보통	11.13	14.5	10.43
약간 불만족	2.03	2.73	1.88
불만족	1.44	2.38	1.24
매우 불만족	0.86	1.66	0.69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33.08	45.53	30.47
모름/무응답	5.42	5.86	5.3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2〉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9.89	4.32	11.06
만족	39.76	37.43	40.24
약간 만족	8.97	12.20	8.30
보통	7.69	15.30	6.10
약간 불만족	1.36	2.64	1.09
불만족	0.94	3.39	0.42
매우 불만족	0.27	1.14	0.09
비해당(자녀가 없는 경우)	25.71	17.75	27.37
모름/무응답	5.41	5.84	5.3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3〉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6.03	3.59	6.53
만족	33.72	31.81	34.12
약간 만족	8.07	11.21	7.41
보통	7.93	14.09	6.64
약간 불만족	0.83	1.31	0.73
불만족	0.74	2.31	0.41
매우 불만족	0.17	0.73	0.06
비해당(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37.09	29.10	38.76
모름/무응답	5.41	5.84	5.3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4-2-24〉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76.44	76.82	76.38
20~30대(20~39세)	10.79	10.58	10.82
40~50대(40~59세)	12.77	12.60	12.8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 자만 응답함.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5〉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66.15	0.00	76.38
20~30대(20~39세)	21.08	87.40	10.82
40~50대(40~59세)	12.77	12.60	12.80
60대 이상(60세~)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 자만 응답함.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부표 4-2-26〉 처음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0.00	-	0.00
20~30대(20~39세)	60.08	-	60.08
40~50대(40~59세)	39.92	-	39.92
60대 이상(60세~)	0.00	-	0.00
계	100.00	-	100.00

주: 신규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 자만 응답함. 응답 사례수가 매우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저소득 가구는 해당변수에 응답한 가구원이 없었음.

〈부표 4-2-27〉 마지막으로 자살을 계획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0.00	-	0.00
20~30대(20~39세)	60.08	-	60.08
40~50대(40~59세)	39.92	-	39.92
60대 이상(60세~)	0.00	-	0.00
계	100.00	-	100.00

주: 신규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 자만 응답함. 응답 사례수가 매우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저소득 가구는 해당변수에 응답한 가구원이 없었음.

〈부표 4-2-28〉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0.00	-	0.00
20~30대(20~39세)	0.00	-	0.00
40~50대(40~59세)	100.00	-	100.00
60대 이상(60세~)	0.00	-	0.00
계	100.00	-	100.00

주: 신규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자만 응답함. 응답 사례수가 매우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저소득 가구는 해당변수에 응답한 가구원이 없었음.

〈부표 4-2-29〉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0.00	-	0.00
20~30대(20~39세)	0.00	-	0.00
40~50대(40~59세)	100.00	-	100.00
60대 이상(60세~)	0.00	-	0.00
계	100.00	-	100.00

주: 신규가구원 중에서 생애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자만 응답함. 응답 사례수가 매우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저소득 가구는 해당변수에 응답한 가구원이 없었음.

〈부록 5〉 생활실태 및 자원활동

1.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도

〈부표 5-1-1〉 인터넷 사용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71.95	35.32	79.61
아니다	28.05	64.68	20.39
계	100.00	100.00	100.00

2. 가구의 생활여건

〈부표 5-2-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20	0.70	0.00
가끔 그렇다	2.60	7.37	0.73
전혀 그렇지 않다	97.20	91.94	99.2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87	2.80	0.11
가끔 그렇다	5.99	17.76	1.38
전혀 그렇지 않다	93.14	79.44	98.5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2	1.70	0.06
없다	99.44	98.23	99.91
모름/거부	0.04	0.07	0.03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거의 매일	38.05	35.83	61.47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45.48	46.13	38.53
1~2개월 동안	16.48	18.04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5〉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38.05	35.83	61.47
아니다	45.48	46.13	38.53
모름/거부	16.48	18.04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5-2-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데도 먹지 못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0.34	1.21	0.00
아니다	99.66	98.79	100.00
모름/거부	0.00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록 6〉 사회보장

1.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부표 6-1-1〉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업장가입	61.04	25.14	64.50
지역가입	36.23	72.17	32.76
임의가입	2.25	1.56	2.32
임의계속가입	0.48	1.13	0.4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하고 있다	77.56	40.47	81.14
납부하지 않고 있다	22.44	59.53	18.8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3〉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예외	95.59	97.71	94.95
실제 보험료 미납	4.41	2.29	5.05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4〉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직, 휴직, 사업중단	47.71	45.08	48.54
3개월 이상 입원	0.13	0.57	0.00
생활곤란	45.37	52.20	43.24
학업(재학)	2.78	2.16	2.97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4.00	0.00	5.2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5〉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4.45	2.24	5.14
4 ~ 6개월	5.83	4.03	6.40
7 ~ 9개월	4.31	5.44	3.95
10~12개월	85.42	88.29	84.5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6〉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미납경험 없음)	98.43	96.13	98.54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0.99	3.87	0.84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0.49	0.00	0.51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어서	0.09	0.00	0.09
기타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개월(미납경험 없음)	98.43	96.13	98.54
1 ~ 3개월	0.23	1.20	0.18
4 ~ 6개월	0.10	0.00	0.10
7 ~ 9개월	0.11	0.44	0.10
10~12개월	1.13	2.24	1.0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8〉 공적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4.31	95.47	50.27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5.06	0.00	5.56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7.36	4.53	29.60
기타	13.28	0.00	14.58
계	100.01 ¹⁾	100.00	100.00

주: 1) 총 18케이스

〈부표 6-1-9〉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령연금	84.74	84.20	85.04
장애연금	1.78	0.06	2.71
유족연금	12.23	14.61	10.94
반환일시금	0.78	1.12	0.59
기타	0.47	0.00	0.72
계	100.0	100.0	100.0

〈부표 6-1-10〉 국민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2.22	0.85	2.97
4 ~ 6개월	2.62	1.37	3.3
7 ~ 9개월	0.91	0.6	1.07
10~12개월	94.25	97.19	92.6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1〉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246	336 ¹⁾	142 ²⁾
연금	327	244	372

주: 1) 해당사례 7케이스, 2) 해당사례 5케이스

〈부표 6-1-12〉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퇴직급여	88.33	85.41	88.40
유족급여	11.50	14.59	11.43
퇴직수당	0.17	0.00	0.17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3〉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0.00	0.00	0.00
4 ~ 6개월	3.49	0.00	3.58
7 ~ 9개월	0.99	7.16	0.84
10 ~ 12개월	95.52	92.84	95.58
계	100.00	100.00	100.01

〈부표 6-1-14〉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5,483 ¹⁾	-	5,483
연금	2,505	1,402	2,531

주: 1) 해당사례 3케이스

〈부표 6-1-15〉 보훈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0.14	0.00	0.22
4 ~ 6개월	0.00	0.00	0.00
7 ~ 9개월	0.98	2.26	0.29
10~12개월	98.88	97.74	99.49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6〉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	-	-
연금	1,066	771	1,226

〈부표 6-1-17〉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미납경험 있음	1.77	3.32	1.30
미납경험 없음	98.23	96.68	98.7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8〉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5.76	2.68	8.16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76.13	88.59	66.38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3.03	0.00	5.40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0.00	0.00	0.00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15.09	8.73	20.0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19〉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36.15	23.89	45.74
4 ~ 6개월	11.01	16.43	6.76
7 ~ 9개월	9.05	8.72	9.31
10~12개월	43.79	50.96	38.18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 없음	77.59	82.44	76.11
월보험료 부담	15.05	12.16	15.93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7.33	5.39	7.92
기타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1〉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82.01	81.47	92.66
혜택범위가 좁다(본인부담이 많다)	9.10	9.19	7.34
적용기간이 제한적이다	5.08	5.34	0.00
차별대우를 받는다	3.81	4.01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2〉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업급여	78.96	83.94	78.15
모성보호급여	18.49	9.27	19.99
기타 현금급여	1.23	4.74	0.66
실업급여, 기타 현금급여	1.32	2.05	1.20
계	100.00	100.00	100.01

〈부표 6-1-23〉 고용보험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48.99	38.78	50.65
4 ~ 6개월	37.71	45.58	36.43
7 ~ 9개월	8.14	2.30	9.08
10~12개월	5.16	13.33	3.84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1-24〉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간현금급여액	362	383	359

〈부표 6-1-25〉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¹⁾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요양급여	10.22	39.21	3.86
휴업급여	16.14	10.03	17.48
장해급여-연금	43.38	31.08	46.07
장해급여-일시금	5.21	0.00	6.35
유족급여-연금	3.11	0.00	3.80
기타 현금급여	3.43	0.00	4.19
요양급여, 휴업급여	8.97	11.20	8.48
요양급여, 장해급여-일시금	1.03	5.73	0.00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	7.83	0.00	9.55
휴업급여, 기타 현금급여	0.49	2.75	0.00
장해급여-연금, 기타 현금급여	0.19	0.00	0.23
계	100.00	100.00	100.00

주: 1) 해당사례 48케이스

〈부표 6-1-26〉 산재보험 연간 연금수급 개월수¹⁾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16.69	29.83	14.76
4 ~ 6개월	23.60	11.36	25.40
7 ~ 9개월	0.00	0.00	0.00
10~12개월	59.71	58.81	59.85
계	100.00	100.00	100.00

주: 1) 해당사례 41케이스

〈부표 6-1-27〉 산재보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167	708 ¹⁾	1,379 ²⁾
연금	1,577	781 ³⁾	1,695 ⁴⁾

주: 1) 해당사례 3케이스, 2) 해당사례 4케이스, 3) 해당사례 11케이스, 4) 해당사례 30케이스

〈부표 6-1-2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149	266	1,209
연금	-	-	-

주: 연금으로 수급한 경우 없음.

〈부표 6-1-29〉 개인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¹⁾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21.72	56.94	15.29
4 ~ 6개월	12.18	3.48	13.77
7 ~ 9개월	0.00	0.00	0.00
10~12개월	66.1	39.58	70.94
계	100.00	100.00	100.00

주: 1) 해당사례 52케이스

〈부표 6-1-30〉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357	129 ¹⁾	368 ²⁾
연금	320	138 ³⁾	354 ⁴⁾

주: 1) 해당사례 2케이스, 2) 해당사례 8케이스, 3) 해당사례 16케이스, 4) 해당사례 36케이스

2. 공공부조

〈부표 6-2-1〉 지난 1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비율
3개월 미만	1.1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3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64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27
12개월	91.64
계	100.00

주: 본 문항에 대한 분석은 기존 연도의 분석과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Ⅷ. 소득 부분의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연간 수급 개월 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항2)의 수급비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의료, 자활, 교육 등의 특례가구와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를 포함해 더 포괄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동안의 수급 개월 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부표 6-2-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0.79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40.68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6.72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17.87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8.59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0.06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4.2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00
기타	1.02
계	100.00

〈부표 6-2-3〉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단위: %)

구분	비율
매우 적절하다	2.64
적절하다	9.01
보통이다	16.25
부족하다	52.79
매우 부족하다	19.30
계	100.00

〈부표 6-2-4〉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기간

(단위: %)

구분	비율
6개월 이내	0.51
6개월 후~1년 이내	1.02
1년 후~3년 이내	3.22
3년 후	5.64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79.54
잘 모르겠다	10.07
계	100.00

〈부표 6-2-5〉 탈수급 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68.23
교육비 지원	9.91
주거비 지원	18.83
자활관련 지원	3.02
계	100.00

〈부표 6-2-6〉 탈수급의 주된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19.24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18.15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0.00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0.00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2.59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4.41
가족의 병이 나아서	0.0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0.00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46.56
기타	9.06
계	100.00

〈부표 6-2-7〉 탈수급 이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73.18
교육비 지원	7.78
주거비 지원	15.81
자활관련 지원	0.00
없다	3.23
계	100.00

〈부표 6-2-8〉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수급여부 (2012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의료급여(1종)	78.98
의료급여(2종)	17.8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2.58
미가입	0.59
계	100.00

〈부표 6-2-9〉 의료급여 수급 시 문제점

(단위: %)

구분	비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82.01
혜택 범위가 좁은 것(본인 부담이 많은 것)	9.10
적용기간의 제한	5.08
차별대우를 받음	3.81
계	100.00

〈부표 6-2-10〉 근로장려세제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

구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72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7.45
그저 그렇다	11.24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59.28
매우 도움이 되었다	21.32
계	100.00

〈부표 6-2-11〉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의욕 변화에 미친 영향

(단위: %)

구분	비율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0.00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1.50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40.96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43.21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14.33
계	100.00

〈부표 6-2-12〉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및 근로장려금 신청의사

(단위: %)

구분		비율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92.77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6.12
	잘 모르겠다	1.11
근로장려금 신청 의사 (전체 가구)	신청할 것이다(하였다)	2.63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97.37
근로장려금 신청 의사 (수급요건 충족 응답가구)	신청할 것이다(하였다)	32.51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67.49
계		100.00

3. 사회복지서비스

〈부표 6-3-1〉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정봉사 서비스	2.10	4.60	1.12
식사배달 서비스	1.75	5.42	0.31
대출, 용자	0.33	0.60	0.23
개인발달계획화(자산형성프로그램)	0.19	0.30	0.15

〈부표 6-3-2〉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2.47	9.47	13.64
없다	87.53	90.53	86.36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6-3-3〉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2.0	97.3	5.09
저소득	85.0	80.4	6.94
일반	131.0	117.0	6.63

주: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2011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경험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부표 6-3-4〉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방문요양	79.30	79.12	79.51
방문목욕	30.60	25.36	36.70
방문간호	10.30	9.79	10.88
주·야간보호	10.77	6.17	16.14
단기보호	2.34	0.00	5.07
기타재가급여	8.97	15.50	1.35
시설급여	1.52	0.86	2.29
특별현금급여	5.22	5.73	4.63

주: 2012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이용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5〉 노인가구의 기타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인 무료 급식	13.93	19.40	7.42
물품지원(식료품, 의료, 가구 등)	13.48	22.46	2.78
가정봉사 서비스	4.04	5.27	2.57
식사배달 서비스	2.95	5.39	0.05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7.14	10.41	3.23
주·야간보호 서비스	0.46	0.26	0.70

주: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6〉 장애인가구의 기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장애아동수당	1.00	1.62	0.44
가정봉사 서비스	8.00	9.17	6.96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서비스	7.38	8.00	6.83
주택관련 서비스	1.66	3.09	0.38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0.89	0.90	0.89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00	1.17	2.75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	1.81	1.02	2.51
자동차 관련 지원	30.94	13.21	46.86

주: 장애인(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7〉 아동가구의 기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학비지원	29.39	62.97	24.67
예체능 교실	3.06	8.66	2.27
문화활동	4.67	20.23	2.49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0.26	0.00	0.29
영유아보충식품지원	0.84	3.83	0.41

주: 만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동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8〉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26	5.77	7.47
없다	92.74	94.23	92.53
계	100.00	100.00	100.00

주: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만 17세 이하)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부표 6-3-9〉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8.0	37.2	0.93
저소득	8.0	15.3	1.16
일반	30.0	39.6	1.03

주: 2012년 1년간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6-3-10〉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단위: 만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	6.6	0.39
저소득	0.0	2.2	0.32
일반	0.0	7.1	0.44

주: 2012년 1년간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록 7〉 복지인식

1.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부표 7-1-1〉 현재의 사회계층 구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22.07	19.85	22.50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41.31	48.96	39.83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22.04	17.91	22.84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10.37	7.48	10.93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4.21	5.80	3.9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계층 구조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0.53	0.58	0.52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2.09	2.54	2.01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6.48	5.57	6.65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73.11	67.58	74.18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17.79	23.73	16.6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① 매우 평등하다	0.70	0.37	0.76
②	1.87	2.30	1.79
③	4.66	4.23	4.75
④	15.72	13.85	16.08
⑤	32.97	28.64	33.81
⑥	28.95	29.98	28.75
⑦ 매우 불평등하다	15.12	20.62	14.0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정도가 매우 평등하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할수록 ⑦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부표 7-1-4〉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27.54	30.97	26.88
동의한다	63.51	60.45	64.11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7.03	6.46	7.14
반대한다	1.27	1.17	1.29
매우 반대한다	0.53	0.78	0.48
모르겠다	0.11	0.17	0.1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5〉 소득격차 축소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14.87	14.44	14.95
동의한다	55.33	53.75	55.6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8.32	19.82	18.03
반대한다	10.05	10.21	10.02
매우 반대한다	1.23	1.42	1.20
모르겠다	0.20	0.36	0.1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6〉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8.85	9.85	8.66
동의한다	55.67	61.09	54.61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8.86	15.11	19.59
반대한다	12.71	9.88	13.26
매우 반대한다	3.47	3.04	3.55
모르겠다	0.44	1.03	0.3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7〉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동의한다	2.06	1.99	2.07
동의한다	12.18	11.32	12.35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17.70	15.04	18.22
반대한다	54.86	53.14	55.20
매우 반대한다	12.85	18.33	11.78
모르겠다	0.34	0.18	0.3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6.54	35.86	36.67
약간 중요함	48.77	51.87	48.16
별로 중요하지 않음	12.80	11.08	13.14
전혀 중요하지 않음	1.89	1.19	2.0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9〉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9.96	39.01	40.15
약간 중요함	49.51	51.63	49.10
별로 중요하지 않음	9.24	7.96	9.49
전혀 중요하지 않음	1.29	1.41	1.2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0〉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1.85	14.82	11.28
약간 중요함	46.25	50.34	45.45
별로 중요하지 않음	36.85	29.45	38.28
전혀 중요하지 않음	5.05	5.39	4.9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1〉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44.63	43.57	44.84
약간 중요함	45.52	48.76	44.90
별로 중요하지 않음	8.85	7.19	9.17
전혀 중요하지 않음	1.00	0.47	1.1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2〉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2.97	34.07	32.75
약간 중요함	47.68	50.36	47.16
별로 중요하지 않음	17.51	14.45	18.10
전혀 중요하지 않음	1.85	1.12	1.9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3〉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3.40	16.47	12.80
약간 중요함	47.36	50.19	46.81
별로 중요하지 않음	34.01	28.53	35.07
전혀 중요하지 않음	5.24	4.81	5.3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4〉 빈곤의 원인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2.36	25.62	33.67
약간 중요함	53.30	57.38	52.51
별로 중요하지 않음	12.44	14.85	11.98
전혀 중요하지 않음	1.89	2.15	1.8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5〉 빈곤의 원인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8.19	15.40	18.73
약간 중요함	49.35	52.65	48.70
별로 중요하지 않음	28.27	28.23	28.27
전혀 중요하지 않음	4.19	3.68	4.29
모름/무응답	0.01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6〉 빈곤의 원인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30.65	27.73	31.22
약간 중요함	48.69	53.94	47.68
별로 중요하지 않음	17.90	15.83	18.30
전혀 중요하지 않음	2.74	2.47	2.80
모름/무응답	0.02	0.03	0.0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7〉 빈곤의 원인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16.17	12.64	16.86
약간 중요함	47.98	52.53	47.10
별로 중요하지 않음	30.96	30.41	31.06
전혀 중요하지 않음	4.88	4.42	4.96
모름/무응답	0.01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8〉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때문이라는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중요함	20.41	23.03	19.90
약간 중요함	45.10	46.41	44.84
별로 중요하지 않음	28.76	26.31	29.23
전혀 중요하지 않음	5.74	4.25	6.0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19〉 환경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6.22	3.18	6.82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2.48	37.72	43.41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9.94	46.45	38.68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9.08	8.78	9.13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70	2.46	1.55
모르겠다	0.58	1.41	0.4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0〉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7.16	7.21	7.15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6.24	52.06	45.11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7.91	35.74	38.33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7.68	4.78	8.2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0.83	0.16	0.96
모르겠다	0.19	0.05	0.2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1〉 국민연금(노령연금)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6.85	8.74	6.49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1.28	52.28	39.14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8.52	33.43	39.51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9.78	4.09	10.89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3.07	0.74	3.53
모르겠다	0.49	0.72	0.4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2〉 교육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8.37	4.96	9.03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6.94	47.71	46.79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2.73	38.89	31.53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0.00	7.26	10.53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77	0.93	1.94
모르겠다	0.20	0.25	0.1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3〉 주거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5.79	6.15	5.72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7.11	40.10	36.53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3.05	44.07	42.85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1.56	8.81	12.10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10	0.25	2.45
모르겠다	0.39	0.62	0.3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4〉 국방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1.41	11.96	11.30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37.98	46.49	36.32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8.24	35.28	38.81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8.65	4.51	9.45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85	0.72	3.27
모르겠다	0.87	1.04	0.8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5〉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7.68	13.88	18.41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54.23	56.28	53.83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24.49	27.27	23.95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80	2.09	2.94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0.54	0.09	0.63
모르겠다	0.27	0.40	0.2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6〉 빈곤층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8.96	11.75	8.42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54.63	63.44	52.92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29.45	20.74	31.14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5.73	3.29	6.20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0.92	0.73	0.96
모르겠다	0.30	0.06	0.3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7〉 노인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7.64	9.72	7.23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52.66	58.28	51.57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4.31	30.06	35.13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4.40	1.50	4.96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0.87	0.31	0.98
모르겠다	0.13	0.14	0.1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8〉 장애인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2.00	11.83	12.03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60.46	65.40	59.50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24.98	21.00	25.76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20	1.06	2.42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0.23	0.53	0.17
모르겠다	0.13	0.18	0.1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29〉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0.12	6.04	10.91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7.75	54.47	46.45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2.65	34.92	32.20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6.97	3.19	7.70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03	1.11	2.21
모르겠다	0.48	0.25	0.5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0〉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7.75	6.12	8.07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44.66	48.29	43.95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37.60	39.44	37.24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7.54	4.61	8.12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94	0.95	2.14
모르겠다	0.51	0.59	0.4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1〉 문화와 예술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1.60	1.53	1.62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21.55	14.65	22.89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53.25	56.24	52.67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6.08	16.92	15.91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6.14	8.51	5.68
모르겠다	1.39	2.15	1.2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2〉 정부행정업무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바란다	0.56	0.40	0.60
좀 더 지출하기를 바란다	10.02	7.96	10.42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기를 바란다	41.54	48.95	40.10
조금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28.57	26.54	28.96
훨씬 덜 지출하기를 바란다	18.04	15.25	18.58
모르겠다	1.26	0.89	1.3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3〉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5.23	8.36	4.63
잘 하고 있는 편이다	48.15	57.58	46.32
보통/그저 그렇다	33.32	24.04	35.12
잘 못하는 편이다	12.35	9.56	12.89
매우 잘못하고 있다	0.95	0.45	1.0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4〉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3.41	6.23	2.87
잘 하고 있는 편이다	42.13	57.49	39.16
보통/그저 그렇다	34.27	24.49	36.17
잘 못하는 편이다	18.56	10.73	20.08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2	1.06	1.7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5〉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99	2.87	1.81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9.67	47.50	26.21
보통/그저 그렇다	32.37	26.77	33.45
잘 못하는 편이다	31.38	19.11	33.76
매우 잘못하고 있다	4.61	3.75	4.7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6〉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71	2.85	1.49
잘 하고 있는 편이다	31.06	45.78	28.20
보통/그저 그렇다	40.41	36.73	41.13
잘 못하는 편이다	24.69	14.18	26.73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3	0.46	2.4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7〉 빈곤 예방 및 감소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14	2.24	0.93
잘 하고 있는 편이다	15.80	27.03	13.62
보통/그저 그렇다	34.36	34.29	34.37
잘 못하는 편이다	43.19	32.44	45.28
매우 잘못하고 있다	5.51	4.01	5.8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8〉 실업에 대한 대응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0.66	1.28	0.53
잘 하고 있는 편이다	12.19	18.14	11.04
보통/그저 그렇다	29.71	34.23	28.84
잘 못하는 편이다	49.60	41.31	51.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7.84	5.04	8.3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39〉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91	2.68	1.76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5.45	34.09	23.78
보통/그저 그렇다	46.25	45.39	46.42
잘 못하는 편이다	23.24	16.12	24.63
매우 잘못하고 있다	3.14	1.72	3.4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0〉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32	2.33	1.12
잘 하고 있는 편이다	23.33	30.16	22.00
보통/그저 그렇다	44.07	42.72	44.33
잘 못하는 편이다	28.34	23.49	29.29
매우 잘못하고 있다	2.94	1.30	3.2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1-41〉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잘하고 있다	1.66	3.20	1.36
잘 하고 있는 편이다	18.80	28.24	16.97
보통/그저 그렇다	38.61	41.93	37.97
잘 못하는 편이다	35.44	24.49	37.56
매우 잘못하고 있다	5.49	2.14	6.1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 복지재원 부담에 대한 의견

〈부표 7-2-1〉 교육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78.23	78.15	78.24
가족 친지	12.25	13.76	11.96
직장	1.29	2.43	1.07
민간기관(영리기관)	3.19	3.01	3.23
비영리 민간기관	5.04	2.65	5.5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2〉 보건의료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88.09	88.98	87.92
가족 친지	5.07	5.15	5.05
직장	0.97	1.77	0.81
민간기관(영리기관)	2.47	1.66	2.63
비영리 민간기관	3.41	2.45	3.59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3〉 아동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61.85	68.70	60.52
가족 친지	24.03	20.54	24.71
직장	1.94	2.04	1.92
민간기관(영리기관)	4.61	2.89	4.94
비영리 민간기관	7.58	5.83	7.9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4〉 노인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71.35	81.60	69.36
가족 친지	15.63	10.33	16.65
직장	0.26	0.45	0.23
민간기관(영리기관)	3.14	1.29	3.49
비영리 민간기관	9.62	6.33	10.2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5〉 주거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66.86	74.00	65.48
가족 친지	25.01	20.95	25.80
직장	1.79	1.53	1.84
민간기관(영리기관)	3.72	2.72	3.91
비영리 민간기관	2.61	0.80	2.97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6〉 고용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67.94	73.29	66.90
가족 친지	3.76	3.73	3.77
직장	23.45	21.60	23.81
민간기관(영리기관)	3.44	0.55	4.00
비영리 민간기관	1.41	0.83	1.52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7〉 장애인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운영,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가(중앙/지방정부)	86.00	91.86	84.87
가족 친지	3.37	2.92	3.46
직장	0.30	0.48	0.27
민간기관(영리기관)	2.36	0.73	2.68
비영리 민간기관	7.96	4.01	8.73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8〉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그렇다	33.99	31.54	34.47
그렇다	40.81	46.59	39.69
대체로 그렇다	13.40	12.24	13.62
보통이다	7.43	6.79	7.55
대체로 그렇지 않다	3.61	2.36	3.85
그렇지 않다	0.68	0.38	0.74
전혀 그렇지 않다	0.08	0.09	0.08
모름/무응답	0.00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9〉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후생활문제	27.46	34.92	26.01
건강 및 의료문제	21.66	21.13	21.77
실업문제	17.18	11.68	18.25
교육문제	9.73	5.78	10.49
아동양육문제	6.80	4.81	7.18
장애인문제	4.37	6.05	4.05
주거문제	3.67	3.89	3.63
빈곤	8.78	10.85	8.38
기타	0.35	0.89	0.2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2-10〉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후생활문제	20.37	24.48	19.57
건강 및 의료문제	23.34	29.28	22.18
실업문제	14.00	10.43	14.70
교육문제	11.71	5.81	12.85
아동양육문제	8.76	7.25	9.05
장애인문제	6.07	6.88	5.91
주거문제	5.64	3.75	6.01
빈곤	9.84	11.84	9.45
기타	0.15	0.10	0.15
모름/무응답	0.14	0.18	0.13
계	100.00	100.00	100.00

3. 정치참여와 성향

〈부표 7-3-1〉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관심이 있다	4.58	2.42	5.00
상당히 관심이 있다	12.08	10.79	12.33
다소 관심이 있다	33.33	27.36	34.48
별로 관심이 없다	38.70	38.59	38.72
전혀 관심이 없다	10.86	20.65	8.96
선택할 수 없다	0.45	0.20	0.5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3-2〉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한다	0.35	0.29	0.36
다소 만족한다	6.39	10.92	5.52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23.01	32.05	21.26
다소 불만족한다	40.50	36.32	41.31
매우 불만족한다	27.88	19.46	29.51
모르겠다	1.87	0.96	2.0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부표 7-3-3〉 자신의 정치성향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진보적	3.10	2.03	3.31
다소 진보적	21.06	13.32	22.56
중도	38.11	43.14	37.14
다소 보수적	25.49	26.23	25.34
매우 보수적	6.58	9.38	6.04
선택할 수 없다	5.61	5.88	5.56
모름/무응답	0.04	0.00	0.05
계	100.00	100.00	100.00

〈부록 8〉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조사표



승인번호
제 33109 호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요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57-6258, 02-358-9782, 02-380-8273, 8352, 83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1차 가구: 01 -3차 신규가구: 03 -5차 신규가구: 05 -7차 신규가구: 07	-2차 신규가구: 02 -4차 신규가구: 04 -6차 신규가구: 06 -8차 신규가구: 08	-1차 가구: 01 -첫 번째 분리가구: 01 -두 번째 분리가구: 02 -세 번째 분리가구: 03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⑥ 조사거부 ⑦ 이사(주소추적불가) ⑧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⑨ 기타 추적불가사유 ⑩ 기타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I. 가구일반사항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바뀐 경우 바뀐 가구주를 가구원번호 1번에 기입.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12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 패널ID ※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인포시트상의 개인패 널ID를 그대로 이기하 고, 7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운 개인패널 ID를 부여	가구원 번호	이름 가구원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① 남 ② 여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 여 확인)		문5-1)	문5-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生年)	생월 (生月)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8차 가구진입 가구원:08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이기		1			0	1	0				
		2									
		3									
		4									
		5									
		6									
		7									
		8									
		9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010. 가구주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등급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등급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심장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장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 중복장애의 경우에 는 중복장애가 복 지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 우 이를 그대로 기 입합니다.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기초보장 수급형태	문11-1)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문11-2)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문12)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12-1)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문12-2)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 ※ 기초보장수급 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2012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문2) 2012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2012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2012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020 없음→000	① 비해당 ① 질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①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2-2) 입원횟수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①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12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12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2012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12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1 없음→0	① 비해당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위염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사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 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 아래 [주요병명코드] 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 또는 임신 및 출산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의 경우는 주요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00 없음’으로 표기한다.
- ※ 급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30 기타 질병’으로 기록(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1> ① 급성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정신분열 등)의 경우에도 ‘30 기타 질병’으로 기록합니다.
-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31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록(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급여특례로 인정하는 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 1> ②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000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 **CI(Critical Illness)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
- ※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직장단체가입이 많음).
-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 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① 암(위, 간, 폐, 기관지등)	⑩ 폐결핵, 결핵	⑲ 고지혈증	㉘ 치아우식증(충치)
②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⑪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⑳ 치질(치핵)	㉙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③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등	⑫ 천식	㉑ 만성부비동염(축농증)	㉚ 기타질환(급성질환 등)
④ 만성간염, 간경변	⑬ 백내장, 녹내장	㉒ 기관지확장증	㉛ 희귀난치성 질환
⑤ 당뇨병	⑭ 만성중이염	㉓ 알레르기성 비염	㉜ 저혈압
⑥ 갑상선 질환	⑮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㉔ 턱관절질환	㉝ 없음
⑦ 고혈압	⑯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㉕ 아토피성 피부염	
⑧ 중풍, 뇌혈관질환	⑰ 골다공증	㉖ 요실금	
⑨ 심근경색증, 협심증	⑱ 빈혈	㉗ 우울증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상태 (12월 31일 기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입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①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2]으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8]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무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지침서 사례 참조)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한다. (지침서 사례 참조)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 중 하나를 택해서 응답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문3-1) 경제활동 참여상태(12월 31일 기준)

※ 문3)에서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만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음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 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 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8)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목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 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 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 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지역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 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교사, 보형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입형태의 레미콘 (화물, 덤프)기사,택배원(퀵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심장(혹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 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 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지침서] <부록3> 산업분류코드에서 중 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시오.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 업코드는 [지침서] <부록4> 직업분류코드 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가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직업명	직업코드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 ① 문3)에서 ‘①~③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햄버거의 OO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OO지역 체인 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그룹의 OO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 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OO 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OO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OO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로 응답한다.
- ② 문3)에서 ‘⑤~⑦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보호연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문9)로 갈 것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 로 납부기한을 깜 빕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 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 민연금가입자이 지만 실직, 사업 중단, 휴직(출산, 육아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 로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 사 람임.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
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제작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
입으로 봄).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
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데, 미가입인 경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신고서
받지 않은 경우나 신고서를 받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지침서] 참조)
- ①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12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 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갈 것 ※ 2012년 1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 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 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12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 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 12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 는 경우 '①비해당'으로 기 입하고, 미납한 경험이 있 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12년 1년간 보험료 를 몇 개월이나 미납 하셨습니까? →문9)로 갈 것 ※ 2012년 1년 기준임. ※ 2012년 1년간 미납경 험이 없는 경우는 0으 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 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 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6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 직원, 군인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 우는 별도이므로 가 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 업자는 '① 비해당'이 며, 고용주는 사업장 이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미가 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 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자 및 고용주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 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 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 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 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 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 와 공동으로 조성하 고, 금융기관에 위 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 시금으로 지급하는 새 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 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 험회사, 투신사, 증권 사 등의 금융기관에 서 취급하는 금융상 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 로 전환이 가능한 금 융상품으로서 개인연 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 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 은 그 각각의 피부 양자에 해당하는지 문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다면 ⑤~⑧ 중 해 당하는 번호를 기 입함.
1						
2						
3						
4						
5						
6						
7						
8						
9						

문 2) 귀댁에서는 2012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12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	--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 ① 월보험료 부담
-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Ⅱ.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12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	--	--

 만원

문 6)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 문7)로 갈 것
-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 문10)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기타’가 됩니다.
※ 점유형태 ‘⑤기타’에는 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 7)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	---	---	---	---

만원

< 유의사항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목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님)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8)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9)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가	2012년 1년간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9-1) 2012년 1년간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 ② 1회
- ③ 2~3회
-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거나 2012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10)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문 11)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땔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2) 2012년 1년간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다
㉠ 영구임대주택	☐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 공공(국민)임대주택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 기타(적을 것: _____)	☐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의 경우 2012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12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 ㉥의 경우는 2012년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div><div>〈 유의사항 〉</div><div>※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div><div>※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공금 내산,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 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div><div>※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2012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12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 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10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12년 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는 2012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div><div>※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div></div>									
문 1)	식료품 비	문 1-1) 가정 식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외식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 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3) 주류·담배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주거비 (주택 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0' (단, 자기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2-2) 주거관리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광 열수도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가구· 가사용 품비	문 4-1) 가구·집 기·가사 용품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 모품(조명기기,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 사서비스 비용(피출부, 청소비 등), 기저귀 값,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4-2) 보육료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의류 신발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의외,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보건 의료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 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료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 즈 등), 보장구,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이용료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7)	교육 비	문 7-1) 공 교 육 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 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7-2) 사 교 육 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 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8)	교양 오락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 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어 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아동용자전거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9)	교통 통신비	문 9-1)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u>자동차 보험료</u> ,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9-2)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기 타 소 비 지 출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십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u>관혼상비</u> ,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경조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교관련비용(십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사 이	문 11-1)가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가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2)타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어서 천안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예컨대, 아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세	금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등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3)	사 회 보 장 부 담 금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u>사보험료(압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u>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총 생 활 비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u>총생활비 = 1~13의 합계</u>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 귀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15)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 월평균 기준)	최저생활비 총액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귀 가구의 주관적 적정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15-1)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2012년 월평균 기준)	적정생활비 총액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 사 또는 육아·학생 ·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개월수는 2012년 동안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11)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원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임시·일용근로자	: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경 영 주	: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금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12.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학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 (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div>※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div> <div>※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div> <div>※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div> <div>※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div> <div>※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하 동일함).</div> <div>→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div>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보조기입란 3-a]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일당) 보수						
<div>※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12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12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는 월 5회, 7~12월까지는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12개월) 기재</div> <div>※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div> <div>※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div> <div>※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div>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1.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 (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div>※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div> <div>※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div> <div>※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div> <div>※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과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div> <div>→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div>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div><div>[보조기입란 4-a]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div><div><div>※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div><div>※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div><div>※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div><div>※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div></div></div> <table><thead><tr><th>성명</th><th>가구원 번호</th><th colspan="7">연간 총매출액 (A)</th></tr></thead><tbody><tr><td></td><td>1</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2</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3</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4</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5</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6</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7</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8</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9</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body></table> <div><div>[보조기입란 4-b]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div><div><div>※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div><div>※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div><div>※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div></div></div> <table><thead><tr><th>성명</th><th>가구원 번호</th><th colspan="7">연간 총비용 (B)</th></tr></thead><tbody><tr><td></td><td>1</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2</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3</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4</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5</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6</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7</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8</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9</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body></table> <div><div>4-1.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div><div><div>※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div><div>※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div><div>※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div><div>※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div><div>※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div><div>※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div><div>→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div></div></div> <table><thead><tr><th>성명</th><th>가구원 번호</th><th colspan="7">연간 순소득 (A-B)</th></tr></thead><tbody><tr><td></td><td>1</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2</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3</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4</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5</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6</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7</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8</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r><td></td><td>9</td><td>연간</td><td>십억</td><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만원</td></tr></tbody></table>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5-a]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곡 : 메벼, 햅쌀, 찰벼, 참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애플 등									
	여름 채소 :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뽕잎,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 계										

5-2.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 간 총 계	신	임	채	별	만	연 간 총 계	신	임	채	별	만	연 간 총 계	신	임	채	별	만	연 간 총 계	신	임	채	별	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잡수입 총액(D)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5-b].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 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u>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u> 을 질문하여 그 연수(年數)만큼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1년 (2012.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순소득 (A+B+C+D-E)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	--------

[보조기입란 6-a]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연간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2012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2012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2012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퇴직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기 정 부 보 조 금 타	2012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 14)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⑦, ⑧, ⑨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노인위생비, 자활장려금, 출산장려수당, 노인장수수당, 직업훈련수당, 노인교통비,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기초노령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한부모가족지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⑦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⑨ 농어업 정부보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⑩ 긴급복지지원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⑪ 기타 바우처 지원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⑫ 근로장려세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⑬ 급식비 지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⑭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⑮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⑯ 기타()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12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 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상용 또 는 임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① 증여·상속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 시금, 보장성 보험 계약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켄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12-1	환급금	2012년 1년 동안 돌려받은 환급금 총 액은?	세금환급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2012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부모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2012년 1년 동안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012년 1년 동안 귀댁의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지 9개월 미만된 가구원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혼수용품이나 혼수비 등을 제외한 정기적인 소득만을 기입함.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2012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 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2012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개월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연간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div>※ 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수급개월수는 현금, 현물지원을 모두 포함해 기입 ※ 단, 연간금액은 현금급여액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을 기입 ※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해산급여+장제급여 ※ 수급개월수는 2012년 수급개월수를 적고, 연간 금액은 월평균 (현금급여액)×수급개월수로 계산하여 기입(예, 2012년 3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받았다면, 수급개월수에는 03, 금액에는 60만원 기입)</div>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 형태	2012.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 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⑤ 외상, 할부구입, 미리탄 갯돈에 포함.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험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할부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빚’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으면 ‘⑤ 외상, (자동차 등)할부 구입’으로 기록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외상, (자동차 등)할부 구입, 미리탄 갯돈 ※ 미리 탄 갯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부채(_____)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이자	2012년 1년(2012.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연체한 경우 0	① 1년동안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2012.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 부 동 산	유 산	201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택의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가게) ·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토지(택지,논,밭,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점 부 동 산	유 산	201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금융자산	201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불입한(타기 전) 궂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 기 계	2012.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콤바인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축산물	2012.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돼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닭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계고농산물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 동 차	201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u>비영업용</u>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대							
문 7)	기 재 산	2012.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u>영업용 자동차</u>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전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2012년 1년 동안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201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	201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01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201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201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012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2012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	2012년 1년 동안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 유의사항 〉

- ※ ㉠ 문항의 경우 2012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 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2012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12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2012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문 2) 2012년 1년 동안에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201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201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201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u>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u> 적이 있습니까?	① → ㉠로 갈 것	② → ㉠로 갈 것	③ → ㉠로 갈 것
㉣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201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u>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u>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2012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u>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u>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한다.

문 1) 귀댁은 201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1)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12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 **문2)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12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12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13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12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12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 1-3)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모든 응답자) 귀댁은 2012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2012년 1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 ② 2012년 이전부터 2012년 말까지 받았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3)으로 갈 것
- ③ 2012년 들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12년 말까지 받았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4)로 갈 것
- ④ 2012년 이전부터 받아오다가 2012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4)로 갈 것
- ⑤ 2012년 들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12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4)로 갈 것

문 2-1)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2012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2	0	1	2	년		월	~	2	0	1	2	년		월
두 번째	2	0	1	2	년		월	~	2	0	1	2	년		월
세 번째	2	0	1	2	년		월	~	2	0	1	2	년		월

< 유의사항 >

※ 2012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2012년 이전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2012년 01월부터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2-2)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2012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급한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유의사항 >

※ 2012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문 3-1)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귀댁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 후 'XII-1. 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문 4) (문2)의 ④, 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1) (문2)의 ④, 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없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XII-1. 근로장려세제

< 유의사항: 다음의 내용을 응답자에게 알려 주시고 질문하십시오. >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제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댁은 가구 생성이후 2012년 5월 경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것

문 2-1) 귀댁은 2012년 추석 즈음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① 있다 → 문2-2)로 갈 것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부보조금란의 근로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문 2-2) 수급한 근로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댁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댁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댁은 금년(2013년)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②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 3-1) 귀댁은 금년(2013년)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입니까?

- ① 신청할 것이다(하였다) ②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 상담서비스	①	②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생계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화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적립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12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①	②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①	②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①	②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①	②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①	②
㉧ i사랑 보육서비스(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 포함)	①	②
㉨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i사랑 보육서비스(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 포함): i사랑 보육서비스는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은 유치원 취원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말한다.
- ※ ㉨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등이 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등 보건복지부 외 다른 부처의 바우처서비스도 포함한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2012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② 아니요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하가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월단위

천원

< 유의사항 >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12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급여(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①	②
㉡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①	②
㉦ 시설급여(2012년 중 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기초노령연금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연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할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 학비 지원	①	②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협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구 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⑧ 학원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⑨ 개인·그룹과의	
기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⑬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을 것 : _____)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①	②
㉡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①	②
㉢ 장애아동수당	①	②
㉣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자동차 관련 지원(지침서 확인)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의료재활서비스: 장애로 인한 의료서비스,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장애인보장구 할인 등이 포함된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XVII. 가족

문 1) **2012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②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③ 자녀교육 혹은 행동

④ 가구원의 건강

⑤ 가구원의 알코올
- ⑥ 가족 내 폭력

⑦ 가구원간 관계

⑧ 가구원의 가출

⑨ 주거관련 문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⑪ 자녀의 결혼문제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12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인번호
제 33109 호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 신규가구용(유형2)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57-6258, 02-358-9782, 02-380-8273, 8352, 83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small>*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small>		가구생성차수 -8차 신규가구: 08		가구분리일련번호 -첫번째 8차 신규가구: 01 -두번째 8차 신규가구: 02 -세번째 8차 신규가구: 03		※분가사유			
		0 8				① 결혼 ② 직장 ③ 학업 ④ 이혼 ⑤ 별거 ⑥ 위탁 ⑦ 기타(*기타내용은 가구정보란에 기록)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분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이사(주소추적불가) ⑦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⑧ 기타 추적불가사유 ⑨ 기타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등급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등급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장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장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 중복장애의 경우에 는 중복장애가 복지 카드에 표시되어 합 산되어 있는 경우 이 를 그대로 기입합니 다.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기초보장 수급형태	문11-1)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문11-2)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문12)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12-1)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문12-2)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주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 ※ 기초보장수급 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2012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문2) 2012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2012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2012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020 없음→000	①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①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2-2) 입원횟수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①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12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12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2012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12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1 없음→0	① 비해당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위염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 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아래 [주요병명코드] 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 또는 임신 및 출산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의 경우는 주요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00 없음’으로 표기한다.

※ 급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30 기타 질병’으로 기록(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1> ① 급성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정신분열 등)의 경우에도 ‘30 기타 질병’으로 기록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31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록(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급여특례로 인정하는 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 1> ②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000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CI(Critical Illness)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

※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직장단체가입이 많음).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① 암(위, 간, 폐, 기관지등)	⑩ 폐결핵, 결핵	⑲ 고지혈증	㉘ 치아우식증(충치)
②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⑪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⑳ 치질(치핵)	㉙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③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등	⑫ 천식	㉑ 만성부비동염(축농증)	㉚ 기타질환(급성질환 등)
④ 만성간염, 간경변	⑬ 백내장, 녹내장	㉒ 기관지확장증	㉛ 희귀난치성 질환
⑤ 당뇨병	⑭ 만성중이염	㉓ 알레르기성 비염	㉜ 저혈압
⑥ 갑상선 질환	⑮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㉔ 턱관절질환	㉝ 없음
⑦ 고혈압	⑯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㉕ 아토피성 피부염	
⑧ 중풍, 뇌혈관질환	⑰ 골다공증	㉖ 요실금	
⑨ 심근경색증, 협심증	⑱ 빈혈	㉗ 우울증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상태 (12월 31일 기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가져오세요	가구원 이름	① 만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①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2]으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8]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비경제활동인구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지침서 사례 참조)
-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한다. (지침서 사례 참조)
-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 중 하나를 택해서 응답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문3-1) 경제활동 참여상태(12월 31일 기준)

- ※ 문3)에서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만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음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 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 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8)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목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 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 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 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지역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 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교사, 보형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입형태의 레미콘 (화물, 덤프)기사,택배원(퀵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십장(혹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 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 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지침서] <부록3> 산업분류코드에서 중 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시오.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 업코드는 [지침서] <부록4> 직업분류코드 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직업명	직업코드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 ① 문3)에서 ‘①~③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햄버거의 OO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OO지역 체인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그룹의 OO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OO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OO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OO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로 응답한다.
- ② 문3)에서 ‘⑤~⑦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u>보훈연금</u> 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 로 납부기한을 깜 빕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 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 민연금가입자이 지만 실직, 사업 중단, 휴직(출산, 육아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 로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 사 람임.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으로 봄).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데, 미가입인 경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신고서 받지 않은 경우나 신고서를 받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지침서] 참조)

⑤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12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 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갈 것 ※ 2012년 1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 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 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12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 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 12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 는 경우 '①비해당'으로 기 입하고, 미납한 경험이 있 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12년 1년간 보험료 를 몇 개월이나 미납 하셨습니까? →문9)로 갈 것 ※ 2012년 1년 기준임. ※ 2012년 1년간 미납경 험이 없는 경우는 0으 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 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 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6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 직원, 군인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 우는 별도이므로 가 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 업자는 '① 비해당'이 며, 고용주는 사업장 이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미가 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 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자 및 고용주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 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 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 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 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 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 와 공동으로 조성하 고, 금융기관에 위 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 시금으로 지급하는 새 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 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 험회사, 투신사, 증권 사 등의 금융기관에 서 취급하는 금융상 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 로 전환이 가능한 금 융상품으로서 개인연 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 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 은 그 각각의 피부 양자에 해당하는지 문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다면 ⑤~⑧ 중 해 당하는 번호를 기 입함.
1						
2						
3						
4						
5						
6						
7						
8						
9						

문 2) 귀댁에서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① 월보험료 부담

-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6) ("Ⅱ.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12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백	십	일
---	---	---

 만원

VI. 주거

문 1)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일반아파트

⑥ 영구임대아파트
-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⑨ 오피스텔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⑪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⑫ 기타(적을 것 : _____)

⑬ 국민임대아파트

< 유의사항 >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2)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 ① 지하층

③ 지상
- ② 반지하층

④ 옥탑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사용하였던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댁의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1평≒3.3㎡)

m²

<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① 자가

④ 월세(사글세)
- ② 전세

⑤ 기타
- ③ 보증부월세

→ 문6)으로 갈 것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기타’ 가 됩니다.
※ 점유형태 ‘⑤기타’에는 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 6)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유의사항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7)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8)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관련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8-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 ② 1회
- ③ 2~3회
-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는 경우 또는 2012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9)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문 10)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떨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다
㉠ 영구임대주택	☐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 공공(국민)임대주택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	㉥ 기타(적을 것: _____)	☐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전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 ㉣의 경우는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동안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 유의사항 〉

- ※ 생활비 : **신규가구 생성이후**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2012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112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10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12년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는 2012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외식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3) 주류·담배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주거비 (주택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2-2) 주거관리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광열수도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문 4-1) 가구·가사용품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조명기기,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피출부, 청소비 등), 기저귀 값,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4-2) 보육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의류 신발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외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보건 의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이용료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7-2) 사교육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8)	교양 오락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아동용자전거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9)	교통 통신비	문 9-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u>자동차 보험료</u> ,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9-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기 타 소 비 지 출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십일조 등) 비용, <u>보장성보험료</u> (저축성보험 제외), <u>관혼상비</u> ,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경조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교관련비용(십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사 이 적 전	문 11-1) 비 동 거 가 구 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가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2) 기 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어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집을 시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예컨대, 아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세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득등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3)	사 회 보 장 부 담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u>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u>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총 생 활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지출한 총 생활비는? ※ <u>총생활비 = 1~13의 합계</u> ※ 저금, 저축성보험료, 게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 귀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15)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 월평균 기준)	최저생활비 총액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귀 가구의 주관적 적정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15-1)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2012년 월평균 기준)	적정생활비 총액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 단, 2011. 10. 1 ~ 2011. 12. 31 사이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면 됩니다.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 사 또는 육아·학생 ·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개월수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08)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쉬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경 영 주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12.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의 월평균)는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가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하 동일함).

→ 상용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1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보조기입란 3-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12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는 월 20회, 11~12월까지는 월 10회 일하였다면,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A)

1회당(일당) 보수 (B)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가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총급여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A×B)

1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보조기입란 4-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 ※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매출액 (A)						
		1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4-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총비용 (B)						
		1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순소득은 월평균 총매출액에서 월평균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순소득 (A-B)						
		1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4-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
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신규가구 생성이
후 1,500만원을 벌어 1,0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500만원을 신규가구 생성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값을 기입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
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전입소득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1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p>농림축산업 경영주</p> <p>※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p> <p>※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

5-1.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 ≒ 3.3 m²

① 논	총							m ²
② 밭	총							m ²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²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²

※ 없음 0

[보조기입란 5-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 판매량 = 판매량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 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곡 : 메벼, 멥쌀, 찰벼, 찰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고구마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애플 등									
	여름 채소 :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뽕잎,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젖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젖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 계									

5-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월	평	균	단	위	월	평	균	단	위	월	평	균	단	위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십	억	천	백	십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 없음 0

5-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농업관련 월평균 기타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보조기입란 5-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농업경영비)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시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 개월수(내구 개월수)을 질문하여 그 사용가능 개월수로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2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만원(=1200만원÷120개월)으로 기재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영농광열비는 버·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월평균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구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보조기입란 6-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시	종류	월평균 판매량 (a)	월평균 자가소비량 (b)	월평균 이전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월평균 판매수입 (만원) (A=a*p÷10)	월평균 자가소비액 (만원) (B=b*p÷10)	월평균 이전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의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계 (A+B+C)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 없음 0

6-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어업관련 월평균 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보조기입란 6-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지출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문 7)	<p>기타 근로소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p> <p>※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p> <p>※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기타 근로 소득							
<p>※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1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2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3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4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5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6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7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8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9	월 평 균	단 위	십 억	일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원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 ~ 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을 기입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일시금 금액을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눔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받은 사회보험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월평균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퇴직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1)	기 정 부 보 조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 14)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⑦, ⑧, ⑨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노인 위생비, 자활장려금, 출산장려수당, 노인장수수당, 직업훈련수당, 노인 교통비,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u>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u>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초노령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한부모가족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보육료 지원(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⑦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⑨ 농어업 정부보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⑩ 긴급복지지원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⑪ 기타 바우처 지원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⑫ 근로장려세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⑬ 급식비 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⑭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⑮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⑯ 기타()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신규가구생성 이후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상용 또는 임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① 증여·상속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조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갯돈 등)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12-1	환급금	2012년 1년 동안 돌려받은 환급금 총액은?	세금환급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월평균액은? ※ 분가이후 주택구입용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금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 신규가구에서 분리되었거나 새로 들어온 가구원 중, 신규가구 ‘생성시점~2012.12’ 기간 중 3/4 미만 동안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은 기타에 기입	부모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기타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총 수급 개월수	개월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문 1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수급개월수와 월평균 금액(현금급여)은? ※ 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수급개월수는 현금, 현물지원을 모두 포함해 기입 ※ 단, 월간금액은 현금급여액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을 기입 ※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해산급여+장제급여 ※ 수급 개월수는 신규 가구생성이후 급여를 받은 개월수를 적고, 월평균 금액액을 기입.(예,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5월에 급여 중지 되었다면, 수급개월 수에는 04, 금액에는 20만원 기입	총 수급 개월수	개월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월평균	일	억	천	백	십	일

※ 없음 0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 형태	2012.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 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⑤ 외상, 할부구입, 미리탄 갯돈에 포함.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험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 기타 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할부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 빚'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으면 '⑤ 외상, (자동차 등)할부 구입'으로 기록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외상, (자동차 등)할부 구입, 미리탄 갯돈 ※ 미리 탄 갯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부채(_____)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이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까지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총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신규가구의 월평균 이자 계산방법: [(생성시점~2012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이자) ※ 연체하는 경우 0	① 신규가구 생성이후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12.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로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부동산	201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택의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가게)·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토지(택지,논,밭,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점부동산	2012.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금융자산	201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불입한(타기 전) 껀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 기계	2012.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콤바인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 축산물	2012.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돼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닭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계고농산물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 동 차	2012.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만원
				대						
문 7)	기 재 산	2012.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전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 유의사항 〉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문 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2012년 1월 1일 이전(2011.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12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① → ㉠로 같 것	② → ㉡로 같 것	③ → ㉢로 같 것
㉣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피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한다.

문 1)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12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2)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12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12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13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12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12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 1-3)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가 있어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② 빚을 내어서 생활
③ 민간단체의 도움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2) (모든 응답자)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
이 있습니까? ☐
- ① 가구생성이후 2012년 12월 말까지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 ② 가구생성이후 2012년 12월 말까지 받았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3)으로 갈 것
- ③ 가구생성이후 받아오다가 2012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4)로 갈 것

문 2-1)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 이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able>					2	0	1	2	2	0	1	2	년	<table><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월	~	<table><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able>	2	0	1	2	2	0	1	2	2	0	1	2	년	<table><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월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두 번째	<table><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able>	2	0	1	2	2	0	1	2	2	0	1	2	년	<table><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월	~	<table><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able>	2	0	1	2	2	0	1	2	2	0	1	2	년	<table><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월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세 번째	<table><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able>	2	0	1	2	2	0	1	2	2	0	1	2	년	<table><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월	~	<table><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r><td>2</td><td>0</td><td>1</td><td>2</td></tr></table>	2	0	1	2	2	0	1	2	2	0	1	2	년	<table><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월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2	0	1	2																																										

< 유의사항 >

※ 2012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원가구원이 분가를 하여 생성된 신규가구가 생성 이전부터 수급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은 가구생성시점부터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2-2)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2012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급한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 문 2-3)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유의사항 >

※ 2012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문 3) (문2)의 ②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문 3-1) (문2)의 ②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귀댁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 ① 의료비 지원 ④ 자활관련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③ 주거비 지원

응답 후 'XII-1. 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문 4) (문2)의 ③번 응답자만) 귀댁이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1) (문2)의 ③번 응답자만) 귀댁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의료비 지원 ④ 자활관련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⑤ 없다
- ③ 주거비 지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XII-1. 근로장려세제

〈 유의사항: 다음의 내용을 응답자에게 알려 주시고 질문하십시오. 〉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제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댁은 가구 생성이후 2012년 5월 경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것

문 2-1) 귀댁은 가구생성 이후 2012년 추석 즈음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① 있다 → 문2-2)로 갈 것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부보조금란의 근로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문 2-2) 수급한 근로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댁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댁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댁은 금년(2013년)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②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 3-1) 귀댁은 금년(2013년)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입니까?

- ① 신청할 것이다(하였다) ②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 상담서비스	①	②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생계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화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적립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①	②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①	②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①	②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①	②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①	②
㉧ i사랑 보육서비스(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 포함)	①	②
㉨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i사랑 보육서비스(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 포함): i사랑 보육서비스는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은 유치원 취원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말한다.
- ※ ㉨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등이 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등 보건복지부 외 다른 부처의 바우처서비스도 포함한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월단위

천원

< 유의사항 >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급여(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①	②
㉡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영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①	②
㉦ 시설급여(2012년 중 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기초노령연금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연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화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 학비 지원	①	②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협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구 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⑧ 학원 ⑨ 개인·그룹과의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⑬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을 것 : _____)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①	②	A	월평균	월평균
				B	<div></div> 만원	<div></div> 만원
				C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①	②
㉡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①	②
㉢ 장애아동수당	①	②
㉣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자동차 관련 지원(지침서 확인)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 의료재활서비스: 장애로 인한 의료서비스,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장애인보장구 할인 등이 포함된다.
-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XVII. 가족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②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④ 자녀교육 혹은 행동

⑤ 가구원의 건강

⑥ 가구원의 알코올
- ⑥ 가족 내 폭력

⑦ 가구원간 관계

⑧ 가구원의 가출

⑨ 주거관련 문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⑪ 자녀의 결혼문제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구생성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57-6258, 02-358-9782, 02-380-8273, 8352, 83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피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대리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불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성명	가구원번호
				⑨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현주소를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① 피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뇌병변장애 ⑦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2급 ⑧ 사망 ⑨ 기타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12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문 1-6) (문1-1)의 ⑥,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12년 1년간 받은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②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12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연금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⑤ 유족급여-연금

⑥ 유족급여-일시금

⑦ 기타 현금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

⑧ 잘 모르겠다

문 3-2) 귀하가 2012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일천백십일</div>	만원			
연금	연간	<div><div></div><div></div></div> <div>십일</div>	개월	연간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천백십일</div>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12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일천백십일</div>	만원			
연금	연간	<div><div></div><div></div></div> <div>십일</div>	개월	연간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천백십일</div>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12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일천백십일</div>	만원			
연금	연간	<div><div></div><div></div></div> <div>십일</div>	개월	연간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천백십일</div>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③ 무급 가족 종사자 —————→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으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자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11.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12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했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③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② 정리해고로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④ 정년퇴직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⑰ 출산, 육아 때문에

⑱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월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일

〈 유의사항 〉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에 20일, 8월에 20일 일 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일(2일+15일+20일+20일)÷4개월=14.25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합니다.
-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시간

일한달의 월 평균 임금 : 월 평균만원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시간

일한날의 시간당 임금 : 시간당만원

〈 유의사항 〉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2012년 기준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나이 때문에

② 성차별 때문에

③ 외모 때문에

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⑥ 경력이 부족해서

⑦ 건강문제로

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⑨ 신용불량자라서
- ⑩ 가사일때문에

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⑱ 기타(적을 것 : _____)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일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10) 귀하는 2012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기술사

② 기능장

③ 기사

④ 산업기사
- ⑤ 기능사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⑧ 없다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문 10-1) (문 10)의 ① ~⑦번 응답자만)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기계 · 금속

② 화공 · 세라믹

③ 전기 · 전자

④ 통신

⑤ 조선

⑥ 항공

⑦ 섬유

⑧ 토목 · 건축

⑨ 광업·자원

⑩ 정보처리
- ⑪ 국토개발

⑫ 농림

⑬ 해양

⑭ 산업디자인

⑮ 에너지

⑯ 환경

⑰ 안전관리

⑱ 산업응용

⑲ 교통
- ⑳ 공예

㉑ 사무관리

㉒ 음료품 · 식료품

㉓ 위생

㉔ 보건 · 의료 · 사회

㉕ 금융 · 무역 · 유통

㉖ 교육 · 공무원 관련 자격

㉗ 외국어 · 관광

㉘ 기타

< 유의사항 >

※ 문10)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12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연간

회

문 2)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1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2-2) 201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다음은 성역할에 관한 문항입니다.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유의사항〉

※ 문1), 문2), 문3)은 신규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신규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피음 → 문 4-1), 문4-2), 문4-3) 응답 후 문 5)로 갈 것
② 피우지 않음 → 문 5)로 갈 것

- 문 4-1)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비

-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1

- ① 0시간(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문5-1로 갈것

-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6-1)로 갈 것
→ 문 7)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정도
② 3~4잔 정도
③ 5~6잔 정도

④ 7~9잔 정도
⑤ 10잔 이상

문 6-2)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몇 달에 한번정도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13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항목	전혀 없음	몇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문 6-4)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12년 1년간(2012. 1. 1 ~ 2012. 12. 3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①	②
㉢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간(2012. 1. 1 ~ 2012. 12. 31)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비해당(남성의 경우)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에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2년 1년간(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해당
㉠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 인 번 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 신규가구원용(유형4)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57-6258, 02-358-9782, 02-380-8273, 8352, 83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대리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불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성명	가구원번호
				⑨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현주소를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⑥ 조사거부 ⑦ 뇌병변장애 ⑧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2급 ⑨ 사망 ⑩ 기타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12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
연금, 보훈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 ④ 군인연금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 ⑥ 보훈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 **문1-4)로 갈 것**
→ **문1-6)로 갈 것**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 ① 노령연금
- ② 장애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분할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⑥ 반환일시금
- ⑦ 기타(적을 것 :)

문 1-3) 귀하가 2012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tr><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r><tr><td>일억</td><td>천</td><td>백</td><td>십</td><td>일</td></tr></tabl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억	천	백	십	일														
연금	연간	<table><tr><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r><tr><td>십</td><td>일</td></tr></tabl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table><tr><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r><tr><td>천</td><td>백</td><td>십</td><td>일</td></tr></tabl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	백	십	일	만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십	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	백	십	일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 ① 퇴직급여
- ② 유족급여
- ③ 재해보상급여
- ④ 퇴직수당
- ⑤ 부조급여
- ⑥ 기타(적을 것 :)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12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일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12년 1년간 받은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억

천

백

십

일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일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②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12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일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연금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⑤ 유족급여-연금

⑥ 유족급여-일시금

⑦ 기타 현금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

⑧ 잘 모르겠다

문 3-2) 귀하가 2012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일천백십일</div>	만원			
연금	연간	<div><div></div><div></div></div> <div>십일</div>	개월	연간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천백십일</div>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12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일천백십일</div>	만원			
연금	연간	<div><div></div><div></div></div> <div>십일</div>	개월	연간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천백십일</div>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12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일천백십일</div>	만원			
연금	연간	<div><div></div><div></div></div> <div>십일</div>	개월	연간 총액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천백십일</div>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③ 무급 가족 종사자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으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자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11.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12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했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③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 ② 정리해고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 ④ 정년퇴직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월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 유의사항 〉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에 20일, 8월에 20일 일 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2+15+20+20) \div 4 = 14.25$ 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합니다.
-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일한달의 월 평균 임금 :

월 평균

만원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일한날의 시간당 임금 :

시간당

만원

〈 유의사항 〉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2012년 기준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나이 때문에

② 성차별 때문에

③ 외모 때문에

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⑥ 경력이 부족해서

⑦ 건강문제로

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⑨ 신용불량자라서
- ⑩ 가사일때문에

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⑱ 기타(적을 것 : _____)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일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10) 귀하는 2012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기술사

② 기능장

③ 기사

④ 산업기사
- ⑤ 기능사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⑧ 없다 → **C.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문 10-1) (문 10)의 ① ~⑦번 응답자만)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기계 · 금속

② 화공 · 세라믹

③ 전기 · 전자

④ 통신

⑤ 조선

⑥ 항공

⑦ 섬유

⑧ 토목 · 건축

⑨ 광업·자원

⑩ 정보처리
- ⑪ 국토개발

⑫ 농림

⑬ 해양

⑭ 산업디자인

⑮ 에너지

⑯ 환경

⑰ 안전관리

⑱ 산업응용

⑲ 교통
- ⑳ 공예

㉑ 사무관리

㉒ 음료품 · 식료품

㉓ 위생

㉔ 보건 · 의료 · 사회

㉕ 금융 · 무역 · 유통

㉖ 교육 · 공무원 관련 자격

㉗ 외국어 · 관광

㉘ 기타

< 유의사항 >

※ 문10)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12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연간

회

문 2)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1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회 또는

· 월

회 또는

· 년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2-2) 2012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회 또는

· 월

회 또는

· 년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다음은 성역할에 관한 문항입니다.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문 1) (모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입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5갑(100개비) 미만
② 5갑(100개비) 이상
③ 피운 적 없음
- └─> 문 2)로 갈 것
→ 문 4)로 갈 것

문 2)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세

문 3)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총 흡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담배를 주기적으로 피우던 시기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금연하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총 흡연기간

년

개월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피움 → 문 4-1), 문4-2), 문4-3) 응답 후 문 5)로 갈 것
- ② 피우지 않음 → 문 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비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0시간(없음)
- ② 1시간 미만
- ③ 1시간 이상 → 문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② 월 2~4회
- ③ 주 2~3회
- ④ 주 4회 이상
-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7)로 갈 것
- 문6-1)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정도
- ② 3~4잔 정도
- ③ 5~6잔 정도
- ④ 7~9잔 정도
- ⑤ 10잔 이상

문 6-2)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몇 달에 한번정도
-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 ④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13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항목	전혀 없음	몇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문 6-4)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12년 1년간(2012. 1. 1 ~ 2012. 12. 3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①	②
㉢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12년 1년간(2012. 1. 1 ~ 2012. 12. 31)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비해당(남성의 경우)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 에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2년 1년간(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해당
㉠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조사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예 → 문 15-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16)으로 갈 것

문 15-1) (문 1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생각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문 16)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조사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예 → 문 16-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17)로 갈 것

문 16-1) (문 16)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문 17)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조사시점(2013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예 → 문 17-1)로 갈 것 ② 아니오 → 종결

문 17-1) (문 1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을 처음마지막으로 시도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F. 교육

문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G.개인사로 갈 것**

② 고등학교 중퇴, 졸업-----

③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

④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

⑤ 대학원 이상 -----

---> **문 2)로 갈 것**

문 2) (②~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고등학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고등학교 유형			2-2) 소재지
①일반계(일반)	⑦실업계(농업)	⑬특성화고	고등학교의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②일반계(특목: 과학고)	⑧실업계(공업)	⑭대안학교	
③일반계(특목: 외국어고)	⑨실업계(상업)	⑮검정고시	
④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⑩실업계(수산 및 해양)	⑯기타	
⑤일반계(특목: 예술고)	⑪실업계(가사 및 실업)	⑰자율고(자율형고, 기숙형고)	
⑥일반계(특목: 체육고)	⑫실업계(종합)		

- < 유의사항 >
-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응답자가 “전문계”라고 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 자립형사립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학교, 전주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2010년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변경됨)
 - 국제고: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심국제고
- ⑧ 실업계(공고) 중에서 일반 공업고등학교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2010년부터 추가됨).
- 2010년 첫 개교를 하였으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학교임.
- 수도전기공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부산자동차고, 부산기계공고, 경북기계공고, 인천전자공고, 광주정보고, 대전동아공고, 울산정보통신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원주정보공고, 충북반도체고, 함덕제철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향민문류고,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 ⑨ 실업계(상업)에는 “정보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 ⑬ 특성화고등학교
- 디자인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서울동일여자 전산디자인고등학교,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경주디자인고등학교 등
 -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에니메이션고등학교: 한국에니메이션고등학교, 연기성남고등학교, 경남에니메이션고등학교, 충남에니메이션고등학교 등
 - 골프고등학교: 부산골프고등학교, 청도한양국제골프고등학교, 함평골프고등학교
 - 관광고등학교: 서울관광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대구관광고등학교, 선정관광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 미용고등학교: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전남미용고등학교 등
 - 자동차고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인천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경북자동차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등
- ⑭ 대안학교
- 지구촌고, 달구벌고, 산마울고, 동명고, 두레자연고, 경기대명고, 아우고, 한겨레고, 전인고, 팔려고, 양업고, 한마음고, 공동체비전고, 세인고, 푸름꿈고, 영산성지고, 한빛고, 경주화랑고, 간디학교, 원경고, 지리산고
- ⑰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 자율형 사립고: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동래여고, 계성고, 송원고, 안산 동산고, 북일고, 김천고, 해운대고(2010년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변경함),
 - 자율형 공립고: 당곡고, 수락고, 등촌고, 성동고, 도봉고, 원목고, 구현고,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면목고, 상암고, 청량고, 대영고, 미양고, 중경고, 부산남고, 경남여고, 낙동고, 사상고, 금정고, 부산중앙고, 부산진고, 영도여고, 주례여고, 강동고, 경북여고, 구암고, 상인고, 대구고, 호산고, 달성고, 학남고, 안천신현고,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대전고, 대전송촌고, 동신고, 문현고, 외부고, 세마고, 충현고, 함현고, 삼송고, 청원고, 대산고, 용남고, 군산고, 정읍고, 목포고, 순천고, 상주여고, 인동고, 영주제일고, 북삼고

문 3) (③~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대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1) 대학 전공 계열			3-2) 소재지
①인문계열	⑤교육계열	⑨의약계열(약학)	대학교의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⑥공학계열	⑩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⑦자연계열	⑪예체능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⑫기타	

- < 유의사항 >
- ※ 응답자가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개인사

문 1) 아동기(만 0~17세)에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기타 시도) ③ 농어촌(읍면지역) ④ 외국

문 2) 귀하가 아동기(만 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가난 ② 가난 ③ 보통 ④ 부유 ⑤ 매우 부유

문 3) 귀하는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고용형태였습니까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첫 직장					년	~			년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첫 직장 이후의 취업 기간과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연차적으로 주요한 직업 경력을 6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가장 최근 (2012년 12월 31일로 부터)					년	~			년
주된 일자리 A					년	~			년
주된 일자리 B					년	~			년
주된 일자리 C					년	~			년
주된 일자리 D					년	~			년
주된 일자리 E					년	~			년

< 보기 > 고용 형태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2.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닌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3.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4.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 자영업에 포함)	
5.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 동일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근무기간은 구분하지 말고 고용형태는 마지막 형태를 기입합니다.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직장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직장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경우는 3-1)과 3-2) 최근일자리에 동시에 기입합니다.

※ 첫 직장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3-1)에만 기입하고, 3-2)에는 최근 일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적되, 마지막에 첫 직장은 적지 않습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어떤 직업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기술사

② 기능장

③ 기사

④ 산업기사

⑤ 기능사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⑧ 잘 모르겠다

⑨ 없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⑦번 응답자만)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기계 · 금속

② 화공 · 세라믹

③ 전기 · 전자

④ 통신

⑤ 조선

⑥ 항공

⑦ 섬유

⑧ 토목 · 건축

⑨ 광업·자원

⑩ 정보처리

⑪ 국토개발

⑫ 농업

⑬ 해양

⑭ 산업디자인

⑮ 에너지

⑯ 환경

⑰ 안전관리

⑱ 산업응용

⑲ 교통

⑳ 공예

㉑ 사무관리

㉒ 음료품 · 식료품

㉓ 위생

㉔ 보건 · 의료 · 사회

㉕ 금융 · 무역 · 유통

㉖ 교육 · 공무원 관련 자격

㉗ 외국어 · 관광

㉘ 기타

< 유의사항 >

※ 문4)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아동기(만 0~17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살이었습니까

항 목	경 험 여 부				당시 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모름		
㉠ 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일찍 돌아가셨다	①	②	③	☞	만__세
㉡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①	②	③	☞	만__세
㉢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진학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__세
㉣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__세

< 유의사항 >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 생계곤란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후 당시 나이는 취학연령인 만 7세로 기재합니다.

문 6)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부

모

① 무학

② 서당수학

③ 초등학교졸

④ 중학교졸

⑤ 고등학교졸

⑥ 대학(전문대)졸

⑦ 대학교졸

⑧ 대학원졸

⑨ 모름

< 유의사항 >

※ 중퇴 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수료)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문 7) 귀하 부모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습니까)?

부	모
① 비해당	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②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⑩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③ 전문가	⑪ 단순 노무 종사자
④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⑫ 직업군인
⑤ 사무종사자	⑬ 주부
⑥ 서비스 종사자	⑭ 무직
⑦ 판매 종사자	⑮ 기타(적을 것 : _____)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⑯ 모름

< 유의사항 >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문 8) 귀하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8-1)로 갈 것** ② 없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결혼할 때 받은 부동산(주택마련자금 또는 전세자금), 자동차, 사업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정도의 비정기적 증여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쌀, 대학등록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가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 안 됨 ④ 약간 도움이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⑤ 매우 큰 도움이 됨
③ 보통

문 9) 귀하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유의사항 >

※ 본 질문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5)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57-6258, 02-358-9782, 02-380-8273, 8352, 83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혜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대리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불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⑩ 기타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원주소를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⑥ 비혜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뇌병변장애 ⑦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2급 ⑧ 사망 ⑨ 기타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I. 전반적인 사회적 · 정치적 인식과 태도

다음은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과 소득분배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문 1) 귀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어떤 그림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로축이 사람 수, 세로축이 계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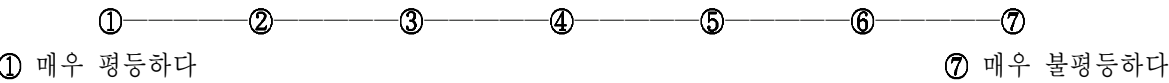
- ①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 ②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 ③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 ④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 ⑤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문 2) 귀하는 아래의 그림 중에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로축이 사람 수, 세로축이 계층을 의미합니다.)



- ①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 ②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 ③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 ④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 ⑤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문 3)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4)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선택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5)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우리사회의 빈곤 원인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①	②	③	④
㉦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①	②	③	④
㉧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①	②	③	④
㉨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①	②	③	④
㉩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①	②	③	④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6)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선택할 수 없음
㉠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 건강보험 및 보건	①	②	③	④	⑤	⑥
㉢ 국민연금(노령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국방	①	②	③	④	⑤	⑥
㉦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⑥
㉧ 빈곤층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노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장애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①	②	③	④	⑤	⑥
㉬ 문화와 예술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7)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보통이다
- ⑤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⑥ 그렇지 않다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문 8)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9)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 복지 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복지를 제공하는 여러 부문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 10)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정부의 사회정책	매우 잘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그저 그렇다	잘 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빈곤 예방 및 감소	①	②	③	④	⑤
㉥ 실업에 대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담당해서 운영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분야	국가 (중앙/지방정부)	가족 친지	직장	민간기관 (영리기관)	비영리 민간기관
㉠ 교육	①	②	③	④	⑤
㉡ 보건의료	①	②	③	④	⑤
㉢ 아동	①	②	③	④	⑤
㉣ 노인	①	②	③	④	⑤
㉤ 주거	①	②	③	④	⑤
㉥ 고용	①	②	③	④	⑤
㉦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민간기관(영리기관) : 수익을 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사립유치원, 유료민간 양로원 및 실버타운, 민간병원 등)
- * 비영리 민간기관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복지관, 노인회관 등)

문 12)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분야	국가 (중앙/지방정부)	본인(개인)	가족친지	직장
㉠ 교육	①	②	③	④
㉡ 보건의료	①	②	③	④
㉢ 아동	①	②	③	④
㉣ 노인	①	②	③	④
㉤ 주거	①	②	③	④
㉥ 고용	①	②	③	④
㉦ 장애인	①	②	③	④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다음은 세금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오늘날 한국의 세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 사회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문 13) 귀하는 다음 각 소득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소득계층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너무 지나치게 낮다	선택할 수 없음
㉠ 고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⑥
㉡ 중간층	①	②	③	④	⑤	⑥
㉢ 저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⑥

문 14)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보통이다
- ⑤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⑥ 그렇지 않다
-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문 15)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① 매우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대체로 찬성한다
- ④ 보통이다
- ⑤ 대체로 반대한다
- ⑥ 반대한다
- ⑦ 매우 반대한다

문 16) 귀하는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 ②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 ③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 ④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 ⑤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다음은 국가가 징수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17)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⑤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 ② ————— ③ ————— ④ ————— ⑤

① 모든 국민대상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

문 18) 국민이 낸 세금을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쓴다고 할 때 어디에 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노후생활문제
② 건강 및 의료문제
③ 실업문제
④ 교육문제
⑤ 아동양육문제
- ⑥ 장애인 문제
⑦ 주거문제
⑧ 빈곤
⑨ 기타(적을 것: _____)

III. 정치참여와 성향

다음은 정치참여와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9)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상당히 관심이 있다
③ 다소 관심이 있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⑥ 선택할 수 없음

문 20) 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선택할 수 없음

문 21)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진보적
② 다소 진보적
③ 중도

④ 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⑥ 선택할 수 없음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의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기금운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 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형평화 연구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제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